

#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공제제도 연구

##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공제제도 연구



2017. 1

#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공제제도 연구

2017. 1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근로소득 공제제도 연구』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홍우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부연구위원

2017년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박 형 수



# 요 약

## I. 연구의 배경

- 다양한 근로소득 관련 특별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크게 증가
  - 2013년말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 특별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 근로소득자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 허용이 과세기반을 잠식하고 소득수준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기인
  - 그러나 중하위소득자들에 대해 한계세율보다 높은 15% 등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이어진 보완조치로 인해 면세자 비중은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2013년 32.2% 수준이었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4년 47.9%로 크게 증가
  
- 개인소득세의 세입기능과 재분배기능 확대를 위해 향후 면세자 비중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제제도들을 점검하고 그 변화에 따른 면세자 비율에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세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구체적으로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정책 변화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
  - 기부금을 통한 공익활동 증가는 정부와 민간의 비용분담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
  - 세부담 변화가 야기하는 기부금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기부금을 통한 공익활동 수준 변화를 점검하여 향후 정책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중 축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점검하고 기부금 수준에 대한 조세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
  - 이를 통해 관련 향후 조세정책 결정과정에 적절한 판단근거를 제공

## II. 근로소득세제의 운영현황

- 최근 소득세수는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3년 3.1%까지 하락하였으나 회복되는 추세로 2015년 증가율은 13.9% 수준
  -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10%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14년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율이 15.5% 수준으로 높아졌다가 2015년에는 6.7%로 안정화
  - 근로소득세의 2010~2015년 기간 평균 증가율은 11.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전체소득세 증가율 9.9%를 상회하는 수준
    - 전체 국세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 개인 소득세 부문

<표 1> 개인소득세수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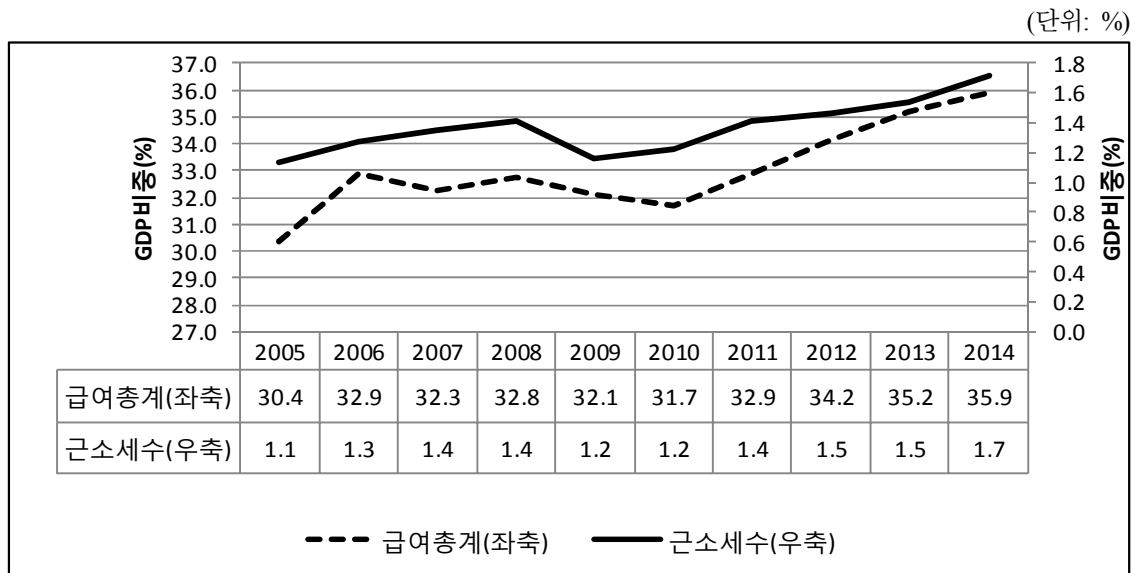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0~2015 평균증가율
국세	177.7 (8.0)	192.4 (8.3)	203.0 (5.5)	201.9 (-0.5)	205.5 (1.8)	217.9 (6.0)	4.2
소득세	37.9 (8.9)	42.7 (12.6)	46.4 (8.7)	47.8 (3.1)	53.3 (11.5)	60.7 (13.9)	9.9
종합소득세	6.8 (4.7)	8.3 (21.9)	9.9 (19.7)	10.9 (9.7)	11.5 (5.5)	12.8 (11.3)	13.5
근로소득세	15.5 (15.7)	18.7 (20.8)	20.2 (7.6)	22.0 (9.1)	25.4 (15.5)	27.1 (6.7)	11.8
양도소득세	8.2 (11.7)	7.4 (-9.5)	7.5 (1.5)	6.7 (-10.7)	8.0 (19.4)	11.9 (48.8)	7.8

주: 괄호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세입세출 마감」, 각 년도.

- 근로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과세대상인 급여총계의 GDP 대비 비중 추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임
  - 2009~2010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여총계 비중 하락이 나타났으나 근로소득세수는 세율 인하 첫해인 2009년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회복하는 모습
  - 근로소득세수는 세율 인하, 인상 등에 따라 단기적인 변화를 보여주나 상승추세는 지속
    -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근로소득세 대상인 임금근로자 규모, 즉 급여총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
    - 또한 소득세제의 누진적 구조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 즉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속도로 개인소득이 증가한다면 누진적 세율구조로 인해 GDP 대비 개인소득세수 비중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
    -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38%구간이 하향 조정되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이루어진 2014년의 세수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임

<표 2> 급여총계와 근로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 변화



주: 급여총계 비중은 GDP 대비 근로소득자 급여총계액의 비중이며 소득세수는 근로소득 세수의 GDP 대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개인소득세제에서 과세기반의 충실성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전체 과세대상 소득 중 과세표준의 비율, 산출세액 대비 결정세액의 비중, 면세자 비중 등을 많이 활용

- 과세대상 소득 중 과세표준의 비율은 비과세소득, 각종 소득공제 등으로 인한 세원누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개인소득세 부과대상 소득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 이 지표에는 세액산출 이후 부담을 경감하는 세액공제는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
  - 산출세액 대비 결정세액의 비중은 과세표준 결정 이후 세부담 결정과정에서 경감되는 세액, 즉 세액공제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
    - 역시 세액경감제도의 크기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지표
  - 면세자 비중은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보여주는 직관적인 지표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소득자 중에서 소득세부담이 없는 자의 비중으로 측정
    - 면세자 비중은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의 소득분포 변화 등에도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음
- 먼저 과세대상 소득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은 2005년 37.6%에서 2013년까지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전년대비 11.6%p 증가한 58.5%
- 종합소득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75~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4년 82.4%로 크게 증가
    -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된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비율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평가
  -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비율은 2005년 29.9%에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다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전년 대비 12.8%p 증가한 52.0% 수준으로 상승
    - 특별소득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 등을 세액공제 형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소득공제 규모는 축소되어 과세표준 비율이 상승
    -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을 위한 물리적 장소, 원료 등이 필요한 종합소득의 경우 경비율(필요경비/총수입금액)은 2014년 84.2% 수준(소득률은 15.8%)
      - 총수입금액 899.3조원 중 필요경비로 757.5조원을 신고하여 경비 비중은 84.2%

〈표 3〉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비율 추이

(단위: 십억원,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중소+근소) 과표비율
	과세소득	과세표준	과표비율	급여 총계	과세표준	과표비율	
2005	54,103	41,739	77.1	279,372	83,520	29.9	37.6
2006	65,001	50,179	77.2	317,872	95,466	30.0	38.0
2007	77,124	59,938	77.7	336,480	112,032	33.3	41.6
2008	85,083	64,665	76.0	361,879	118,048	32.6	40.9
2009	90,226	66,667	73.9	369,571	121,318	32.8	40.9
2010	100,267	75,259	75.1	401,086	144,657	36.1	43.9
2011	111,446	84,109	75.5	437,838	161,840	37.0	44.8
2012	126,023	93,668	74.3	470,772	179,225	38.1	45.7
2013	134,370	101,448	75.5	502,944	197,276	39.2	46.9
2014	144,783	119,311	82.4	533,727	277,643	52.0	58.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산출세액 중 공제되는 세액공제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세액공제율((산출세액 - 결정세액)/산출세액)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2005년 16.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13.7%까지 낮아졌다가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기타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2014년 귀속소득의 경우 31.2%까지 상승
  -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유사한 추세를 보임
    - 2005년 13.0%에서 2013년 9.6%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에는 15.2%로 크게 반등
  - 제도 변화가 없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액공제율의 하락은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별도의 관리대책이 세원확보를 위해 중요
    - 산출세액 자체는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소득증가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비율보다 일정금액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

〈표 4〉 소득유형별 세액공제율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

연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결정세액	세액공제율	산출세액	결정세액	세액공제율
2005	8,635	7,510	13.0	11,757	9,778	16.8
2006	10,463	9,320	10.9	13,747	11,566	15.9
2007	12,685	11,389	10.2	16,586	14,114	14.9
2008	13,258	11,839	10.7	16,715	14,182	15.2
2009	13,090	11,804	9.8	15,263	12,852	15.8
2010	14,844	13,292	10.5	18,294	15,586	14.8
2011	17,037	15,310	10.1	20,757	17,802	14.2
2012	18,900	17,038	9.9	23,203	19,971	13.9
2013	20,686	18,693	9.6	25,825	22,287	13.7
2014	24,768	20,994	15.2	36,919	25,398	31.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한편 세원 충실성의 또 다른 지표인 과세자 비중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4년 큰 폭으로 증가
  - 특별공제제도를 과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높아진 저소득층에서 면세자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
    -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2014년 귀속 소득의 경우 47.9%로 증가
  -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55.5%로 근로소득자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다가 2014년 귀속소득의 경우 29.3%까지 하락해 근로소득자보다 낮은 수준
    -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중에 영향을 미친 특별공제가 비근로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

<표 5>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

(단위: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확정신고자 비율	면세자 비율	면세자 비율
2005	52.2	55.5	48.9
2006	59.7	49.3	47.6
2007	62.6	47.0	42.2
2008	68.6	44.1	43.3
2009	71.8	43.8	40.4
2010	72.4	43.8	39.2
2011	73.0	43.2	35.9
2012	77.9	38.7	33.0
2013	80.5	36.3	32.2
2014	86.4	29.3	47.9

주: 확정신고자 비율은(확정신고자/납세인원 합계)×100이며 면세자 비율은(1-결정세액 있는 신고자/납세인원 합계)×100,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1-결정세액 있는 근로자/연말정산신고 인원)×1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외국에서도 각 국가의 개인소득세 포괄범위 및 과세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면세자 규모를 유지
  - 우리나라의 경우 총면세자 비중은 2014년 기준 43.1%로 전년(33.2%)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
    -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05년 50.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40.4%, 2013년 33.2%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43.1%로 크게 증가
  - 주요 선진국들의 개인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대체적으로 20~3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 영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면세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3~2014 과세연도 기준 비중은 5.9% 수준에 불과

<표 6> 주요국의 면세자 비율

(단위: 천명, %)

국가		총납세자 수	면세자 수	면세자 비율
한국(2014)	전체	22,476	9,682	43.1
	근로자	16,630	7,967	47.9
미국(2013)		147,351	52,819	35.8
캐나다(2013)		27,131	9,102	33.5
호주(2013~2014)		12,964	3,252	25.1
영국(2013~2014)		29,700	1,758	5.9

### III.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대안분석

- 2013년 세법개정과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특별공제항목들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통해 계산한 결과,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면세자의 비중은 32.16%에서 47.91%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면세자 축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미시자료에 근거하여 면세자 비중과 세부담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
  - 먼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서 면세자 비중의 자연감소율을 추정하고 면세자 축소 대안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
  - 다음으로 표준세액공제 축소 대안,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의 세 가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면세자와 세부담 효과를 심층 분석
  
- 먼저, 본 연구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명목임금이 증가할 경우를 상정하고, 면세자 비중의 자연감소율을 추정
  - 향후 가장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가정한 명목임금상승률 3%, 물가상승률 1%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 매년 약 1% 초중반 정도 면세자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 내에 5~8%p 정도 면세자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소득 기준 현재 면세자 비중이 약 48%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30%대로 면세자 비중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따라서 좀 더 빠르게 면세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 가장 현실성 있게 적용 가능한 세 가지 면세자 축소 대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면세자 축소 효과와 함께 세부담 증가 효과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각 축소 대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표준세액공제 축소 대안의 특징은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면세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나, 추가적인 세부담이 대부분 저소득 1인가구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
- 면세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 표준세액공제가 1만원 축소할 때 약 0.9%p 감소하며,
    - 급여구간별로는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자로 전환
    - 가구형태별로는 1인과 2인 가구에서 면세자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 추가 세부담의 변화는
    - 표준세액공제가 1만원 축소할 때, 1인당 평균 세부담은 약 1,412원 증가하며 총세수 증가액은 약 234.9억원으로 추정
    - 급여구간별로 총급여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대부분의 추가 세부담이 전가
    - 가구형태별로는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추가 세부담이 가장 높게 증가
-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의 특징은 가구형태와 상관없이 상당히 광범위한 소득구간의 근로자들을 과세자로 전환시킬 수 있으나, 모든 근로자의 결정세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대안에 비해 과세 부담이 큰 편
- 면세자 비중은 각 시나리오별로 약 2.0~5.7%p 감소할 것을 예상
    - 상당히 광범위한 소득구간(특히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에 걸쳐 감소하나,
    - 가구형태별로 상당히 균등하게 면세자 비중이 감소

- 각 시나리오별로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은 1.6만원에서 7.3만원에 이르며, 총 세수액은 최소 0.3조원에서 최대 1.2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급여구간별·가구형태별로 추가 세부담이 상당히 누진적으로 증가
  - 한편,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은 추가 세부담이 특정 개인에게 쏠리는 경향이 적고(추가 세부담의 최댓값이 작은 편), 대체로 전 소득계층에 걸쳐 고루 세부담이 전가되는 경향이 존재
-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의 특징은 중·상위의 특정구간(최상위 제외)을 타깃팅하여 면세자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로 중위 소득자와 다인가구에 과세가 전가되는 단점이 존재
- 면세자 비중은 적용대상자의 총급여 수준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5%p 내외, 2,500만원 이상인 경우 7%p 내외, 2,000만원 이상인 경우 10%p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급여구간별로는 2,000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의 소득에서 면세자의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나며,
    - 가구형태별로는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면세자 비중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
  - 추가 세부담은 적용자의 급여수준보다 공제한도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은 공제한도가 95%인 경우 약 2.5~3.7천원, 공제한도가 90%인 경우 약 5.9~8.5천원, 공제한도가 85%인 경우 약 3.9~13.9천원 증가
    - 이에 따른 총세수증가액은 최소 425억원에서 최대 2,318억원에 이릅니다
    - 급여구간별로는 중·상위 소득구간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가 가장 뚜렷
    - 가구형태별로는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라 뚜렷하게 세부담이 증가
- 면세자 축소 대안은 본질적으로 근로소득자 중 누군가의 세부담 증가라는 희생을 전제로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의 뚜렷한 정책적 목표와 주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
-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정책대안들도 각 대안별 장·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이전에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면세자 축소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

#### IV. 소득세제의 기부금 영향 분석

- 기부금에 대한 조세제도의 공제방식 변화와 동 시기에 나타난 기부금 변화로 인해 조세정책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
  -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의 감소가 실제 고소득 납세자들의 기부를 감소시켰는지, 그렇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 특히 가장 최근의 연구인 송헌재(2013)의 경우 외국에 비해 매우 큰 가격탄력성을 제시하여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기부금 감소가 매우 클 수 있었음을 제시
    - 그러나 서베이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이 분포하지 않고 실제 소득세 신고자료와 일치하는 소득자는 많지 않음
- 충분한 규모의 실제 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정책 개혁 전후에 나타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증모형을 통해 분석할 필요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야기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향후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필요
  -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패널로 구성하여 세제 변화에 따른 기부금 변화를 분석
- 분석 결과 기부금액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0.1 \sim -0.2$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소득탄력성이 0.7 내외로 높은 수준
  - 구체적으로 기부참여 여부는 기부가격의 수준보다 변화율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받으며, 기부금액의 결정에서도 연말정산의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도 가격수준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음
    - 기부가격의 시차효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가격탄력성은 매우 낮은 수준
  - 서베이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추정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 가격탄력성의 경우, 송헌재(2013)의  $-7.5 \sim -9.9$ , 박기백(2010)  $-0.56$ 보다 낮은 수준으로 박기백(2010)에 가까운 추정치

- 선행연구들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외생적 정책 변화가 없었고 이질적인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기부금 변화만 고려한 한계는 존재
- 소득탄력성의 상대적 크기도 가격탄력성보다 크게 나타나 송헌재(2013)보다는 박기백(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

-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것은 조세정책을 통한 사회후생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조세지원의 효과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 기부금 지출이 조세지원보다는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세지원 강화를 통한 기부금 증가 정책의 당위성 또는 효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 정부의 재원조달비용을 평균 1.5로 가정할 때 가격탄력성(절대값)이 0.3보다 커야 조세지원 증가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Almunia, Lockwood and Scharf, 2016)

## V. 결론

- 2014년 다양한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부금에 대한 조세정책 변화에 대한 논란도 제기
  - 2013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 특별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 근로소득자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 허용이 과세기반을 잠식하고 소득수준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기인
  - 그러나 중하위소득자들에 대해 한계세율보다 높은 15% 등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이어진 보완조치로 인해 면세자 비중은 크게 증가
  - 기부금에 대한 조세제도의 공제방식 변화와 동 시기에 나타난 기부금 변화로 인해 조세정책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
- 본 연구는 면세자 비중의 축소 대안별 효과성을 검토하고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공익적 활동 증가가 목적인 기부금에 대한 조세의 영향분석이 목적

- 면세자 비중에 대한 분석결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면세자 축소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
  - 먼저, 정책의 목표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면, 표준세액 공제 축소안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이 합리적
    - 단, 표준세액공제 축소는 1인가구에 세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종의 싱글세(single tax)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중·상위 소득자들을 타깃팅(최상위 제외)하여 면세자 축소를 도모한다면,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대안이 효과적
    - 단, 다인가구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출산과 관련한 보조적인 정책적 대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상기의 두 대안은 단기적으로 면세자를 축소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소득세율 구조의 정상화에는 기여하는 바가 적을 것으로 판단
  - 반면,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은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율 구조의 정상화와 장기적인 면세자 비중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기부금에 대한 조세정책의 영향 분석결과 기부금액의 가격탄력성은  $-0.1 \sim -0.2$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소득탄력성이 0.7내외로 높은 수준
  - 기부 여부는 기부가격의 수준보다 변화율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받으며 기부금액의 결정에서도 연말정산의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도 가격수준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 이러한 탄력성 규모는 선행연구들의 추정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 가격탄력성의 경우, 송헌재(2013)의  $-7.5 \sim -9.9$ , 박기백(2010)  $-0.56$ 보다 낮은 수준으로 박기백(2010)에 가까운 추정치
    - 선행연구들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외생적 정책 변화가 없었고 이질적인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기부금 변화만 고려한 한계는 존재
    - 소득탄력성의 상대적 크기도 가격탄력성도 크게 나타나 송헌재(2013)보다는 박기백(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
  -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것은 조세정책을 통한 사회후생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지원의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
    - 기부금 증대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의 근거가 약함을 시사



# 목 차

I. 연구의 배경 .....	25
II. 근로소득세제와 운영현황 .....	31
1. 근로소득세제 .....	33
2. 운영현황 .....	38
3. 주요국의 면세자 비중 .....	55
III.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대안 분석 .....	61
1. 현황 및 배경 .....	63
2. 분석자료 .....	71
3. 시나리오 분석 .....	73
가. 현행 제도 유지: 명목임금상승률 가정 .....	78
나. 시나리오 1: 표준세액공제 축소 대안 .....	95
다. 시나리오 2: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 .....	107
라. 시나리오 3: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	118
4. 소결 및 정책 대안 평가 .....	134
IV. 소득세제의 기부금 영향 분석 .....	141
1. 기부금 공제제도 .....	143
2. 선행연구 .....	152
3. 추정모형 .....	154
4. 분석자료 .....	158
5. 분석결과 .....	166

가. 단순 모형(Panel Regression with Fixed Effects) .....	167
나. 2단계 추정모형(Two step Selection Correction Model) .....	171
6. 소결 .....	175
V. 결 론 .....	177
참고문헌 .....	182
부 록 .....	185

## 표 목 차

<표 II-1> OECD 국가 소득세율 구조 비교: 2015년 기준 .....	36
<표 II-2> OECD 국가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2015, 중앙정부 기준) .....	37
<표 II-3> OECD 국가 개인소득세(1110) 비중 .....	39
<표 II-4> 국민부담률 중 개인소득세(1110) 비중 .....	40
<표 II-5> 개인소득세수의 변동 .....	41
<표 II-6> 개인소득세수와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국제비교(GDP 비중) .....	43
<표 II-7> 주요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2014) .....	44
<표 II-8> 주요국의 노동소득 Tax Wedge(2014년 평균임금 기준) .....	45
<표 II-9>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공제자 규모(2014년 귀속) .....	48
<표 II-10>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비율 추이 .....	49
<표 II-11> 신고자 유형별 소득공제 내역(2014년 귀속) .....	50
<표 II-12> 소득유형별 세액공제율 변화 추이 .....	51
<표 II-13>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 .....	52
<표 II-14>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 내역 .....	53
<표 II-15> 연말정산 보완대책 1 .....	54
<표 II-16> 연말정산 보완대책 2(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54
<표 II-17> 주요국의 면세자 비율 .....	55
<표 II-18> 주요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 추이 .....	56
<표 II-19> 미국 소득구간별 tax return 신고자 분포(2013년 기준) .....	57
<표 II-20> 호주 소득구간별 tax return 신고자 분포(2013~14 기준) .....	58
<표 II-21> 캐나다 소득구간별 tax return 신고자 분포(2013년 기준) .....	59
<표 II-22> 영국 소득구간별 납세자 분포(2013~14 기준) .....	60
<표 III-1>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 내역 .....	64
<표 III-2>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2009~2014) .....	66
<표 III-3> 부양가족 인원별 면세자 비중(2009~2014) .....	68

<표 III-4> 급여구간별 표본 비교 .....	72
<표 III-5> 부양가족 수별 표본 비교 .....	72
<표 III-6>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정태분석 반영 방법 .....	75
<표 III-7> 명목임금상승률 가정별 면세자 비중 변화 .....	80
<표 III-8> 명목임금상승률 가정과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 변화 .....	82
<표 III-9> 명목임금상승률 가정과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 변화 .....	86
<표 III-10> 명목임금상승률 가정과 급여구간별 유효세율 변화 .....	89
<표 III-11> 명목임금상승률 가정과 가구형태별 유효세율 변화 .....	93
<표 III-12> 표준세액공제 대안별 면세자 비중 변화 .....	97
<표 III-13> 급여구간별(총급여기준) 면세자 비중 변화(표준세액공제 대안) .....	98
<표 III-14>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표준세액공제 대안) .....	100
<표 III-15> 표준세액공제 대안별 세부담 증가 .....	102
<표 III-16> 급여구간별(총급여기준) 평균 세부담 증가(표준세액공제 대안) .....	104
<표 III-17> 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가(표준세액공제 대안) .....	106
<표 III-18>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 .....	107
<표 III-19> 근로소득공제 대안별 면세자 비중 변화 .....	110
<표 III-20> 급여구간별(총급여기준) 면세자 비중 .....	111
<표 III-21>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 .....	112
<표 III-22> 근로소득공제 대안별 세부담 증가 .....	114
<표 III-23> 급여구간별(총급여기준) 세부담 증가(근로소득공제 대안) .....	115
<표 III-24> 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가(근로소득공제 대안) .....	117
<표 III-25>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 .....	118
<표 III-26>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적용대상 .....	120
<표 III-27> 세액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주요 항목별 면세자 비중 변화 .....	121
<표 III-28>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면세자 비중 변화 .....	124
<표 III-29>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26
<표 III-30>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28
<표 III-31>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세부담 증가 .....	130
<표 III-32> 급여구간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31
<표 III-33> 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33

<표 IV-1>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의 변화 .....	144
<표 IV-2> 기부금 세제개편 전후(2013년 대비 2014년)의 지표별 변화 방향 .....	152
<표 IV-3> 연도별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	156
<표 IV-4> 기초통계량 .....	159
<표 IV-5> 기부금 관련 변수의 연도별 추이 .....	159
<표 IV-6> 소득구간별 기부자 비율 추이 .....	160
<표 IV-7>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단순 가격탄력성(Diff-in-Diff) .....	165
<표 IV-8> 주요 변수 설명 .....	166
<표 IV-9> 기부결정요인 회귀분석(Probit regression, Extensive Margins) .....	168
<표 IV-10> 기부금액에 대한 가격 영향(LSDV) .....	169
<표 IV-11> 기부결정요인 회귀분석(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자) .....	170
<표 IV-12> 기부금액에 대한 가격 영향(LSDV,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71
<표 IV-13> Heckman selection model(Pooled Regression) .....	172
<표 IV-14> Heckman selection model(Pooled Regression,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73
<표 IV-15> 기부여부 분석모형(Probit regression, annual) .....	174
<표 IV-16> 기부금액 분석모형(Pooled regression) .....	174
<표 IV-17> 기부금액 분석모형(Pooled regression,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75

## 부 표 목 차

<부표 1> 소득구간별 평균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추이 .....	187
<부표 2> 소득구간별 평균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추이 .....	187
<부표 3> 소득구간별 평균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추이 .....	187
<부표 4>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외납세액공제 제외) .....	188
<부표 5>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면세자 비중 변화 .....	190
<부표 6>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91
<부표 7>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93
<부표 8>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세부담 증가 .....	195
<부표 9> 급여구간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96
<부표 10> 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98

## 그림 목 차

[그림 II-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과 과세방식 .....	33
[그림 II-2] 종합소득 과세체계(2016) .....	34
[그림 II-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과세체계(2006) .....	35
[그림 II-4] 급여총계와 근로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 변화 .....	42
[그림 II-5] 개인소득자의 소득수준별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2015 기준) .....	46
[그림 II-6] 부부(소득자 1인)의 소득수준별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2015 기준) .....	46
[그림 II-7] 4인가구(소득자 1인)의 소득수준별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2015 기준) .....	47
[그림 II-8] 근로소득자 규모와 면세자 비중 변화 추이 .....	53
[그림 III-1] 연도별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변화 .....	65
[그림 III-2]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 변화 .....	66
[그림 III-3] 부양가족 수별 면세자 비중 변화 .....	68
[그림 III-4] 명목임금상승률 가정별 면세자 비중 변화 .....	80
[그림 III-5] 명목임금상승률 가정과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 변화 .....	84
[그림 III-6] 명목임금상승률 가정과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 변화 .....	87
[그림 III-7] 명목임금상승률 가정과 급여구간별 유효세율 변화 .....	91
[그림 III-8] 명목임금상승률 가정과 가구형태별 유효세율 변화 .....	94
[그림 III-9] 표준세액공제 대안별 면세자 비중 변화 .....	97
[그림 III-10]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 변화(표준세액공제 대안) .....	99
[그림 III-11] 가구형태와 면세자 비중(표준세액공제 대안) .....	100
[그림 III-12] 표준세액공제 대안별 세부담 증가 .....	103
[그림 III-13] 급여구간별 세부담 증가(표준세액공제 대안) .....	105
[그림 III-14] 가구형태와 세부담 증가(표준세액공제 대안) .....	107
[그림 III-15] 근로소득공제 대안별 면세자 비중 .....	110
[그림 III-16]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근로소득공제 대안) .....	111
[그림 III-17] 가구형태와 면세자 비중(근로소득공제 대안) .....	113

[그림 III-18] 근로소득공제 대안별 세부담 증가 .....	114
[그림 III-19] 급여구간별 세부담 증가(근로소득공제 대안) .....	116
[그림 III-20] 가구형태와 세부담 증가(근로소득공제 대안) .....	117
[그림 III-21]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면세자 비중 .....	125
[그림 III-22]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27
[그림 III-23]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29
[그림 III-24]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세부담 증가 .....	131
[그림 III-25] 급여구간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32
[그림 III-26] 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34
[그림 IV-1] 기부금 규모 및 공제 신청자 추이 .....	144
[그림 IV-2] 기부금 공제 신청자 비중 및 평균기부액 추이 .....	145
[그림 IV-3] 기부금 공제신청자의 평균기부액과 기부율 추이 .....	146
[그림 IV-4] 과표구간별 소득자의 기부금액 변화 추이 .....	147
[그림 IV-5] 과표구간별 기부금공제 신청자 추이 .....	148
[그림 IV-6] 과표구간별 소득자 대비 기부금공제 신청자 비중 .....	149
[그림 IV-7] 기부금공제 신청자의 과표구간별 평균 기부금액 .....	150
[그림 IV-8] 기부금공제 신청자의 과표구간별 기부율 추이 .....	151
[그림 IV-9] 기부가격 변화 .....	157
[그림 IV-10] 성별·소득수준별 기부자 비율(2015) .....	160
[그림 IV-11] 성별·소득수준별 기부율(2015) .....	161
[그림 IV-12] 연도별 평균 기부금액 변화 추이 .....	162
[그림 IV-13] 연도별 평균 기부금액 변화 추이(과표 8,800만원 이상 소득자) .....	163
[그림 IV-14] 연도별 평균 기부금액 변화 추이(과표 8,800만원 이상이며 기부자) ...	164

## 부도목차

[부도 1]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면세자 비중 .....	190
[부도 2]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92
[부도 3]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94
[부도 4]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세부담 증가 .....	195
[부도 5] 급여구간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97
[부도 6] 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	199



# I. 연구의 배경





## I. 연구의 배경

- 2014년 다양한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크게 증가
  - 2013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 특별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 근로소득자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 허용이 과세기반을 잠식하고 소득수준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기인
  - 그러나 중하위소득자들에 대한 한계세율보다 높은 15% 등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이어진 보완조치로 인해 면세자 비중은 크게 증가
    - 최하위 소득세율 6%가 적용되던 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제세액이 증가
    - 이에 따라 2013년 32.2% 수준이었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4년 47.9%로 크게 증가<sup>1)</sup>
    -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귀속소득 기준 48.9%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 32.2%까지 하락하였다가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그 보완조치로 인해 2014년에는 47.9%로 크게 증가
  
- 이는 과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면세자 비중 축소 노력을 완전히 뒤흐드는 결과로서 소득세제의 역할 확대에 부정적
  - 높은 면세자 비중은 재원조달과 소득재분배기능을 하는 개인소득세의 역할 확대라는 정책방향을 왜곡할 수 있는 요인
  -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소득세 비중 확대에도 어려움
  
- 개인소득세의 세입기능과 재분배기능 확대를 위해 향후 면세자 비중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1)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면세자 비중은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기준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급여총계를 기준으로 계산한 면세자 비중과는 차이가 있음. 참고로 급여총계를 기준으로 계산한 면세자 비중은 2014년 48.1%임.

-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제제도들을 점검하고 그 변화에 따른 면세자 비율에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세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한편, 다양한 특별공제제도 중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 전환은 기부자의 기부가격에 영향을 미쳐 전체 기부금 수준을 변화시켜 각종 공익법인, 기부금수수단체 등을 통한 공익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정책 변화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
  - 기부금을 통한 공익활동 증가는 정부와 민간의 비용분담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님
  - 세부담 변화가 야기하는 기부금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기부금을 통한 공익활동 수준 변화를 점검할 필요
    - 세부담 변화 또는 이에 따른 정부수입 변화에 대해 기부금액 변화 정도의 크기에 따라 기부금 장려를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
    - 세부담에 대한 기부금액탄력성이 클수록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공익활동을 유발할 수 있음
  
- 서베이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방법론에 따라 기부금액의 가격탄력성이 큰 격차를 보이므로 충분한 규모의 소득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필요
  - 박기백(2010)은 단년도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0.346으로 추정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음
  - 반면 송헌재(2014)는 재정패널자료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매우 탄력적인 7.5~9.9 정도로 추정
  
- 실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을 중심으로 소득신고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기부금의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측정함으로써 기부금관련 조세정책 변화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
  - 2014년부터 시행된 기부금 세액공제로의 전환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부금 변화에 대한 조세정책의 효과를 검토

-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 공제라는 정부보조를 통한 공익활동 수준에 대한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조세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중 축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점검하고 기부금 수준에 대한 조세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
- 이를 통해 관련 향후 조세정책 결정과정에 적절한 판단근거를 제공



## Ⅱ. 근로소득세제와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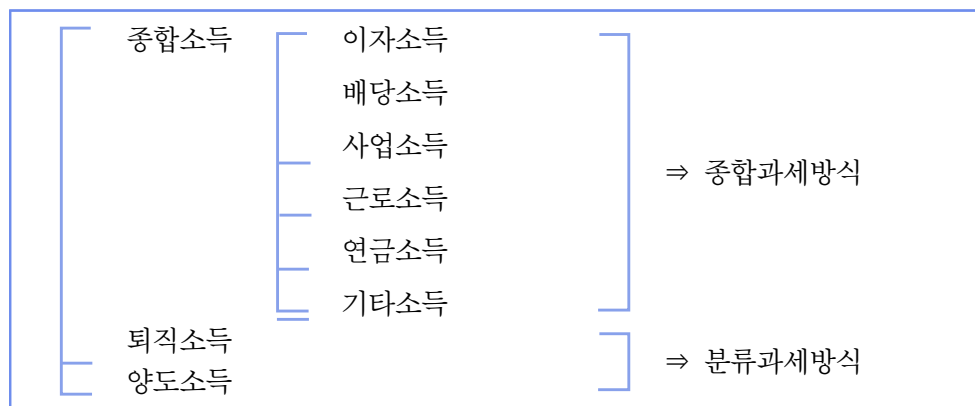


## II. 근로소득세제와 운영현황

### 1. 근로소득세제

-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은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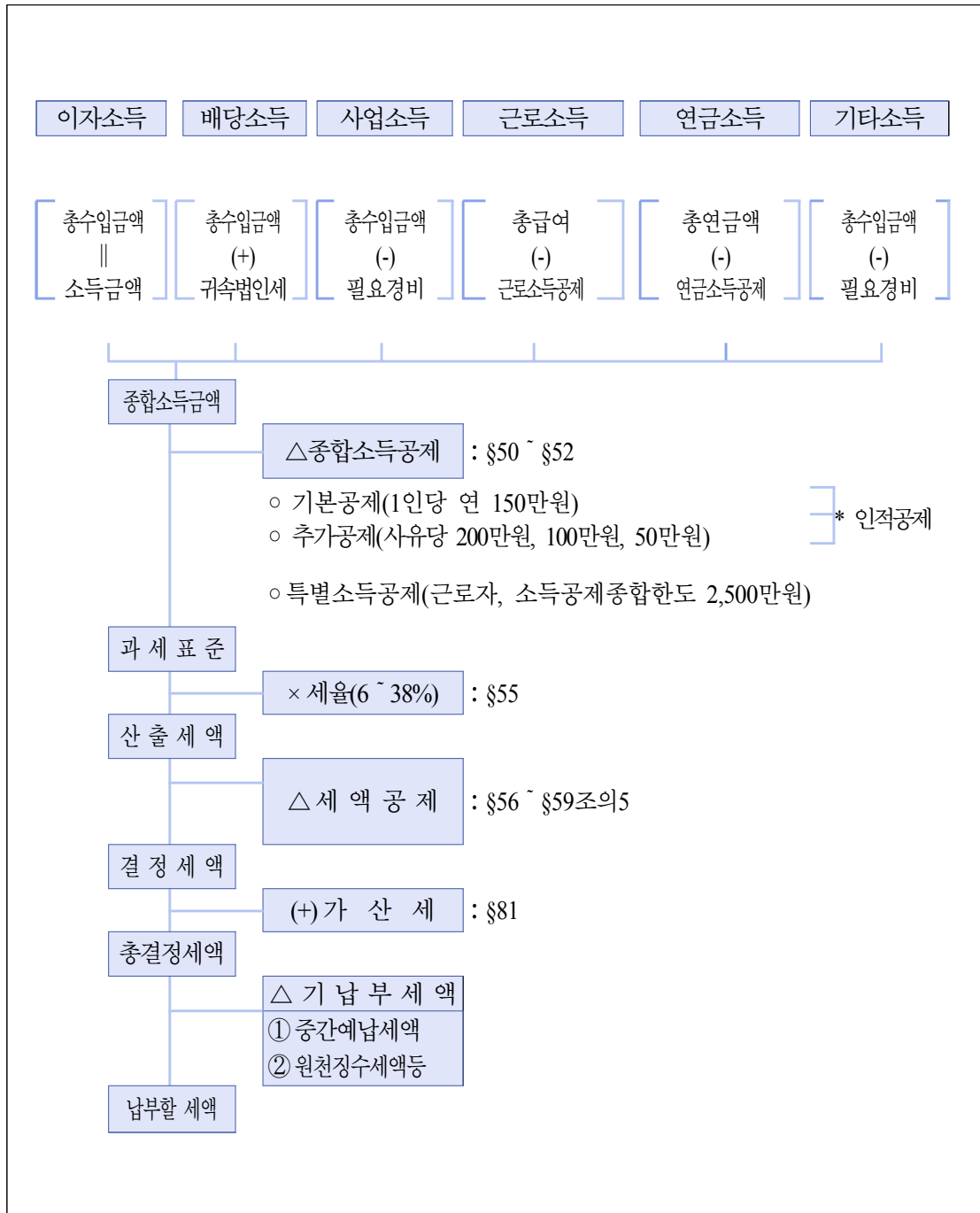
[그림 II -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과 과세방식



자료: 기획재정부, 『2015 조세개요』, 2015.

- 종합과세는 기본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세율,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
  - 2014년 귀속소득부터 이전의 특별공제, 표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제도가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로 전환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있어 공제율은 15%, 12%로 차등화되었는데 15% 적용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2천만원 초과분 30%),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등이며 12% 적용항목은 연금저축(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퇴직연금, 일반보장성보험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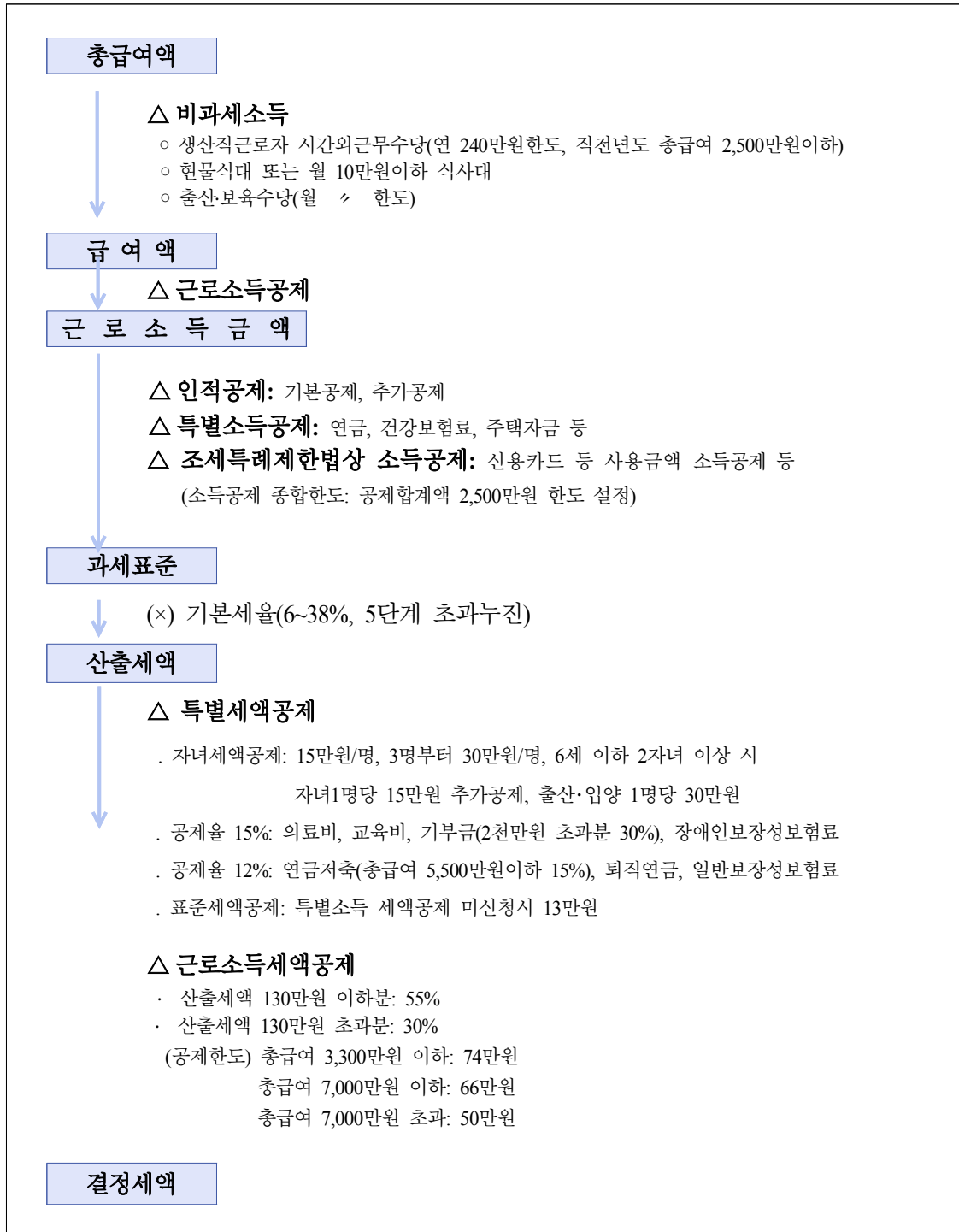
[그림 II -2] 종합소득 과세체계(2016)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5, p. 51을 저자 수정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도출

[그림 II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과세체계(2006)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5, p. 65를 저자 수정

- 종합소득세율 체계는 5단계 누진세율체제로 최저세율은 6%, 최고세율은 38% 수준
  - OECD 국가들은 다양한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는 단일세율체계이며 그 외 국가들은 2단계부터 최대 19단계까지의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
  - 총 35개 국가 중 3~5단계 세율체계를 가진 국가가 20개로 전체의 57.1%

〈표 II -1〉 OECD 국가 소득세율 구조 비교: 2015년 기준

(단위: 개)

단계	국가 수	해당국가
1단계	4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2단계	3	덴마크,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3단계	6	그리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영국
4단계	6	오스트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터키
5단계	8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6단계	1	핀란드
7단계	3	이스라엘, 일본, 미국
8단계	1	칠레
11단계	2	멕시코, 스위스
19단계	1	룩셈부르크

주: 스웨덴, 칠레는 0% 세율구간을 제외할 경우 과세표준 구간이 각각 2개, 7개임  
 자료: OECD Tax Database

- OECD 35개 국가의 중앙정부 최고소득세율 평균은 35.5%로 우리나라 최고세율 38%를 하회하는 수준
  - 최저세율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은 10.5%로 우리나라의 6%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형성
  - 과표구간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은 4.8개로 우리나라의 5개와 차이가 없음
- G7 국가의 경우 최고세율은 29~45% 수준에 형성되어 있으나 캐나다의 29%를 제외할 경우 39.6~45%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38%로 소폭 높은 수준
  - 과표구간의 수 역시 3~7개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5개와 차이 없음

<표 II -2> OECD 국가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2015, 중앙정부 기준)

(단위: 자국통화 기준, %)

구분	최저세율구간		최고세율구간		구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호주	18,200	0	180,000	45	5
오스트리아	11,000	0	60,000	50	4
벨기에	8,710	25	37,870	50	5
캐나다	44,701	15	138,586	29	3
칠레	7,282,710	0	80,919,000	40	8
체코	-	15	-	15	1
덴마크	459,200	8.08	459,200	23.08	2
에스토니아	-	20	-	20	1
핀란드	16,500	0	90,000	31.75	6
프랑스	9,700	0	152,108	45	5
독일	8,472	0	250,730	45	5
그리스	25,000	22	42,000	42	3
헝가리	-	16	-	16	1
아이슬란드	3,709,680	22.86	10,036,847	31.8	3
아일랜드	33,800	20	33,800	40	2
이스라엘	63,240	10	810,720	50	7
이탈리아	15,000	23	75,000	43	5
일본	1,950,000	5	40,000,000	45	7
한국	12,000,000	6	150,000,000	38	5
라트비아	-	23	-	23	1
룩셈부르크	11,265	0	100,000	40	19
멕시코	5,952.85	1.92	3,000,000	35	11
네덜란드	19,822	8.35	57,585	52	4
뉴질랜드	14,000	10.5	70,000	33	4
노르웨이	550,550	13.15	885,600	25.15	3
폴란드	3,091	0	85,528	32	3
포르투갈	7,000	14.5	80,000	48	5
슬로바키아	35,022.31	19	35,022.31	25	2
슬로베니아	8,021.34	16	70,907.20	50	4
스페인	12,450	9.50	60,000	22.5	5
스웨덴	430,200	0	616,100	25	3
스위스	14,500	0	755,200	11.5	11
터키	12,000	15	106,000	35	4
영국	31,785	20	150,000	45	3
미국	9,225	10	413,200	39.6	7
평균	-	10.5	-	35.5	4.8

주: 중앙정부 소득세 세율로 부가세(sur tax)는 제외됨

자료: OECD Tax Database

## 2. 운영현황

-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총개인소득세(revenues on income and profits of individuals, 1110) 수입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GDP 중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수입 비중은 2000년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3.5% 수준에 이룸
  - 그러나 OECD 국가의 평균 개인소득세 세입 수준은 GDP 대비 8.9%(2013년)로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G7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의 5.8%를 제외하면 모두 GDP 대비 8% 이상의 세입규모를 보여주며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11.6%에 달함
  
- 전체 세입 중 개인소득세의 역할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 중 개인소득세 수입 비중은 2014년 14.1% 수준에 이르나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임
  - 2013년 기준 개인소득세 비중의 OECD 평균은 25.9%로 10%p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낮은 국가는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국가 정도
  -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비중 19.2%(2013)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상황

〈표 II -3〉 OECD 국가 개인소득세(1110) 비중

(단위: GDP 대비 %)

	2000	2005	2010	2012	2013	2014
Australia	11.5	11.9	9.8	10.7	10.8	..
Austria	9.3	9.0	9.2	9.6	9.7	10.1
Belgium	13.7	12.5	12.0	12.3	12.8	12.9
Canada	12.9	11.5	10.6	11.1	11.2	11.3
Chile	..	..	..	..	..	..
Czech Republic	4.2	4.2	3.3	3.6	3.7	3.5
Denmark	24.7	24.0	23.6	23.8	26.1	27.7
Estonia	6.8	5.5	5.3	5.3	5.5	5.8
Finland	14.0	12.9	12.1	12.5	12.8	13.4
France	7.8	7.7	7.0	8.0	8.4	8.4
Germany	9.2	7.8	8.5	9.3	9.5	9.5
Greece	4.8	4.5	4.3	7.0	6.0	..
Hungary	7.2	6.6	6.6	5.7	5.4	5.0
Iceland	12.6	13.7	12.2	13.2	13.8	13.8
Ireland	9.2	7.4	8.0	8.8	9.1	9.3
Israel	10.0	7.3	5.5	5.3	5.4	5.6
Italy	10.0	10.0	11.3	11.7	11.7	11.6
Japan	5.6	5.0	5.1	5.5	5.8	5.8
Korea	2.9	2.5	2.7	3.2	3.3	3.5
Luxembourg	6.8	7.3	8.0	8.5	8.8	8.8
Mexico	..	..	..	..	..	..
Netherlands	5.6	6.5	8.0	7.3	7.1	..
New Zealand	14.0	14.8	11.5	12.2	11.9	12.4
Norway	10.1	9.5	9.9	9.7	9.9	9.8
Poland	..	..	..	..	..	..
Portugal	..	..	..	..	..	..
Slovak Republic	3.3	3.0	2.7	2.9	2.9	3.0
Slovenia	5.5	5.4	5.6	5.7	5.2	5.0
Spain	6.2	6.4	6.8	7.3	7.3	7.4
Sweden	14.8	13.9	11.1	11.2	11.3	11.0
Switzerland	8.2	8.7	8.5	8.5	8.5	8.4
Turkey	5.4	3.6	3.7	4.0	4.1	4.2
United Kingdom	10.0	9.6	9.3	8.8	8.9	8.7
United States	10.5	8.3	7.1	8.6	9.1	9.1
OECD Average	9.2	8.7	8.3	8.7	8.9	..

자료: OECD.stat

〈표 II -4〉 국민부담률 중 개인소득세(1110) 비중

(단위: %)

	2000	2005	2010	2012	2013	2014
Australia	37.9	39.7	38.4	39.2	39.2	..
Austria	22.2	22.1	22.5	22.9	22.9	23.6
Belgium	31.3	28.9	28.3	27.9	28.6	28.8
Canada	36.8	35.5	34.9	36.2	36.6	36.6
Chile	..	..	..	..	..	..
Czech Republic	12.9	12.3	10.2	10.6	10.7	10.5
Denmark	51.3	48.4	50.8	51.4	54.8	54.4
Estonia	22.1	18.2	15.9	16.5	17.3	17.7
Finland	30.6	30.6	29.5	29.3	29.3	30.6
France	18.0	18.0	16.9	18.0	18.6	18.6
Germany	25.3	23.0	24.2	25.7	26.1	26.3
Greece	14.5	14.5	14.0	20.1	17.5	..
Hungary	18.6	18.0	17.5	14.7	14.1	13.0
Iceland	34.8	34.9	36.6	37.4	38.2	35.6
Ireland	29.7	25.2	30.0	31.6	31.2	31.1
Israel	28.1	21.3	17.8	17.9	17.5	18.1
Italy	24.7	25.5	27.3	26.7	26.5	26.6
Japan	21.1	18.3	18.6	18.6	19.2	..
Korea	13.6	11.2	11.6	12.8	13.4	14.1
Luxembourg	18.2	19.0	21.0	21.9	22.8	23.3
Mexico	..	..	..	..	..	..
Netherlands	15.2	17.8	22.2	20.1	19.4	..
New Zealand	42.6	40.6	37.2	37.7	38.0	38.3
Norway	23.7	21.9	23.3	23.4	24.5	25.1
Poland	..	..	..	..	..	..
Portugal	..	..	..	..	..	..
Slovak Republic	9.9	9.6	9.6	10.3	9.6	9.8
Slovenia	15.0	14.3	15.2	15.4	14.2	13.8
Spain	18.7	18.2	21.8	22.7	22.4	22.4
Sweden	30.3	29.9	25.7	26.3	26.4	25.8
Switzerland	29.8	32.8	32.2	31.7	31.5	31.6
Turkey	22.2	14.7	14.0	14.4	13.9	14.7
United Kingdom	28.7	28.5	28.3	26.7	27.0	26.8
United States	37.1	31.6	30.0	35.6	35.9	35.0
OECD Average	26.9	25.6	25.3	25.8	25.9	..

자료: OECD.stat

- 최근 소득세수는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3년 3.1%까지 하락하였으나 회복되는 추세로 2015년 증가율은 13.9% 수준
  -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10%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14년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율이 15.5% 수준으로 높아졌다가 2015년에는 6.7%로 안정화
  - 근로소득세의 2010~2015년 기간 평균 증가율은 11.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전체 소득세 증가율 9.9%를 상회하는 수준
    - 전체 국세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 개인소득세 부문

〈표 II -5〉 개인소득세수의 변동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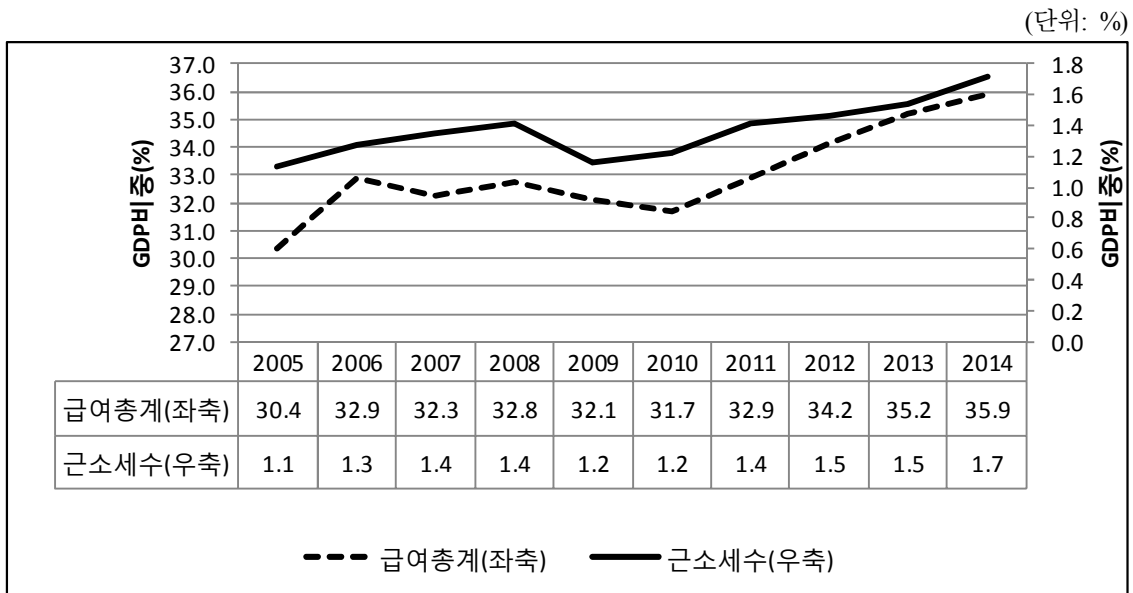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0~2015 평균증가율
국세	177.7 (8.0)	192.4 (8.3)	203.0 (5.5)	201.9 (-0.5)	205.5 (1.8)	217.9 (6.0)	4.2
소득세	37.9 (8.9)	42.7 (12.6)	46.4 (8.7)	47.8 (3.1)	53.3 (11.5)	60.7 (13.9)	9.9
종합소득세	6.8 (4.7)	8.3 (21.9)	9.9 (19.7)	10.9 (9.7)	11.5 (5.5)	12.8 (11.3)	13.5
근로소득세	15.5 (15.7)	18.7 (20.8)	20.2 (7.6)	22.0 (9.1)	25.4 (15.5)	27.1 (6.7)	11.8
양도소득세	8.2 (11.7)	7.4 (-9.5)	7.5 (1.5)	6.7 (-10.7)	8.0 (19.4)	11.9 (48.8)	7.8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세입세출마감」, 각 년도.

- 근로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과세대상인 급여총계의 GDP 대비 비중 추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임
  - 2009~2010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여총계 비중 하락이 나타났으나 근로소득세수는 세율 인하 첫해인 2009년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회복하는 모습
  - 근로소득세수는 세율 인하, 인상 등에 따라 단기적인 변화를 보여주나 상승추세는 지속
    -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근로소득세 대상인 임금근로자 규모, 즉 급여총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

- 또한 소득세제의 누진적 구조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 즉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속도로 개인소득이 증가한다면 누진적 세율구조로 인해 GDP 대비 개인 소득세수 비중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
-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38%구간이 하향 조정되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이루어진 2014년의 세수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임

[그림 II -4] 급여총계와 근로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 변화



주: 급여총계 비중은 GDP 대비 근로소득자 급여총계액의 비중이며 소득세수는 근로소득 세수의 GDP 대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1100) 세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개인소득세 세수입 비중은 2014년 기준 GDP 대비 4.0%로 G7 국가의 10.0%에 비해 낮은 수준
    -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세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2014년 기준 5.8%에 이룸
  - 전체 세수입에서 개인소득세(1100)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세수입 비중 역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
    - 2014년 기준 16.3%의 비중을 보여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의 28.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소득재분배에 유리한 개인소득세 비중이 낮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분배에 불리한 구조이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왜곡적 조세의 비중이 낮아 성장에 유리한 구조

〈표 II -6〉 개인소득세수와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국제비교(GDP 비중)

(단위: %)

구분	국민부담률('14,A)			개인소득세수 <sup>1)</sup> (B)	(B/A)×100
	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기여금		
한국	24.6	18.0	6.6	4.0	16.3
OECD 평균 <sup>2)</sup>	34.2	25.1	9.1	8.8	25.7
G7 평균 <sup>3)</sup>	35.7	25.5	10.2	10.0	28.0
미국	26.0	19.8	6.2	9.9	38.1
영국	32.6	26.5	6.1	9.0	27.6
프랑스	45.2	28.2	17.1	8.4	18.6
독일	36.1	22.1	14.0	9.5	26.3
이탈리아	43.6	30.5	13.1	11.6	26.6
캐나다	30.8	25.9	5.0	11.3	36.7

주: 1) 개인소득세수는 OECD 분류코드 1100 기준(개인의 양도소득세수 포함)

2) OECD 평균은 2013년 자료

3) G7 국가 중 데이터가 없는 일본(개인소득세수는 5.8%, 2014) 제외

자료: OECD.stat

- 소득세 세입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최고세율의 수준과 함께 동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자 범위도 중요
  -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각 국가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상대적인 적용 소득수준을 평가할 경우, 우리나라는 약 3.77배로 G7 평균인 4.39배에 비해 낮은 수준
    - 외국에 비해 낮은 상대소득 구간에서 최고세율 적용<sup>2)</sup>
  - 반면 최고세율은 G7 평균값인 40.9%보다 낮은 38%로 상대적으로 낮은 최고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부터 적용시키는 체계
    - 가장 낮은 소득구간에서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이탈리아로 평균임금의 2.46배 수준에서 최고세율 43%가 적용
    - 반면 미국(개인 기준)의 경우 평균소득의 8.12배 수준에서 최고세율 39.6%가 적용되어 점진적 세부담 증가를 보여줌

2) 공제제도의 규모에 따라서도 적용소득 수준이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존재로 상대적으로 명목소득과 과세표준 간 격차가 커 실제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도출된 수치보다 높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세 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 평균임금의 3.69배 수준에서 최고세율 40%를 적용하여 누진성 측면에서도 매우 유사한 경향

<표 II -7> 주요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2014)

(단위: %, 배)

	2014 평균임금 (A, 각국 통화)	최고세율 (중앙정부)	적용구간 (B, 각국 통화)	적용배율 (B/A)
캐나다	49,481	29.00	136,270	2.75
프랑스	37,427	45.00	151,956	4.06
독일	45,952	45.00	250,730	5.46
이탈리아	30,463	43.00	75,000	2.46
일본	4,881,994	40.00	18,000,000	3.69
한국	39,781,075	38.00	150,000,000	3.77
영국	35,633	45.00	150,000	4.21
미국(개인)	50,075	39.60	406,750	8.12
G7평균	-	40.9	-	4.39

자료: OECD, *Taxing Wages 2013~2014*, 2015

- 근로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노동소득 Tax Wedge는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2014년 기준 Tax Wedge(즉 기업이 지불하는 총고용비용 중 근로자 가치분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비중)는 21.5%로 미국 31.5%, 일본 31.9%, 영국 31.1%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40% 이상의 높은 수준
    - Tax Wedge를 구성하는 항목은 소득세,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 등임
    - 즉 Tax Wedge = (소득세+근로자 및 고용주 사회보험료)/(임금+고용주 사회보험료)
  -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Tax Wedge 수준에는 낮은 소득세 부담이 가장 크게 기여하며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도 일부 기여
    - 소득세에 의한 Tax Wedge는 4.6%로 일본의 6.6%보다도 낮고 다른 국가들은 10%를 상회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 허용하는 관대한 소득공제 등의 영향

-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도 총고용비용의 9.3% 수준으로 미국의 8.9%보다는 높지만 일본의 12.9%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표 II -8> 주요국의 노동소득 Tax Wedge(2014년 평균임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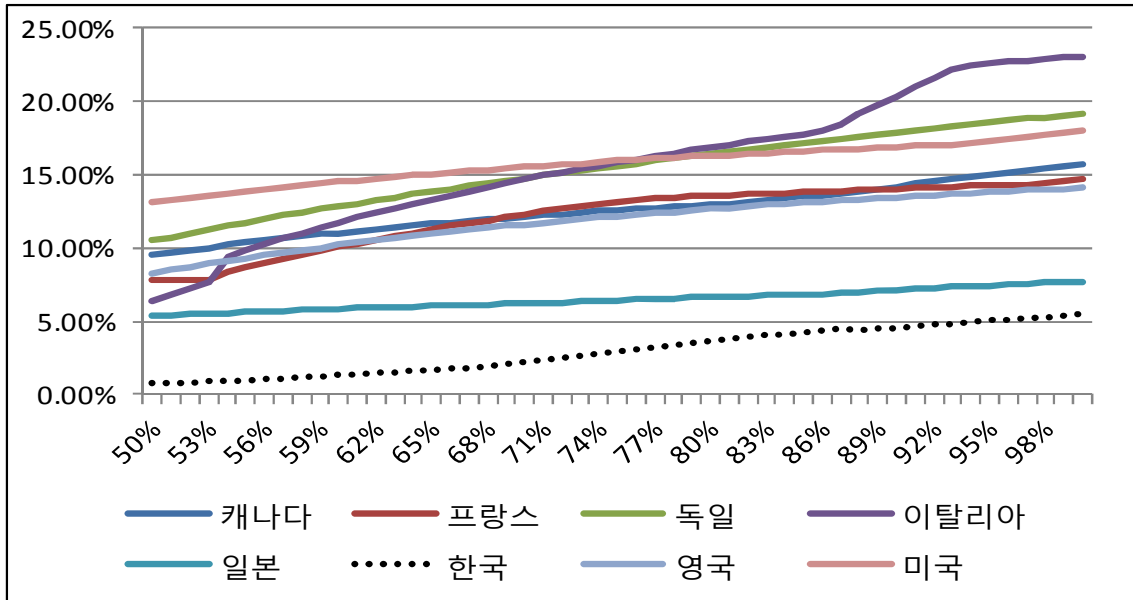
(단위: %)

	총조세			
		소득세	근로자 사회보장	고용주 사회보장
한국	21.5	4.6	7.6	9.3
캐나다	31.5	13.9	6.8	10.8
프랑스	48.4	10.6	10.2	27.7
독일	49.3	16.0	17.1	16.2
이탈리아	48.2	16.7	7.2	24.3
일본	31.9	6.6	12.3	12.9
영국	31.1	13.0	8.4	9.7
미국	31.5	15.7	7.0	8.9

주: 평균임금 100% 수준에서 개인기준  
 자료: OECD, *Taxing Wages*, 2013~2014, 2015

-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상황
  - 이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면세점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
    - 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수준에서 1인 근로자의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2015)은 우리나라 0.76%로 일본 5.33%, 이탈리아 6.43%, 프랑스 7.86%, 영국 8.23%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이는 개인소득자에 허용되는 근로소득공제 등이 매우 높기 때문
  - 그러나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들과의 평균 실효세율 차이는 급속하게 축소
    - 1인 소득자의 경우 가장 낮은 평균 실효세율을 보여주나 부양자 1인(즉 부부 가구)인 경우 실효세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부양자 3인(즉 부부와 2인 아동가구)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낮은 수준이 아님
    -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에 따른 세부담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
  - 이렇게 낮은 평균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면세점과 이에 따라 놓은 면세자 비율을 야기하는 요인

[그림 II -5] 개인소득자의 소득수준별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201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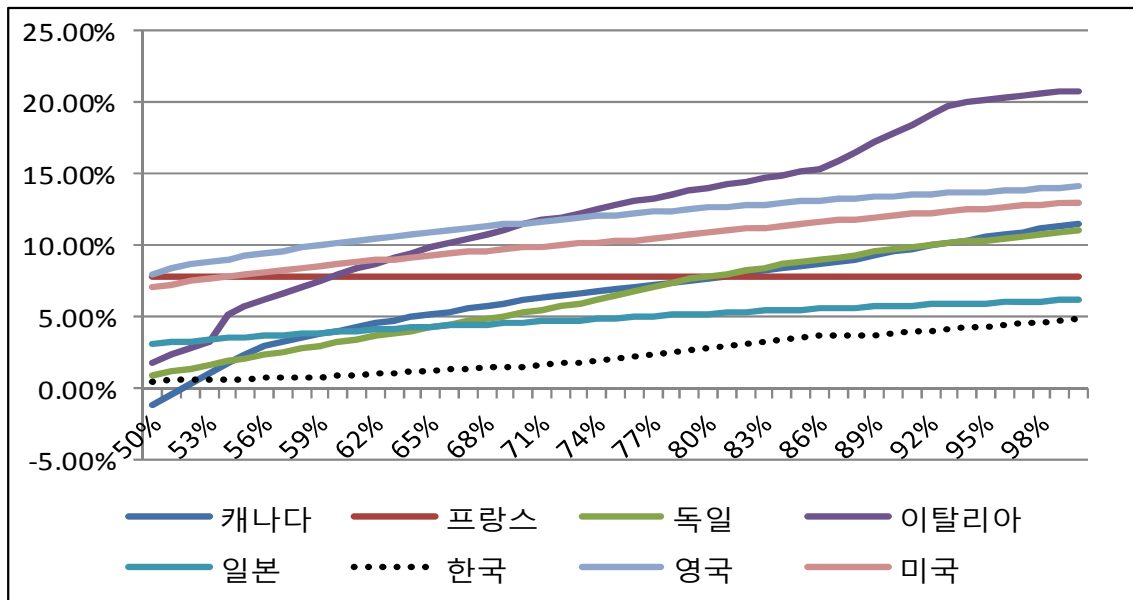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중(%)이며 세로축은 평균실효세율((중앙정부소득세+지방정부소득세)/총소득)임

자료: OECD.stat, 2016년 9월 26일 접속,

(<https://www.oecd.int/olis/portal/site/olisnet/menuitem.46a62b908bd0f54b9b0b0938f78156a0/>).

[그림 II -6] 부부(소득자 1인)의 소득수준별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201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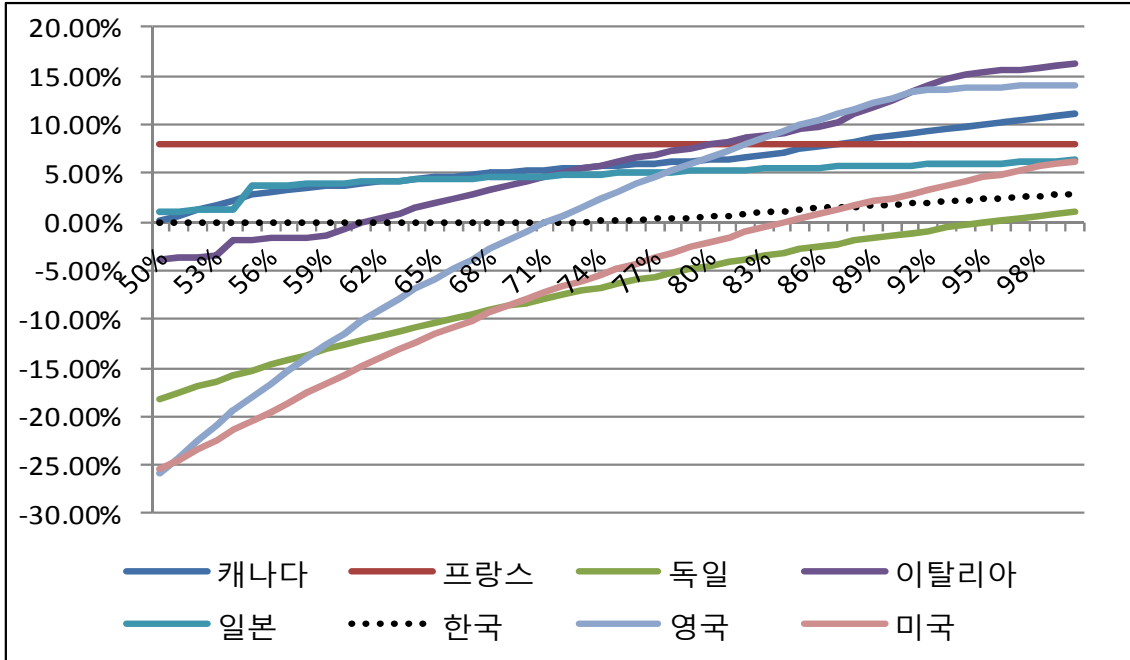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중(%)이며 세로축은 평균 실효세율((중앙정부소득세+지방정부소득세)/총 소득)임

자료: OECD.stat, 2016년 9월 26일 접속,

(<https://www.oecd.int/olis/portal/site/olisnet/menuitem.46a62b908bd0f54b9b0b0938f78156a0/>).

[그림 II -7] 4인가구(소득자 1인)의 소득수준별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2015 기준)



주: 가로축은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중(%)이며 세로축은 평균 실효세율((중앙정부소득세+지방정부 소득세)/총 소득)임. 4인가구는 부부와 2명의 자료로 구성됨  
 자료: OECD.stat, 2016년 9월 26일 접속  
 (<https://www.oecd.int/olis/portal/site/olisnet/menuitem.46a62b908bd0f54b9b0b0938f78156a0/>)

- 근로소득자(2014년 귀속)의 평균적인 인적공제(자신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 규모를 살펴보면 남자 소득자의 경우 2.16명, 여자 소득자의 경우 1.25명 수준
  - 가구주이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은 남자소득자의 인적공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고소득자가 활용할 때 세경감효과가 큼
  - 납세자와 면세자로 구분해 볼 때 납세자의 인적공제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 면세자중 남자의 평균 인적공제 숫자는 1.85명이며 여자 소득자는 1.16명으로 납세자의 2.37명, 1.37명에 비해 낮은 수준
    - 납세자와 면세자 간의 가구구성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납세자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도 작용

<표 II -9>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공제자 규모(2014년 귀속)

(단위: 명)

	납세자		면세자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30세 미만	1.12	1.07	0.89	0.89	0.98	0.96
30~39	2.16	1.44	2.28	1.33	2.20	1.38
40~49	3.36	1.64	2.73	1.49	3.14	1.55
50~59	2.34	1.31	1.78	1.06	2.16	1.16
60세 이상	1.52	1.13	1.19	0.80	1.35	0.87
합계	2.37	1.37	1.85	1.16	2.16	1.25

주: 기본공제자 수를 의미하며 1.0은 소득자 이외 피부양자는 0명을 의미함. 1보다 작은 수치는 면세자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이 공제금액(1.5백만원/인)에 미달할 때 나타남  
 자료: 국세청, 『2015 국세통계연보』, 2015. “근로소득 신고현황 III(성, 연령)”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 개인소득세제에서 과세기반의 충실성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전체 과세대상 소득 중 과세표준의 비율, 산출세액 대비 결정세액의 비중, 면세자 비중 등을 많이 활용

○ 과세대상 소득 중 과세표준의 비율은 비과세소득, 각종 소득공제 등으로 인한 세원누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개인소득세 부과대상 소득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 이 지표에는 세액산출 이후 부담을 경감하는 세액공제는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

○ 산출세액 대비 결정세액의 비중은 과세표준 결정 이후 세부담 결정과정에서 경감되는 세액, 즉 세액공제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

- 역시 세액경감 제도의 크기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지표

○ 면세자 비중은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보여주는 직관적인 지표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소득자 중에서 소득세부담이 없는 자의 비중으로 측정

- 면세자 비중은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의 소득분포 변화 등에도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음

□ 먼저 과세대상 소득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은 2005년 37.6%에서 2013년까지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전년 대비 11.6%p 증가한 58.5%로 나타남

○ 종합소득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75~8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82.4%로 크게 증가

-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된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비율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평가
-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비율은 2005년 29.9%에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다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12.8%p 증가한 52.0% 수준으로 상승
- 특별소득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 등을 세액공제 형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소득공제 규모는 축소되어 과세표준 비율이 상승
-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을 위한 물리적 장소, 원료 등이 필요한 종합소득의 경우 경비율(필요경비/총수입금액)은 2014년 84.2% 수준(소득률은 15.8%)
- 총수입금액 899.3조원 중 필요경비로 757.5조원을 신고하여 경비 비중은 84.2%

<표 II - 10>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비율 추이

(단위: 십억원,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중소+근소) 과표비율
	과세소득	과세표준	과표비율	급여 총계	과세표준	과표비율	
2005	54,103	41,739	77.1	279,372	83,520	29.9	37.6
2006	65,001	50,179	77.2	317,872	95,466	30.0	38.0
2007	77,124	59,938	77.7	336,480	112,032	33.3	41.6
2008	85,083	64,665	76.0	361,879	118,048	32.6	40.9
2009	90,226	66,667	73.9	369,571	121,318	32.8	40.9
2010	100,267	75,259	75.1	401,086	144,657	36.1	43.9
2011	111,446	84,109	75.5	437,838	161,840	37.0	44.8
2012	126,023	93,668	74.3	470,772	179,225	38.1	45.7
2013	134,370	101,448	75.5	502,944	197,276	39.2	46.9
2014	144,783	119,311	82.4	533,727	277,643	52.0	58.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급여 총계 또는 과세소득에서 과세표준으로 전환될 때 제외되는 소득공제의 구성을 보면 종합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주된 역할
  - 종합소득자의 총소득공제액 25.5조원 중 인적공제는 16.5조원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연금보험료공제로 4.6조원, 18.0% 점유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공제액 256.1조원 중에서 55.7%인 142.5조원이 근로소득공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인적공제는 19.8%, 50.6조원 수준

- 조특법상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19.2조원으로 전체 공제액의 7.5%를 차지하는 항목
- 반면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제한되는 공제액 규모는 38억원 규모로 제한적인 수준

- 과거 주요 공제항목이었으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대부분이 전환된 특별공제의 경우,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공제액의 8.2%, 7.6% 수준에 불과
  -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근로자 부담 보험료에 대한 공제인 보험료 공제가 특별공제의 대부분을 차지
- 향후 근로소득세의 과세기반 확장을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적절한 역할 설정이 중요

<표 II -11> 신고자 유형별 소득공제 내역(2014년 귀속)

(단위: 천명, 십억원)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자		
	인원	금액	구성비	인원	금액	구성비
과세소득	4,859	144,783	n.a	16,687	533,727	n.a
총공제액	5,056	25,477	100.0	n.a	256,089	100.0
비과세 급여	0	0	0.0	2,120	5,068	2.0
근로소득공제	0	0	0.0	16,621	142,521	55.7
소득공제액	5,056	25,477	100.0	16,622	108,500	42.4
인적공제	5,056	16,516	64.8	16,622	50,591	19.8
기본공제	5,056	14,611	57.3	16,622	44,730	17.5
추가공제	1,456	1,904	7.5	4,153	5,862	2.3
연금보험료	n.a	4,575	18.0	n.a	18,284	7.1
특별공제	737	2,081	8.2	9,474	19,500	7.6
보험료공제	692	1,464	5.7	9,470	15,909	6.2
의료비	0	0	0.0	0	0	0.0
교육비	0	0	0.0	0	0	0.0
주택자금	68	180	0.7	n.a	2,817	1.1
기부금	58	437	1.7	335	775	0.3
표준공제	0	0	0.0	0	0	0.0
조특법공제	977	2,306	9.1	8,430	20,125	7.9
신용카드	581	1,407	5.5	8,253	19,194	7.5
연금저축	86	50	0.2	328	173	0.1
기타	406	849	3.3	n.a	757	0.3
실소득공제액	5,056	25,472	100.0	-	108,496	42.4

주: 실제 공제액은 각종 소득공제에도 불구하고 소득 부족으로 적용치 못한 공제를 제외한 공제  
 자료: 국세청, 『2015국세통계연보』, 2015.

- 현행 근로소득공제가 기능하고 있는 포괄적 비용공제적 성격과 사업소득자와의 소득 투명성 차이 조정 성격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산출세액 중 공제되는 세액공제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세액공제율((산출세액 - 결정세액)/산출세액)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2005년 16.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13.7%까지 낮아졌다가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기타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2014년 귀속소득의 경우 31.2%까지 상승
  -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유사한 추세를 보임
    - 2005년 13.0%에서 2013년 9.6%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에는 15.2%로 크게 반등
  - 제도 변화가 없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액공제율의 하락은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별도의 관리 대책이 세원확보를 위해 중요
    - 산출세액 자체는 누진세율체계하에서 소득증가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비율보다 일정금액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

〈표 II -12〉 소득유형별 세액공제율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

연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결정세액	세액공제율	산출세액	결정세액	세액공제율
2005	8,635	7,510	13.0	11,757	9,778	16.8
2006	10,463	9,320	10.9	13,747	11,566	15.9
2007	12,685	11,389	10.2	16,586	14,114	14.9
2008	13,258	11,839	10.7	16,715	14,182	15.2
2009	13,090	11,804	9.8	15,263	12,852	15.8
2010	14,844	13,292	10.5	18,294	15,586	14.8
2011	17,037	15,310	10.1	20,757	17,802	14.2
2012	18,900	17,038	9.9	23,203	19,971	13.9
2013	20,686	18,693	9.6	25,825	22,287	13.7
2014	24,768	20,994	15.2	36,919	25,398	31.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한편 세원 충실성의 또 다른 지표인 과세자 비중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4년 큰 폭으로 증가
  - 특별공제제도를 과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높아진 저소득층에서 면세자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
    -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2014년 귀속 소득의 경우 47.9%로 증가<sup>3)</sup>
  -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55.5%로 근로소득자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다가 2014년 귀속소득의 경우 29.3%까지 하락해 근로소득자보다 낮은 수준
    -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중에 영향을 미친 특별공제가 비근로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

〈표 II -13〉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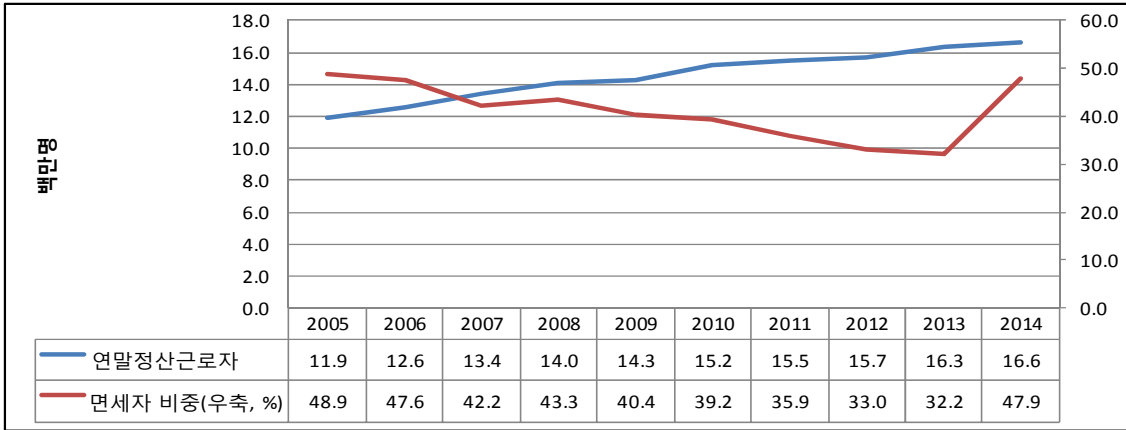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확정신고자 비율	면세자 비율	면세자 비율
2005	52.2	55.5	48.9
2006	59.7	49.3	47.6
2007	62.6	47.0	42.2
2008	68.6	44.1	43.3
2009	71.8	43.8	40.4
2010	72.4	43.8	39.2
2011	73.0	43.2	35.9
2012	77.9	38.7	33.0
2013	80.5	36.3	32.2
2014	86.4	29.3	47.9

주: 확정신고자 비율은(확정신고자/납세인원 합계)×100이며 면세자 비율은(1-결정세액 있는 신고자/납세인원 합계)×100,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1-결정세액 있는 근로자/연말정산신고 인원)×1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3) 각주 1)과 동일

[그림 II -8] 근로소득자 규모와 면세자 비중 변화 추이

(단위: 백만명,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근로소득세의 세원 충실성에 대한 지표들에 큰 영향을 미친 2013년 세법개정 (2014년 적용, 보완대책 포함)의 내용은 크게 기존 소득공제인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자녀관련 세액공제의 강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저소득층 우대 등으로 구성

- 세액공제 전환에 있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세액공제율 15%(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과 동일)를 적용하였으며
- 보장성보험료, 퇴직연금, 표준공제 등은 이보다 낮은 12% 또는 13%가 적용

<표 II -14>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 내역

공제항목	소득공제 내용	세액공제 내용(2014~)
의료비 공제	총급여 3%초과분(700만원 한도) 본인, 장애인, 경로자 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율 15%로 전환</li> <li>-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현행유지</li> <li>-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25% 적용<sup>2)</sup></li> </ul>
교육비 공제	본인 전액공제,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학생 300만원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율 12%로 전환</li> <li>-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현행유지</li> </ul>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sup>1)</sup> ·퇴직연금	보험료 전액(100만원 한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액 전액 (4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표준공제 <sup>1)</sup>	공제불입액 전액(300만원 한도)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li> </ul>

주: 1) 연금저축 세액공제율과 표준공제액은 2015년 보완대책으로 각각 공제율 15%(급여 5,500만원 이하자), 공제액 13만원으로 조정됨

2) 이후 개정을 통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30% 적용

자료: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13. 9. 16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연말정산 보완대책」, 2015. 4. 7.

-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통해 3자녀 이상에 대해 다자녀 추가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6세 이하 2명 이상 시에도 추가공제를 허용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기존 한도액 50만원을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에게는 단계적으로 74만원까지 확대

〈표 II -15〉 연말정산 보완대책 1

구 분	종 전(소득공제)	현 행(세액공제)	보완대책(세액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 1명: 없음 - 자녀 2명: 100만원 - 3명 이상: 1명당 20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15×2) - (3명 이상)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1명) 현행 유지 - (2명) 현행 유지 - (3명 이상)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10만원 추가)
6세이하 자녀공제	-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출산·입양	- 출산·입양 자녀당 200만원		- 출산·입양 자녀당 30만원 신설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연말정산 보완대책」, 2015. 4. 7.

〈표 II -16〉 연말정산 보완대책 2(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구 분	종 전	현 행	보완대책
공제율	- 세액 50만원 이하: 55% - 세액 50만원 초과: 30%	- (좌 동)	- 세액 130만원 이하: 55% - 세액 130만원 초과: 30%
한도	- 모든 급여구간: 50만원	- 급여구간별: 50~66만원 · 5,500만원 이하: 66만원 · 7,000만원 이하: 63만원 · 7,000만원 초과: 50만원	- 급여구간별: 50~74만원 · 3,300만원 이하: 74만원 · 4,300만원 이하: 74~66 · (좌 동) · (좌 동) · (좌 동)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연말정산 보완대책」, 2015. 4. 7.

### 3. 주요국의 면세자 비중

- 주요국에서도 각 국가의 개인소득세 포괄범위 및 과세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면세자 규모를 유지
  - 우리나라의 경우 총면세자 비중은 2014년 기준 43.1%로 전년(33.2%)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
    -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05년 50.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40.4%, 2013년 33.2%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43.1%로 크게 증가
  - 주요 선진국들의 개인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대체적으로 20~3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 영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면세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3~2014 과세연도 기준 비중은 5.9% 수준에 불과

<표 II -17> 주요국의 면세자 비율

(단위: 천명, %)

국가		총납세자 수	면세자 수	면세자 비율
한국(2014)	전체	22,476	9,682	43.1
	근로자	16,630	7,967	47.9
미국(2013)		147,351	52,819	35.8
캐나다(2013)		27,131	9,102	33.5
호주(2013~2014)		12,964	3,252	25.1
영국(2013~2014)		29,700	1,758	5.9

- 주요국들과의 면세자 비중 변화추이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면세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여온 반면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소폭 늘어나는 추세
  -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2014년 면세자 비중이 2005년 수준으로 증가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임
  - 높은 면세자 비중이 소득세의 정상적 기능, 즉 세입 확보와 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p 이상 감축해 갈 수 있는 정책 노력이 필요
    - 소득세 면세자 비중의 증가는 재분배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비이해당사자의 영향으로 정책결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표 II -18> 주요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 추이

(단위: %)

과세연도	한국(근소)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2005	48.9	32.6	18.3	31.8	14.0
2006	47.6	33.0	21.1	32.2	12.9
2007	42.2	32.7	21.8	32.4	13.9
2008	43.3	36.4	25.2	32.1	-
2009	40.4	41.7	26.4	33.9	2.5
2010	39.2	40.9	25.5	34.0	2.9
2011	35.9	36.9	23.1	33.8	3.0
2012	33.0	35.8	25.8	33.6	2.9
2013	32.2	35.8	25.1	33.5	3.2
2014	47.9	35.0	-	-	2.8

주: 영국의 2008 과세연도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자료: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2.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uac/SOI-Tax-Stats-Individual-Statistical-Tables-by-Size-of-Adjusted-Gross-Income>)의 Table1.1 All Returns: Selected Income and Tax Items, by Size and Accumulated Size of Adjusted Gross Income 각 연도별 자료 사용, 자료 검색일자: 2016.12.02.

3. 호주 국세청(<https://data.gov.au/organization/australian taxation office>)의 각 연도별 Taxation Statistics 의 Table 5: Personal tax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2005-06 income year Part A: Tax Office calculated and miscellaneous items (Tax year 2005-06-2008-09) & Table 3: Individuals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age, gender and taxable status (Tax year 2009-10-2013-14) 자료 사용, 자료 검색일자: 2016.12.02.

4.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gncy/stts/ntrm-eng.html>)의 Canada Revenue Agency Income Statistics and GST/HST Statistics (<http://www.cra-arc.gc.ca/gncy/stts/menu-eng.html>) - T1 Final Statistics - Sample Data의 각 연도별 report의 Basic Table 2 - 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all Canada (Tax year 2005-2008) & Canada Revenue Agency Income Statistics and GST/HST Statistics (<http://www.cra-arc.gc.ca/gncy/stts/menu-eng.html>) - T1 Final Statistics의 각 연도별 report의 Final Table 2 - 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Tax year 2009-2013) 자료 사용, 자료 검색일자: 2016.12.02.

- 주요 선진국들의 면세자 분포를 살펴보면 저소득 구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총면세자 5,280만명 중 42.9%인 2,270만명이 소득 1만달러 이하인 소득자로 구성
  - 캐나다도 총면세자 910만명 중 440만명이 1만(캐나다)달러 이하 소득자로 구성

〈표 II -19〉 미국 소득구간별 tax return 신고자 분포(2013년 기준)

(단위: 명, %)

조정 총소득(달러)	총신고 수	Taxable returns		Non-taxable returns	
		신고 수	구성비	신고 수	구성비
총계	147,351,299	94,532,494	64.15	52,818,805	35.85
0	2,113,013	6,231	0.29	2,106,782	99.71
1 ~ 5,000	10,608,111	259,679	2.45	10,348,432	97.55
5,000 ~ 10,000	12,030,388	1,826,829	15.19	10,203,559	84.81
10,000 ~ 15,000	12,503,345	4,682,558	37.45	7,820,787	62.55
15,000 ~ 20,000	11,621,535	5,296,828	45.58	6,324,707	54.42
20,000 ~ 25,000	10,125,285	5,456,047	53.89	4,669,238	46.11
25,000 ~ 30,000	8,809,515	5,155,731	58.52	3,653,784	41.48
30,000 ~ 40,000	14,473,606	10,249,791	70.82	4,223,815	29.18
40,000 ~ 50,000	11,279,394	9,408,699	83.41	1,870,695	16.59
50,000 ~ 75,000	19,229,309	18,003,354	93.62	1,225,955	6.38
75,000 ~ 100,000	12,574,107	12,322,770	98.00	251,337	2.00
100,000 ~ 200,000	16,425,446	16,318,248	99.35	107,198	0.65
200,000 ~ 500,000	4,488,110	4,477,599	99.77	10,511	0.23
500,000 ~ 1,000,000	724,251	722,903	99.81	1,348	0.19
1,000,000 ~ 1,500,000	156,269	155,955	99.80	314	0.20
1,500,000 ~ 2,000,000	64,236	64,103	99.79	133	0.21
2,000,000 ~ 5,000,000	91,128	90,961	99.82	167	0.18
5,000,000 ~ 10,000,000	21,412	21,378	99.84	34	0.16
10,000,000 이상	12,839	12,828	99.91	11	0.09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uac/SOI-Tax-Stats-Individual-Statistical-Tables-by-Size-of-Adjusted-Gross-Income>)의 Table I.1 All Returns: Selected Income and Tax Items, by Size and Accumulated Size of Adjusted Gross Income, Tax Year 2013 자료 사용, 자료 검색일자 : 2016.05.17

〈표 II -20〉 호주 소득구간별 tax return 신고자 분포(2013~14 기준)

소득(호주달러)	총신고수	Taxable returns		Non-taxable returns		(단위: 명, %)
		인원 수	구성비	인원 수	구성비	
총계	12,964,285	9,712,293	74.92	3,251,992	25.08	
6,000 이하	939,792	23,016	2.45	916,776	97.55	
6,001 ~ 10,000	403,763	8,549	2.12	395,214	97.88	
10,001 ~ 18,200	1,140,540	11,450	1.00	1,129,090	99.00	
18,201 ~ 25,000	1,214,648	600,407	49.43	614,241	50.57	
25,001 ~ 30,000	775,819	651,711	84.00	124,108	16.00	
30,001 ~ 37,000	1,115,884	1,059,760	94.97	56,124	5.03	
37,001 ~ 40,000	491,574	487,183	99.11	4,391	0.89	
40,001 ~ 45,000	767,179	764,012	99.59	3,167	0.41	
45,001 ~ 50,000	699,775	698,553	99.83	1,222	0.17	
50,001 ~ 55,000	626,799	625,998	99.87	801	0.13	
55,001 ~ 60,000	548,298	547,654	99.88	644	0.12	
60,001 ~ 70,000	932,621	931,609	99.89	1,012	0.11	
70,001 ~ 80,000	773,810	773,068	99.90	742	0.10	
80,001 ~ 90,000	586,328	585,753	99.90	575	0.10	
90,001 ~ 100,000	406,992	406,499	99.88	493	0.12	
100,001 ~ 150,000	933,348	931,863	99.84	1,485	0.16	
150,001 ~ 180,000	230,848	230,244	99.74	604	0.26	
180,001 ~ 250,000	205,725	204,967	99.63	758	0.37	
250,001 ~ 500,000	129,566	129,060	99.61	506	0.39	
500,001 ~ 1,000,000	29,896	29,864	99.89	32	0.11	
1,000,001 이상	11,080	11,073	99.94	7	0.06	

자료: 호주 국세청([https://data.gov.au/dataset/taxation-statistics-2013-14/resource/9e66c4d2-16cf-48b1-b07c-3da92b1ad84e?inner\\_span=True](https://data.gov.au/dataset/taxation-statistics-2013-14/resource/9e66c4d2-16cf-48b1-b07c-3da92b1ad84e?inner_span=True))의 Table 3: Individuals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age, gender and taxable status, 2013-14 income year 자료 사용, 자료검색일자 : 2016.05.17

〈표 II -21〉 캐나다 소득구간별 tax return 신고자 분포(2013년 기준)

소득(캐나다달러)	총신고 수	Taxable returns		Non-taxable returns		구성비
		인원 수	구성비	인원 수	구성비	
총계	27,131,010	18,029,170	66.45	9,101,840	33.55	
4,999 이하	2,760,340	39,640	1.44	2,720,700	98.56	
5,000 ~ 9,999	1,873,380	174,360	9.31	1,699,020	90.69	
10,000 ~ 14,999	2,350,490	465,580	19.81	1,884,910	80.19	
15,000 ~ 19,999	2,545,950	865,660	34.00	1,680,290	66.00	
20,000 ~ 24,999	1,999,230	1,362,970	68.17	636,260	31.83	
25,000 ~ 29,999	1,625,800	1,404,370	86.38	221,420	13.62	
30,000 ~ 34,999	1,559,160	1,455,040	93.32	104,130	6.68	
35,000 ~ 39,999	1,497,310	1,441,580	96.28	55,740	3.72	
40,000 ~ 44,999	1,429,650	1,396,910	97.71	32,750	2.29	
45,000 ~ 49,999	1,210,520	1,190,690	98.36	19,830	1.64	
50,000 ~ 54,999	1,047,440	1,033,640	98.68	13,800	1.32	
55,000 ~ 59,999	906,560	898,260	99.08	8,310	0.92	
60,000 ~ 69,999	1,485,490	1,475,510	99.33	9980	0.67	
70,000 ~ 79,999	1,167,280	1,162,490	99.59	4,790	0.41	
80,000 ~ 89,999	871,040	868,690	99.73	2,360	0.27	
90,000 ~ 99,999	669,520	668,020	99.78	1,500	0.22	
100,000 ~ 149,999	1,356,220	1,352,840	99.75	3,390	0.25	
150,000 ~ 249,999	525,180	523,360	99.65	1,820	0.35	
250,000 이상	250,450	249,580	99.65	870	0.35	

(단위: 명, %)

자료: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gncy/stts/ntrm-eng.html>)의 Preliminary Table 2 - All returns by -tal income class, each year 자료 사용, 자료검색일자 : 2016.05.17

〈표 II -22〉 영국 소득구간별 납세자 분포(2013~14 기준)

(단위: 천명, %)

소득(파운드)	총납세자 수	Starting rate 적용 납세자(A)		“Savers” rate 적용 납세자(B)		Non-taxable returns(A+B)	
		인원 수	구성비	인원 수	구성비	인원 수	구성비
- 9,440	526	47	8.94	29	5.51	76	14.45
- 10,000	6,670	183	2.74	161	2.41	344	5.16
- 15,000	5,750	8	0.14	123	2.14	131	2.28
- 20,000	7,350	6	0.08	159	2.16	165	2.24
- 30,000	6,260	5	0.08	156	2.49	161	2.57
- 50,000	2,370			2	0.08	2	0.08
- 100,000	413						
- 150,000	121						
- 200,000	151						
- 500,000	27						
- 1,000,000	10						
2,000,000+	5						
총계	29,700	249	0.84	630	2.12	879	2.96

주: 과세대상소득(taxable income)이 없는 starting rate 납세자와 “Savers” rate 납세자는 과세미달 신고자로 간주할 수 있음. Starting rate taxpayers는 과세대상소득 (taxable earnings)이 없고,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도 starting rate limit 이하인 소득자. “Savers” rate taxpayers는 과세대상소득(taxable earnings)이 없고, starting rate limit(과 basic rate limit 사이의 저축(savings)에서 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2015-16부터 저축소득에 대한 과세 starting rate은 기존의 10%에서 0%로 인하되고, starting rate limit은 £5,000로 인상되었음

자료: 영국 국세청(<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income-tax-statistics-and-distributions>)의 Table 2.5 Income tax liabilities, by Income Range, 2012~13 to 2015~16 자료 사용, 검색일자: 2016.05.17

### Ⅲ.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대안 분석





### Ⅲ.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대안 분석

#### 1. 현황 및 배경

- 정부는 2013년 말 세법개정과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다양한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다양한 특별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전과 같이 소득공제제도를 유지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
  - <표 III-1>은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주요 특별공제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바, 세액공제 전환 후 대부분의 특별공제항목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대상금액의 일정 부분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확인 가능
  -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에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각의 공제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연동되는 상이한 소득세율이 적용
    -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에 공제금액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반면,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에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에서 차감
- 반면,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과세표준×소득세율)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금액의 일정률이 일괄적으로 차감되어 결정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유리할 것으로 기대
  - 예컨대, 교육비 공제(본인 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
    - 이때, 소득공제에서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자는 100만원에 6% 세율이 적용되어 6만원의 혜택(산출세액의 감소)이 주어지지만,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는 100만원에 38% 세율이 적용되어 38만원의 혜택(산출세

액의 감소)이 주어짐

- 반면,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소득(혹은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100만원에 15% 공제율이 적용되어 15만원의 혜택(결정세액의 감소)을 누림
- 따라서 세액공제 전환 후에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자의 결정세액은 9만원이 감소하지만,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의 결정세액은 23만원이 증가

□ 이처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는 공제혜택이 적게 주어지고,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공제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 가능(성명재·우석진, 2013)

- 한편,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중·저소득층의 세액 감소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여기서 면세자는 결정세액이 없는 자, 즉 결정세액이 0인 자로 정의
  - 면세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던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구간은 대체로 중·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면세자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기대 가능

<표 III-1>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 내역

공제항목	소득공제 내용(2013년)	세액공제 내용(2014년)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초과분(700만원 한도) 본인, 장애인, 경로자 무제한	세액공제율 15%로 전환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현행 유지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25% 적용
교육비 공제	본인 전액공제,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학생 300만원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30%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전액(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로 전환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현행 유지
연금저축 <sup>1)</sup> ·퇴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액 전액 (4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불입액 전액(200만원 한도)	
표준공제 <sup>1)</sup>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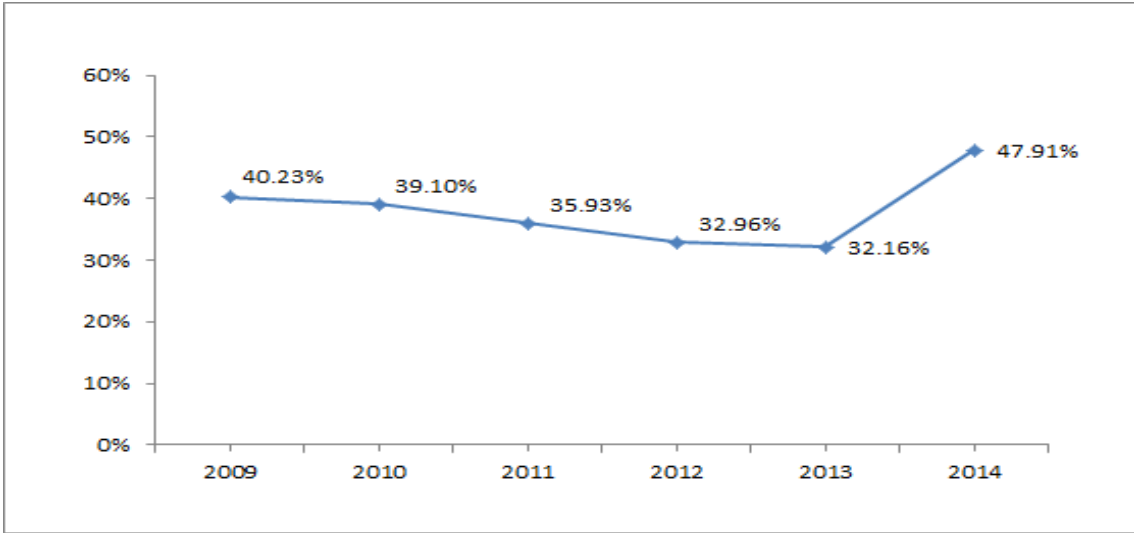
주: 1) 2015년 보완대책으로 인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로, 표준 공제액은 13만원으로 조정됨

자료: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13. 9. 16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연말정산 보완대책」, 2015. 4. 7

[그림 III-1] 연도별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통해 계산한 연도별 면세자 비중 변화를 나타낸 [그림 III-1]을 보면,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 이후 면세자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면세자 비중은 2009년 42.23%에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3년 32.16%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47.91%로 급격히 상승<sup>4)</sup>
  - 이는 기존에 면세자 비중을 줄이고자 한 꾸준한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면세자 축소라는 정책 목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중
  
- 급여구간별로 어떤 소득 그룹에서 면세자가 증가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표 III-2>는(총급여 기준)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을 연도별로 제시하였으며, [그림 III-2]는 면세자 비중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2013년과 2014년에 초점을 맞추어 면세자 비중을 급여구간별로 비교
  
- 급여구간별로 면세자의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액공제 전환 이후 전반적으로 6천만원 이하인 소득 그룹 전 구간에서 면세자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천만원~4천만원 사이의 소득 구간에서 면세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각주 1)과 동일

-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1천만원 이상 6천만원 이하의 소득 구간에서 눈에 띄게 면세자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소득그룹에서 면세자 비중은 약 32.1% 증가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소득그룹에서는 약 21.98% 증가
  -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소득그룹에서는 약 24.67% 증가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소득그룹에서는 약 11.57% 증가
- 반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득 구간에서 면세자 비중은 뚜렷한 변화가 없음

<표 III-2>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2009~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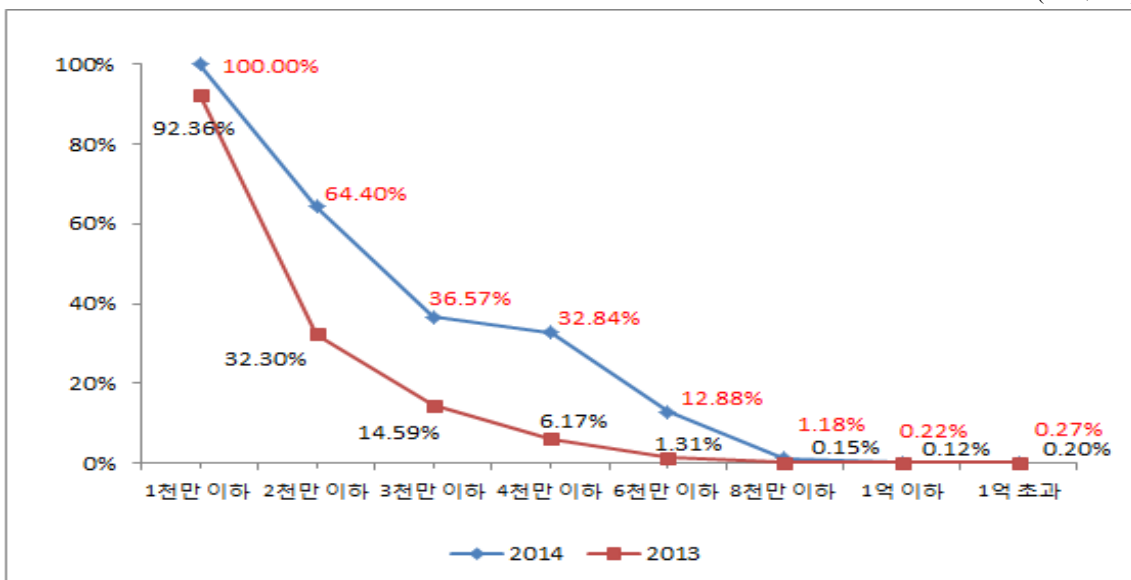
(단위: %)

총급여 구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천만 이하	93.37	93.75	93.01	92.09	92.23	100.00
2천만 이하	31.89	30.29	29.64	32.92	32.30	64.40
3천만 이하	16.72	13.83	13.18	13.45	14.59	36.57
4천만 이하	8.23	6.36	6.03	5.60	6.17	32.84
6천만 이하	2.14	1.56	1.61	1.38	1.31	12.88
8천만 이하	0.21	0.17	0.18	0.18	0.15	1.18
1억 이하	0.16	0.12	0.13	0.12	0.12	0.22
1억 초과	0.52	0.45	0.28	0.20	0.20	0.2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I-2]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연금 등으로 대체로 가구의 인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가구 형태별로 면세자 비중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
  
- 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III-3>은 부양가족 수별 면세자 비중을 연도별로 제시하였으며, [그림 III-3]은 세액공제로 전환된 시기인 2013년과 2014년의 부양가족 수별 면세자 비중 변화를 비교
  - 여기서 부양가족 수는 부양가족공제인원 대상의 수를 의미하며,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부양가족 수가 가구의 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부양가족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공제 항목에 지출하는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구의 수가 면세자 비중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
  - 기존 국세통계연보는 2014년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 기준으로 결과를 발표한 반면, 2013년 귀속소득까지는 과세표준 없는 과세미달자를 기준으로 결과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별 면세자 비중을 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름
    - 따라서 <표 III-3>과 [그림 III-3]에는 2013년까지는 부양가족 수별 과세미달자의 비중을 2014년에는 면세자의 비중을 제시
  
- 부양가족 수별 면세자 비중은 세액공제 전환 이후에 모든 가구형태에 걸쳐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양가족 수가 2~3인인 경우에 그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면세자 비중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2013년과 2014년의 결과를 비교하면, 세액공제 전환 이후에 면세자 비중이 전반적으로 약 16.79~20.40%p 상승
    - 부양가족 수 2인의 경우 20.40%, 부양가족 수 3인의 경우 19.51%, 부양가족 수 4인의 경우 18.45% 증가
    - 부양가족 수 1인과 5인 이상의 경우 각각 17.53%, 16.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상당히 큰 증가 폭을 보임
  - 부양가족 수 2~3인인 경우에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가구원 수가 3~5명인 가구의 근로자들이 주로 면세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

〈표 III-3〉 부양가족 인원별 면세자 비중(2009~201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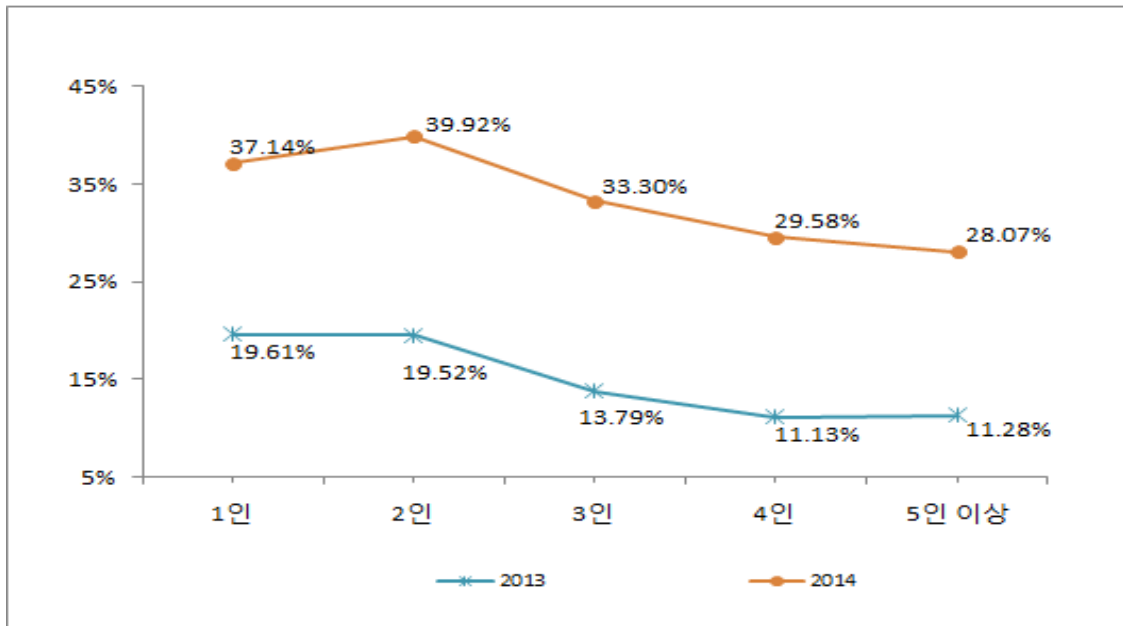
부양가족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인	27.04	24.98	23.54	21.34	19.61	37.14
2인	25.41	22.86	22.4	20.72	19.52	39.92
3인	18.85	16.14	15.97	14.73	13.79	33.3
4인	17.13	13.78	13.15	11.96	11.13	29.58
5인 이상	17.82	13.83	13.31	12.14	11.28	28.07

주: 부양가족 수는 부양가족공제 적용 인원수를 의미

2013년까지는 과세미달자(과세표준이 없는 자)의 비중을, 2014년은 면세자(결정세액이 없는 자)의 비중을 계산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I-3] 부양가족 수별 면세자 비중 변화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요컨대,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 이후 면세자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소득 그룹의 면세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부양가족 수별로는 대체로 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면세자 비중의 과도한 증가는 소득세제의 역할을 매우 제한적으로 만들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존재

- 먼저 과도한 면세자 비중은 소득세제를 통한 세입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소득세제를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
    -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의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세율 소득구간의 세액이 증가하지 않고서는 고세율 구간에서 세액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절반가량의 근로자가 이미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구간별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둘째, 소득세제가 세입의 측면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다른 세제의 세입기능을 강화하도록 전가할 가능성 존재
    -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다른 세제에 세입기능을 전가할 경우, 소득구간별 타깃팅을 통한 조세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더욱 미미해짐
    - 예컨대, 소득세제를 변화하지 않은 채로 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제를 통해 증세를 한다면, 개별적인 소비가 많은 다인가구에 세부담을 지우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존재
  - 마지막으로, 소득세제가 고소득층에만 너무 편중되어 과세할 경우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우려 또한 존재
- 따라서 과도한 면세자 비중의 증가는 소득세제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면세자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존재
- 현재까지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불거진 면세자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김상조, 2016; 김재진, 2016; 국회예산정책처, 2016)는 대부분 세액공제 전후의 면세자 변화의 현황과 유효세율 비교를 토대로 면세자 축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침
- 예외적으로 김재진(2016)의 경우 개별 특별공제항목의 면세자 증가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 제안된 각 정책 대안이 실제로 면세자 비중의 감소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한 추정은 부재

- 하지만 면세자 축소 대안의 특성상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특성에 따라서 각 대안들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
  - 면세자 축소 대안은 각 대안별로 근로소득자에게 미치는 세부담의 정도와 면세자 축소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상이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근로소득자의 급여구간이나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각 대안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 또한 면세자 축소에 미치는 효과성 또한 각 대안별로 그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면세자 축소 대안의 장·단점을 근로자 특성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소득자들의 마이크로 자료를 활용한 미시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 존재
    - 현재까지의 면세자 축소에 대한 정책 제언은 각 대안의 효과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
    - 하지만 면세자 축소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각 대안의 실행으로 인해 개별 근로자가 받을 세부담과 면세자 축소 효과를 미시적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히 검토해야 할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제안된 면세자 축소 대안을 검토하고, 주요 면세자 축소 대안이 면세자 비중 감소와 근로소득자의 추가적인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히 검토하려는 목적
  
- 기존의 면세자 관련 정책 논의와 연구들(김재진, 2016; 김상조, 2016; 예산정책처, 2016)에 근거하여 주요한 면세자 축소 대안을 간추려 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 가능
  - 첫째는, 표준세액공제 축소 대안으로 현행 13만원의 세액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1만원씩 축소하여 면세자 감소의 효과를 검토
  - 둘째,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으로 저소득구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축소하여 면세자의 비중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
    -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의 성격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괄공제하는 제도인데, 저소득구간의 공제율을 축소하여 면세자 감소의 효과를 검토

- 셋째,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대안으로 일정 총급여 이상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액의 합에 대해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면세자 감소에 기여하는 대안
  -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최저한세의 도입인데, 일정 총급여 이상의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산출세액 혹은 총급여의 일정액을 최소한의 세액으로 부과하는 방안
    - 일정 총급여 이상의 모든 근로소득자가 과세자로 전환
-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저한세를 제외하고 상기한 세 가지 면세자 축소 대안이 면세자 비중과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고려해 보고자 함

## 2. 분석자료

-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전체 근로소득자 중 약 5.62%에 해당하는 935,898명의 근로소득자를 임의로 추출하고 2015년 국세청에 신고된 이들의 연말정산의 원자료(raw data)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
- 2015년에 신고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의 귀속 년도는 2014년, 즉 2014년 근로소득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음
  - 분석자료는 개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상에 기재된 모든 공제 사항에 대한 변수를 포함
- 먼저 수집된 분석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의 흐름에 따라서 총급여 기준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의 비중을 계산해 본 결과 2014년 근로소득자의 약 48.18%가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세통계연보에서 제시된 47.91%와 상당히 유사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sup>5)</sup>
-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단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석자료의 기초통계치를 비교

5) 각주 1)과 동일

□ <표 III-4>는 국세통계연보와 분석자료를 통해 계산된 급여구간별 근로소득자의 인원 비중 및 면세자 비중을 보여주며, <표 III-5>는 동일한 분석을 부양가족 수별로 시행

○ <표 III-4>를 보면, 개별 급여구간별로 근로소득자 인원 비중과 면세자 비중이 대체로 유사

- 단, 인원 비중을 보면 1천만원 이하 급여구간의 근로소득자가 약 3% 정도 과대 추출되었으며,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급여구간의 근로소득자가 약 3% 정도 과소 추출되었다는 것이 확인 가능

<표 III-4> 급여구간별 표본 비교

(단위: %)

급여구간	인원		면세자 비중	
	국세 통계연보	분석자료	국세 통계연보	분석자료
총계	100	100	47.91	48.18
1천만원 이하	20.65	23.92	100.00	98.98
2천만원 이하	24.11	20.03	64.40	64.55
3천만원 이하	16.83	16.12	36.57	36.86
4천만원 이하	11.27	11.44	32.84	32.44
5천만원 이하	7.92	8.20	17.84	17.84
6천만원 이하	5.84	6.13	6.14	5.64
8천만원 이하	7.20	7.62	1.18	1.22
1억원 이하	3.01	3.20	0.22	0.15
1억원 초과	3.17	3.33	0.27	0.15

자료: 2015년 국세통계연보(2014년 귀속소득)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저자계산

<표 III-5> 부양가족 수별 표본 비교

(단위: %)

부양가족수	인원		면세자 비중	
	국세 통계연보	분석자료	국세 통계연보	분석자료
총계	100	100	36.54	36.65
1인	37.15	36.55	37.14	36.81
2인	34.71	34.97	39.92	40.33
3인	16.41	16.64	33.30	33.94
4인	8.76	8.91	29.58	29.31
5인 이상	2.97	2.94	28.07	28.36

자료: 2015년 국세통계연보(2014년 귀속 소득)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

- 저소득층 구간에서 약간의 과대·과소 추출은 관찰되나, 면세자 비중은 전 급  
여구간에서 상당히 유사한 수치를 보임
- <표 III-5>는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비중을 산출하였는  
데, 두 자료의 수치가 1% 이하의 오차범위 내에서 매우 흡사한 것이 관찰 가능
-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자료가 모집단에 제시한 기초통  
계치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어 자료의 대표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  
으며, 이와 동시에 국세청의 행정자료를 대량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  
또한 확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

### 3. 시나리오 분석

- 본 절에서는 근로소득 면세자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각  
각의 대안별 면세자 비율 축소 효과와 세부담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
- 먼저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명목임금상승률을 가정하였을 때, 면세자 비  
중의 자연감소율을 추정 및 예측하여, 면세자 축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을 검토
  - 근로공제제도는 대부분 명목급여액, 명목지출액 등 명목적 수치에 기반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명목임금이 상승할 때 자연적  
으로 면세자 비중이 감소할 것이 예측 가능
  - 따라서 정책적 시나리오 분석 이전에 면세자 비중의 자연감소율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개입을 통해 면세자 비중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  
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면세자 비중에 대한 기준 또는 국제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 절반에 가까운 면세자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분명  
과도한 수준이며 조세정책을 통한 세입확보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
  - <표 II-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2013)의 면세자 비중은 35.8%, 캐나다(2013)  
는 33.5%, 호주(2013~2014)는 25.1%이며, 영국은 5.9%로 매우 낮았음

- 이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면세자 비중은 49.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최소한 세액공제 이전 수준인 면세자 비중 30%대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을 장기적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면세자 비중 축소 대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1) 면세자 비중의 변화 2) 추가 세부담 변화에 대해 다각도로 정태적 분석을 시도
  - 표준세액공제 축소 대안
  -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
  -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태적 분석의 방법론은 원자료에서 주어진 대부분의 공제액 등을 주어진 것(고정데이터 처리)으로 간주하고, 원자료를 근거로 재계산이 가능하거나 총급여의 변화에 연동되는 항목을 재계산하여 면세자 및 추가 세부담 산정
  - 구체적으로 다음 표는 연말정산 공제항목별로 정태분석에 반영한 방법을 제시
  - ‘○’ 표시한 공제항목은 대부분 추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이를 고정 데이터 처리하여, 시간의 변화나 시나리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항목으로 가정
  - ‘●’ 표시한 공제항목은 대체로 가구원 구성과 관련된 항목, 혹은 원자료에서 공제대상금액만을 제공한 항목으로 소득세법상 근거에 따라 재계산이 가능
  - ‘◆’ 표시한 항목은 임금상승률의 가정한 총급여의 변화를 재계산하여 분석에 반영
- 이와 같은 정태적 분석방법론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동 기간에 비교 분석할 때 매우 효과적이지만, 임금상승률을 가정한 동태분석으로 예측치를 제시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면세자 비중을 과대 혹은 과소 추정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고찰하는 것이 필요

<표 III-6>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정태분석 반영 방법

항목			모형 반영 방법		
			원자료	재계산	
총급여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종합 소득 공제	기본 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	
	추가 공제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가족		●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	
		공적 연금 보험료 공제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특별 소득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고용보험료	○	
주택 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2014년 이전 기부분)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그 밖의 소득공제 계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산출세액				●	

<표 III-6>의 계속

항목			모형 반영 방법			
			원자료	재계산		
세액 감면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조세조약			○		
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	
			6세 이하		●	
			출산 및 입양		●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보 험 료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	○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특별 세액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2015년 이후 기부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			○		
	외국납부			○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결정세액				●		

주: ○ 표시는 원자료에서 나타난 자료를 고정데이터 처리한 것을 의미하며, ● 표시는 연말정산의 흐름에 따라 재계산한 것을 의미.

◆ 표시한 공제 항목은 임금상승률 가정에 따라 변동된 총급여액에 따라 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임금상승률 가정에 따라 재계산함

- 본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면세자 비중의 과대 혹은 과소 추정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고려 가능
  - 첫째,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임금상승률을 가정하여 면세자 비중을 추정할 때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자 비중을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존재
    - 기존 근로자들의 일부가 임금 상승으로 인해 과세자로 전환되어 면세자 비중이 감소하더라도, 새롭게 저소득 근로자가 진입한다면 면세자 비중의 감소 폭은 추정한 결과보다 더욱 작을 것으로 예상 가능
  -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임금상승률을 가정한 동태분석 시 물가상승률로 인한 지출액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세자 비중을 과소추정할 가능성 존재
    - 물가상승과 함께 공제대상금액이 증가한다면 소득·세액공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면세자 비중은 추정치보다 작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가능
  -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신고서 작성 시 공제신고를 누락하였을 경우, 면세자 비중을 과소추정할 가능성 존재
    - 이는 주로 과세미달자(과세표준이 없는 자)나 면세자(결정세액이 없는 자)들이 신고서를 작성할 때 나타나는데, 이들은 추가적으로 공제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결정세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신고를 누락
    - 따라서 공제신고가 누락될 경우, 정태분석을 시행할 때 실제보다 면세자를 과소추정하고 면세자 비중이 과다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할 가능성 존재
    - 이와 같은 현상은 임금상승률을 가정한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적 시나리오 비교 분석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고려한 방법론은 시나리오 비교 분석에서 면세자 비중을 과소 혹은 과대하게 추정할 가능성이 적으나, 임금상승률을 가정한 동태분석에서는 면세자 비중을 과소추정하는 경향이 있음
  
- 임금상승률을 가정한 동태분석 결과가 면세자 비중 감소 폭을 과대추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이들 추정치들(면세자 비중 감소 폭)을 가용한 범위의 최대 추정값으로 간주하고 해석할 필요

## 가. 현행 제도 유지: 명목임금상승률 가정

- 면세자 비중 축소 대안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추후 면세자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 주지하다시피, 현행 소득세제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명목적 가치(임금 및 지출액)에 기반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명목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면세자 비중이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
  - 즉,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명목임금이 상승한다면 결국에는 결정세액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면세자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비지출액(교육비, 의료비 등)의 증가는 공제대상금액을 증가시켜 결정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 또한 존재
  
- 본 연구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목임금상승률을 1, 2, 3, 4, 5%의 5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면세자 비중의 변화와 세부담의 변화를 추정하는 데 초점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3~2015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약 3.28%라고 결과를 보고<sup>6)</sup>
    - 따라서 1~5% 내에서 5개 구간으로 명목임금상승률을 가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근래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예측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반면, 가구의 지출액에 따라 특별공제액이 변하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 또한 결정세액 및 면세자 비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목임금 변화율만을 가지고 면세자 비중 및 세부담 효과를 예측하는 분석을 실시하되, 해석 및 결론 도출 시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의 관점에서 면세자 비중을 예측하고자 함

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el.go.kr/>), 접속일: 2016.11.24

- 예컨대, 향후 명목임금상승률이 5%이고 물가상승률이 2%라고 할 때 실질임금상승률은 3%이기 때문에, 함의 도출 시 명목임금 상승률을 3%로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면세자 비중 및 세부담 효과를 예측하고자 함

## 1) 면세자 비중 분석

- 연간 임금상승률을 5가지 경우로 가정하고 면세자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7>과 [그림 III-4]에 제시
  - 제시된 표는 연간 면세자 비중의 변화를 임금상승률별로 추정한 결과를 의미
  - 분석 결과, 면세자 비중은 1~5%의 임금상승률별로 각각 매년 평균 0.93, 1.70, 2.34, 2.95, 3.47%씩 자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은 노동시장 진입효과, 물가상승률, 공제신고누락 효과 등으로 면세자 비중을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높음
    -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추정치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감소율로 해석해야 함에 주의할 필요
-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가정은 임금상승률 3%, 물가상승률은 1%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판단컨대 면세자 비중은 매년 약 1% 초중반가량 그리고 향후 5년 내에 약 5~8% 정도 자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의 분석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제 증가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향후 면세자 비중 변화를 예측해야 함
    - 따라서 3% 명목임금상승률과 1%의 물가상승률을 가정할 때,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표에 제시된 결과 중 2% 명목임금상승률 가정을 토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 이 밖에도 면세자 비중 과소추정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세자 비중 감소는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
  - 이와 같은 모든 가능성과 가정을 토대로 예측해보면, 면세자 비중은 평균적으로 매년 1% 초중반가량 자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5년 후에 면세자 비중이 현재 수준 대비 약 5~8% 정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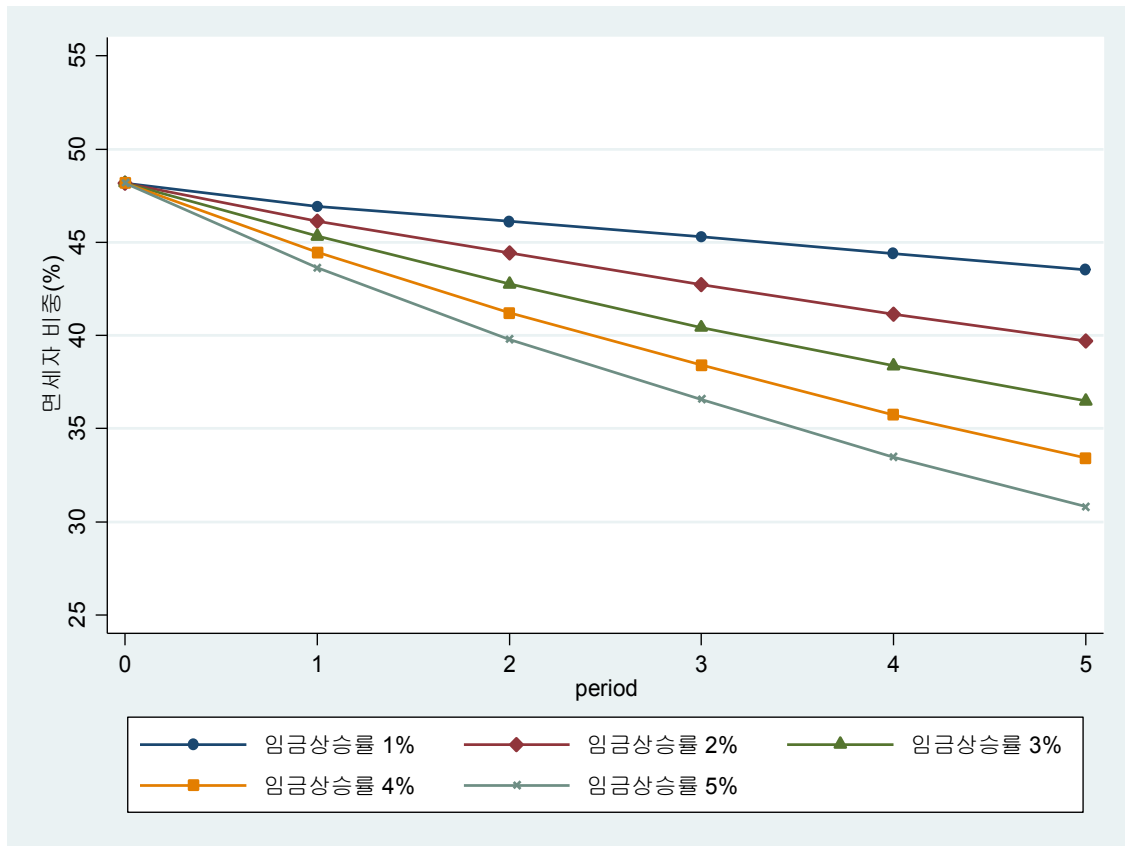
<표 III-7> 명목임금상승률 가정별 면세자 비중 변화

(단위: %)

period	임금상승률 1%	임금상승률 2%	임금상승률 3%	임금상승률 4%	임금상승률 5%
0	48.18	48.18	48.18	48.18	48.18
1	46.92	46.13	45.32	44.45	43.62
2	46.12	44.42	42.75	41.20	39.79
3	45.29	42.72	40.43	38.40	36.57
4	44.41	41.15	38.36	35.74	33.48
5	43.54	39.69	36.47	33.43	30.81
면세자 비중 평균 변화비율	-0.93	-1.70	-2.34	-2.95	-3.47

[그림 III-4] 명목임금상승률 가정별 면세자 비중 변화

(단위: %)



- 면세자 비중의 자연 감소가 어떠한 소득구간에서 활발히 진행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표 III-8>, <표 III-9>와 [그림 III-5]에서는 급여구간별로 면세자 비중 변화를 분석
  - 급여구간별로 보았을 때, 명목임금상승률 가정에 따른 면세자의 비중은 상당히 광범위한 소득구간에 걸쳐 나타남
    - 대체로 1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 면세자 비중이 활발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 특히,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 면세자 비중이 매우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점이 확인 가능
  -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태로 명목임금상승률만이 증가하여도 점진적으로 면세자 비중이 바람직한 구성비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
    - 1천만원 이하의 최저 소득구간에서 면세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반면,
    - 기존에 세액공제로 인해 과도하게 면세자로 전환된 소득구간(2천만원~8천만원)에서 면세자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
  - 이와 같은 결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면세자 감소에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형태로 면세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
    -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소한 향후 5년 내에 30%대로 면세자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표 III-8〉 명목임금상승률 기정과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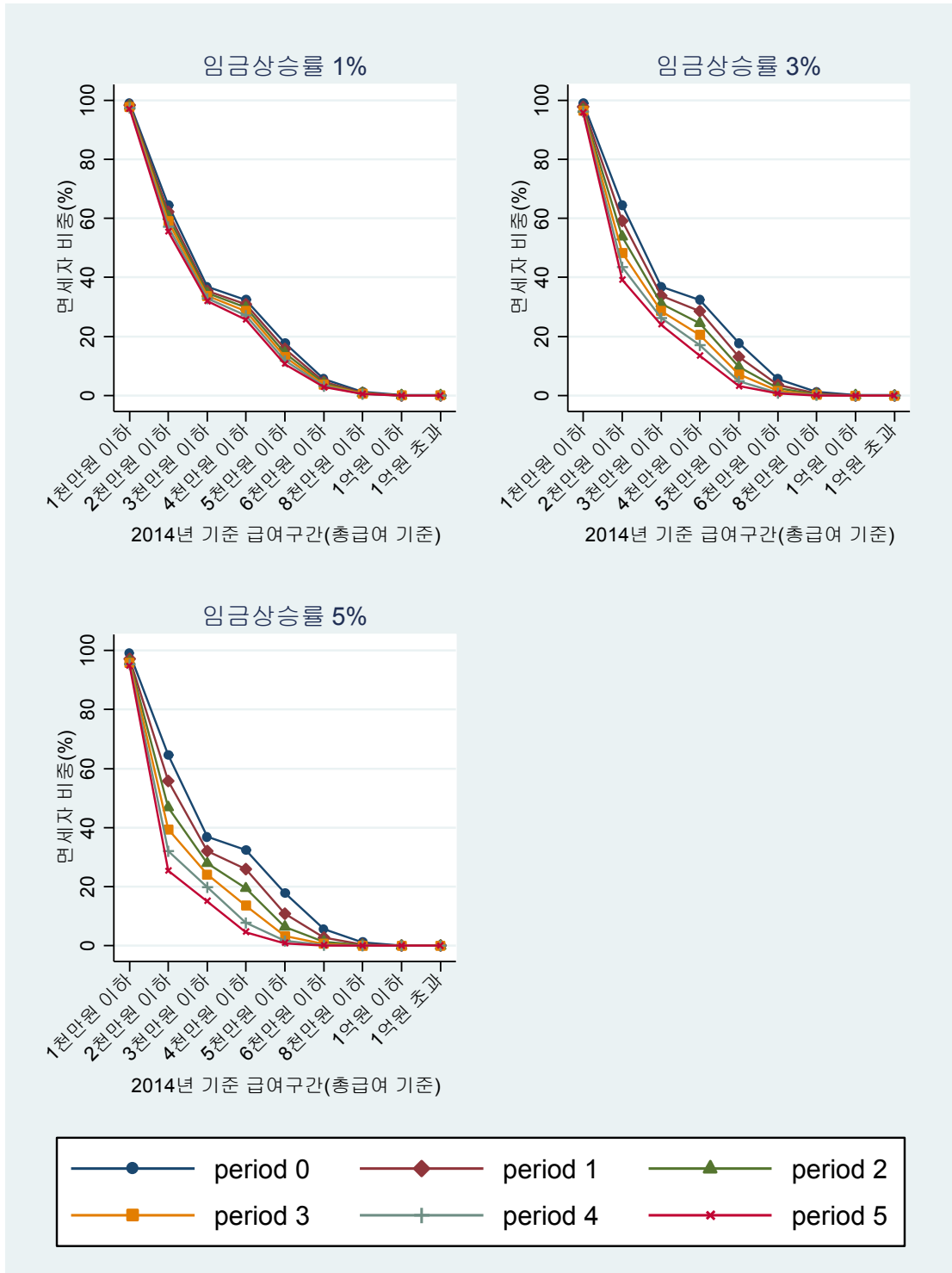
명목임금 상승률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period					평균 변화비율 (%p)	period					평균 변화비율 (%p)	period					평균 변화비율 (%p)	period					평균 변화비율 (%p)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1%	98.98	98.36	98.06	97.74	97.38	97.05	-0.39	64.55	62.19	60.66	59.03	57.25	55.54	-1.80	36.86	35.44	34.64	33.83	32.93	31.97	-0.98	98.98	98.06	97.39	96.82	96.53	96.31	95.79	-0.64	64.55	60.68	57.28	53.74	50.01	46.64	-3.58	36.86	34.64	32.94	31.09	29.44	27.80	-1.81	98.98	97.75	96.83	96.43	96.11	95.79	95.25	-0.75	64.55	57.33	50.12	43.58	37.05	31.89	-6.53	36.86	32.98	29.51	26.30	23.31	19.83	-3.41	98.98	97.09	96.32	95.81	95.25	94.71	-0.85	64.55	55.71	46.85	39.38	32.02	25.48	-7.81	36.86	32.07	27.91	24.10	19.93	15.09	-4.35	
2%	32.44	31.00	29.85	28.63	27.23	25.74	-1.34	17.84	15.88	14.45	13.09	11.86	10.71	-1.43	5.64	4.75	4.19	3.65	3.19	2.84	-0.56%	32.44	29.86	27.26	24.45	21.81	19.29	13.44	-2.63	17.84	14.46	11.89	9.67	7.91	6.34	-2.30	5.64	4.19	3.19	2.52	1.89	1.35	-0.86%	32.44	28.67	24.50	20.56	17.05	13.44	7.80	-4.93	17.84	11.93	7.99	4.88	2.85	1.70	-3.23	5.64	3.21	1.91	1.01	0.60	0.34	-1.06%	32.44	27.31	21.92	17.11	12.19	7.80	4.67	-5.55	17.84	10.81	6.46	3.27	1.72	0.88	-3.39	5.64	2.87	1.38	0.70	0.35	0.17	-1.09%
3%	32.44	29.86	27.26	24.45	21.81	19.29	-2.63	17.84	14.46	11.89	9.67	7.91	6.34	-2.30	5.64	4.19	3.19	2.52	1.89	1.35	-0.86%	32.44	28.67	24.50	20.56	17.05	13.44	7.80	-4.93	17.84	11.93	7.99	4.88	2.85	1.70	-3.23	5.64	3.21	1.91	1.01	0.60	0.34	-1.06%	32.44	25.89	19.48	13.63	7.88	4.67	4.67	-5.55	17.84	10.81	6.46	3.27	1.72	0.88	-3.39	5.64	2.87	1.38	0.70	0.35	0.17	-1.09%																						
4%	32.44	27.31	21.92	17.11	12.19	7.80	-4.93	17.84	11.93	7.99	4.88	2.85	1.70	-3.23	5.64	3.21	1.91	1.01	0.60	0.34	-1.06%	32.44	25.89	19.48	13.63	7.88	4.67	4.67	-5.55	17.84	10.81	6.46	3.27	1.72	0.88	-3.39	5.64	2.87	1.38	0.70	0.35	0.17	-1.09%	32.44	25.89	19.48	13.63	7.88	4.67	4.67	-5.55	17.84	10.81	6.46	3.27	1.72	0.88	-3.39	5.64	2.87	1.38	0.70	0.35	0.17	-1.09%																						
5%	32.44	25.89	19.48	13.63	7.88	4.67	-5.55	17.84	10.81	6.46	3.27	1.72	0.88	-3.39	5.64	2.87	1.38	0.70	0.35	0.17	-1.09%	32.44	25.89	19.48	13.63	7.88	4.67	4.67	-5.55	17.84	10.81	6.46	3.27	1.72	0.88	-3.39	5.64	2.87	1.38	0.70	0.35	0.17	-1.09%	32.44	25.89	19.48	13.63	7.88	4.67	4.67	-5.55	17.84	10.81	6.46	3.27	1.72	0.88	-3.39	5.64	2.87	1.38	0.70	0.35	0.17	-1.09%																						

〈표 Ⅲ-8〉 명목임금상승률 기정과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 변화(계속)

(단위: %)

명목임금 상승률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period						period						period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평균 변화비율 (%p)
1%	1.22	0.97	0.82	0.70	0.61	0.51	0.15	0.09	0.08	0.06	0.06	0.06	0.15	0.09	0.08	0.07	0.06	0.04	-0.02
2%	1.22	0.82	0.61	0.43	0.32	0.24	0.15	0.08	0.06	0.06	0.05	0.03	0.15	0.08	0.06	0.04	0.04	0.02	-0.03
3%	1.22	0.70	0.44	0.27	0.17	0.10	0.15	0.06	0.06	0.04	0.03	0.02	0.15	0.07	0.04	0.03	0.02	0.01	-0.03
4%	1.22	0.61	0.32	0.18	0.09	0.07	0.15	0.06	0.05	0.03	0.02	0.01	0.15	0.06	0.04	0.02	0.00	0.00	-0.03
5%	1.22	0.52	0.24	0.10	0.07	0.04	0.15	0.06	0.03	0.02	0.01	0.01	0.15	0.04	0.03	0.01	0.00	0.00	-0.03

[그림 III-5] 명목임금상승률 가정과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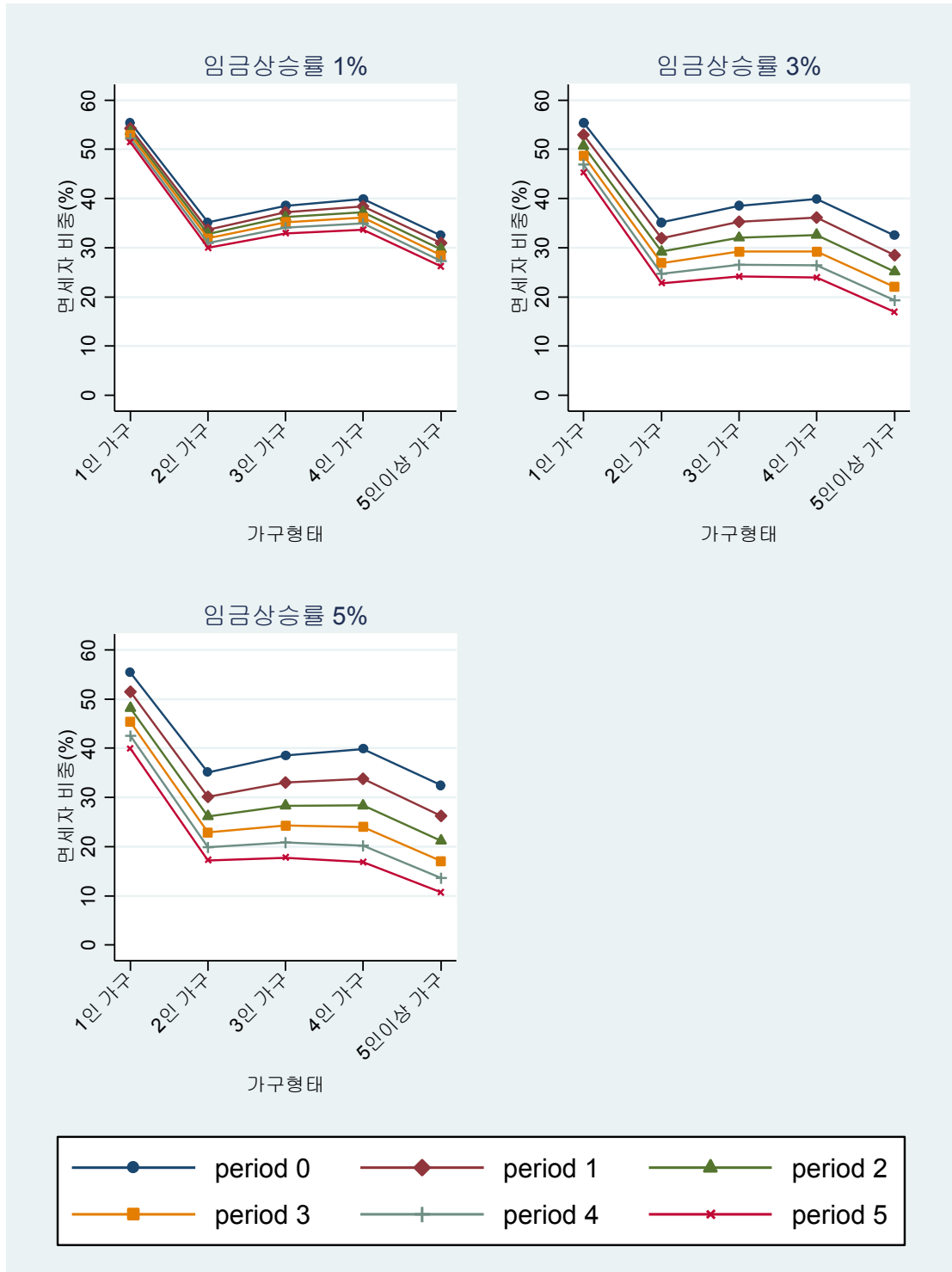
- 다음으로 명목임금상승률 가정에 따른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의 자연감소를 분석하기 위해, <표 III-10>과 [그림 III-6]에서는 가구형태별로 면세자 비중 변화를 제시
  -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가구형태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합으로 가구형태를 규정
    - 이와 같은 가구형태 정의는 맞벌이의 경우에 부부가 개인별로 근로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과소추정할 수 있으나, 홑벌이의 경우에는 상당히 정확하게 가구원 수를 계산 가능
    - 반면, 1인가구의 경우 단독가구뿐만 아니라 개별 신고로 인한 개별 신고 근로소득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필요
  - 가구형태별로 보았을 때, 1인가구의 면세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른 가구형태의 면세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 명목임금상승으로 인한 면세자 비중 자연감소는 모든 가구형태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가구별로 조금씩 상이한 수준
    - 상대적으로 1인가구의 면세자 비중 감소 폭은 가장 작은 편이며
    - 2인가구 이상의 면세자 비중 감소 폭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을 보이나, 대체로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면세자 비중의 감소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면세자 비중 자연감소는 가구형태에 차별을 두지 않고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가능

〈표 III-9〉 명목임금상승률 기정과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 변화

(단위: %)

명목임금 상승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period						period						period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1%	55.39	54.26	53.59	52.90	52.16	51.41	-0.80	35.11	33.67	32.83	31.93	30.91	30.01	-1.02	38.54	37.20	36.20	35.19	34.03	32.94	-1.12
2%	55.39	53.60	52.17	50.70	49.32	48.10	-1.46	35.11	32.84	30.93	29.17	27.58	26.09	-1.80	38.54	36.21	34.05	31.99	30.13	28.19	-2.07
3%	55.39	52.92	50.73	48.70	46.94	45.27	-2.02	35.11	31.96	29.20	26.88	24.72	22.80	-2.46	38.54	35.22	32.02	29.23	26.54	24.18	-2.87
4%	55.39	52.19	49.37	46.97	44.51	42.43	-2.59	35.11	30.97	27.65	24.75	22.19	19.77	-3.07	38.54	34.08	30.20	26.59	23.50	20.75	-3.56
5%	55.39	51.49	48.18	45.37	42.48	39.97	-3.08	35.11	30.08	26.18	22.89	19.84	17.25	-3.57	38.54	33.05	28.32	24.29	20.82	17.79	-4.15
명목임금 상승률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period						period														
	0	1	2	3	4	5	0	1	2	3	4	5									
1%	39.88	38.38	37.25	36.10	34.94	33.68	-1.24	32.49	30.91	29.70	28.47	27.31	26.19	-1.26							
2%	39.88	37.26	34.96	32.56	30.27	28.21	-2.33	32.49	29.71	27.33	25.08	23.00	21.06	-2.29							
3%	39.88	36.14	32.61	29.25	26.41	23.92	-3.19	32.49	28.51	25.11	22.06	19.31	16.97	-3.10							
4%	39.88	35.01	30.37	26.48	23.17	20.09	-3.96	32.49	27.36	23.08	19.36	16.27	13.60	-3.78							
5%	39.88	33.79	28.37	24.03	20.16	16.84	-4.61	32.49	26.30	21.21	17.07	13.67	10.76	-4.35							

[그림 III-6] 명목임금상승률 가정과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 변화



## 2)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 분석

- 면세자는 정의상 결정세액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유효세율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면세자의 감소는 필히 유효세율의 증가를 수반
  
- 여기서는 먼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유효세율을 분석함으로써 과도한 면세자 비중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확인해보고,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유효세율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 <표 III-11>, <표 III-12>와 [그림 III-7]은 명목임금상승률 가정에 따른 급여구간별 유효세율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면세자 비중 증가의 이면에는 지나치게 낮은 유효세율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
  - 제시된 표와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1억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 한 자릿수의 유효세율을 유지
    - 특히, 4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의 유효세율은 1% 내외이며,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의 유효세율도 4%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
    - 이렇듯 낮은 유효세율은 현재 과도하게 높은 면세자 비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 특히,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 세액공제 이후 급격한 면세자 비중이 증가한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 낮은 유효세율이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면세자 축소 대안은 3천만원 이상의 중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자의 유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존재
  -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른 유효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각 임금상승률 가정별로 그 수준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유효세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

〈표 Ⅲ-10〉 명목임금상승률 가정과 급여구간별 유효세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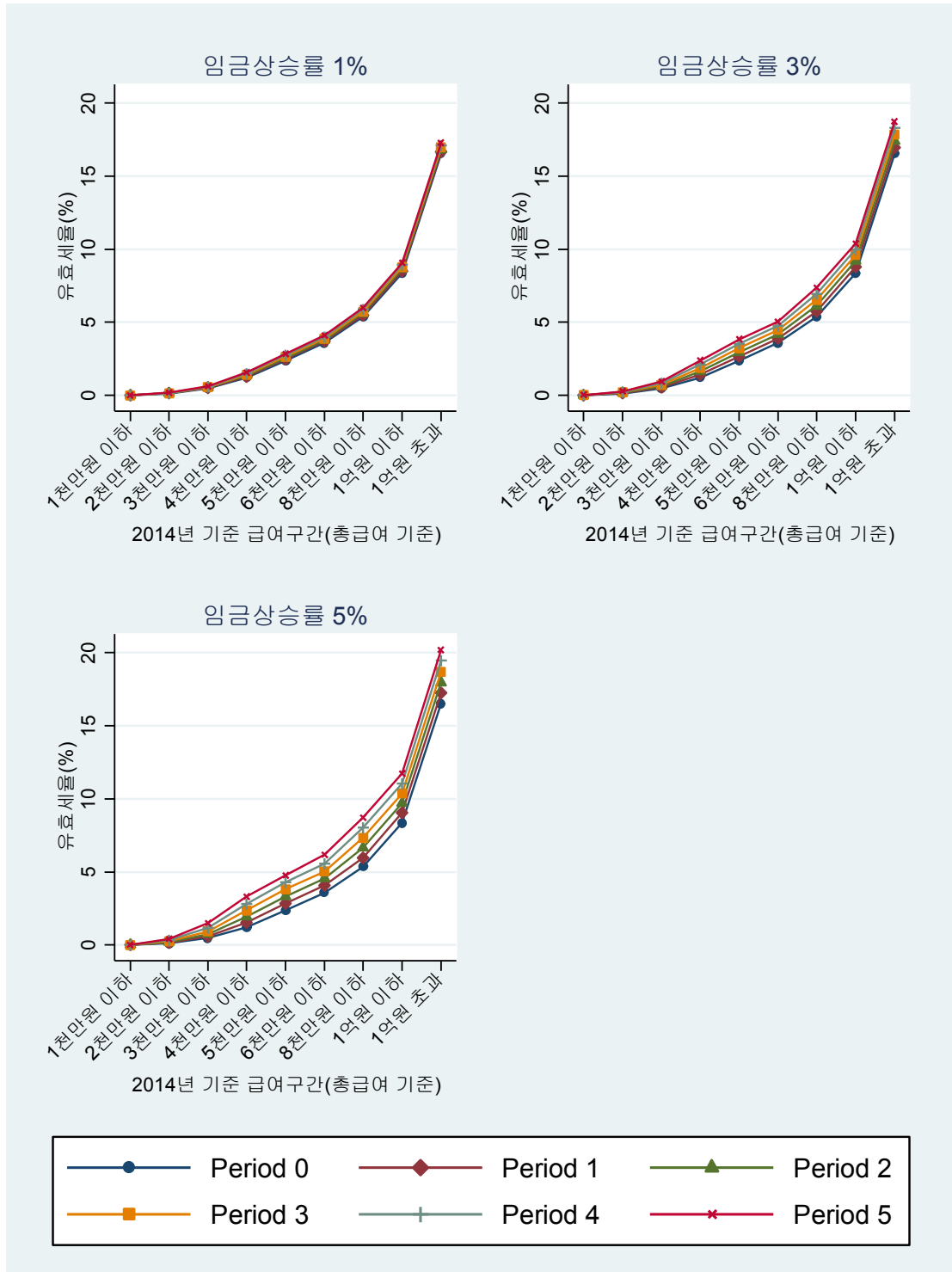
명목임금 상승률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period						period						period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1%	0.01	0.01	0.01	0.01	0.01	0.01	0.13	0.13	0.13	0.14	0.15	0.16	0.17	0.01	0.49	0.51	0.53	0.56	0.58	0.61	0.02
2%	0.01	0.01	0.01	0.01	0.01	0.01	0.13	0.14	0.14	0.16	0.18	0.20	0.22	0.02	0.49	0.53	0.58	0.63	0.69	0.76	0.05
3%	0.01	0.01	0.01	0.01	0.01	0.02	0.13	0.15	0.18	0.21	0.24	0.27	0.27	0.03	0.49	0.56	0.63	0.72	0.83	0.95	0.09
4%	0.01	0.01	0.01	0.01	0.02	0.02	0.13	0.16	0.20	0.24	0.29	0.34	0.34	0.04	0.49	0.58	0.69	0.82	0.99	1.19	0.14
5%	0.01	0.01	0.01	0.02	0.02	0.03	0.13	0.17	0.22	0.27	0.34	0.41	0.41	0.06	0.49	0.60	0.75	0.94	1.19	1.49	0.20
명목임금 상승률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period						period						period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1%	1.22	1.28	1.35	1.41	1.49	1.56	2.37	2.47	2.56	2.65	2.75	2.84	0.09	3.59	3.69	3.79	3.89	3.99	4.09	0.10	
2%	1.22	1.35	1.48	1.63	1.79	1.95	2.37	2.56	2.75	2.94	3.13	3.33	0.19	3.59	3.79	3.99	4.19	4.38	4.58	0.20	
3%	1.22	1.41	1.63	1.87	2.12	2.38	2.37	2.65	2.94	3.23	3.53	3.83	0.29	3.59	3.89	4.18	4.48	4.77	5.05	0.29	
4%	1.22	1.48	1.78	2.11	2.47	2.84	2.37	2.74	3.13	3.52	3.92	4.31	0.39	3.59	3.99	4.38	4.76	5.15	5.59	0.40	
5%	1.22	1.55	1.94	2.37	2.83	3.31	2.37	2.83	3.32	3.81	4.30	4.78	0.48	3.59	4.08	4.56	5.04	5.58	6.17	0.52	

〈표 III-10〉 명목임금상승률 기정과 급여구간별 유효세율 변화(계속)

(단위: %)

명목임금 상승률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period						평균 변화비율 (%p)	period						평균 변화비율 (%p)	period						평균 변화비율 (%p)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1%	5.36	5.49	5.61	5.74	5.87	6.00	0.13	8.35	8.49	8.63	8.77	8.91	9.05	0.14	16.53	16.68	16.82	16.96	17.11	17.26	0.15					
2%	5.36	5.61	5.87	6.13	6.40	6.67	0.26	8.35	8.63	8.91	9.19	9.46	9.73	0.28	16.53	16.82	17.11	17.40	17.69	17.99	0.29					
3%	5.36	5.74	6.12	6.53	6.94	7.37	0.40	8.35	8.77	9.19	9.59	9.99	10.39	0.41	16.53	16.96	17.39	17.83	18.28	18.73	0.44					
4%	5.36	5.86	6.38	6.93	7.50	8.05	0.54	8.35	8.91	9.45	9.98	10.51	11.05	0.54	16.53	17.10	17.68	18.27	18.87	19.47	0.59					
5%	5.36	5.99	6.65	7.35	8.04	8.73	0.67	8.35	9.04	9.71	10.37	11.03	11.75	0.68	16.53	17.24	17.97	18.71	19.46	20.20	0.73					

[그림 Ⅲ-7] 명목임금상승률 가정과 급여구간별 유효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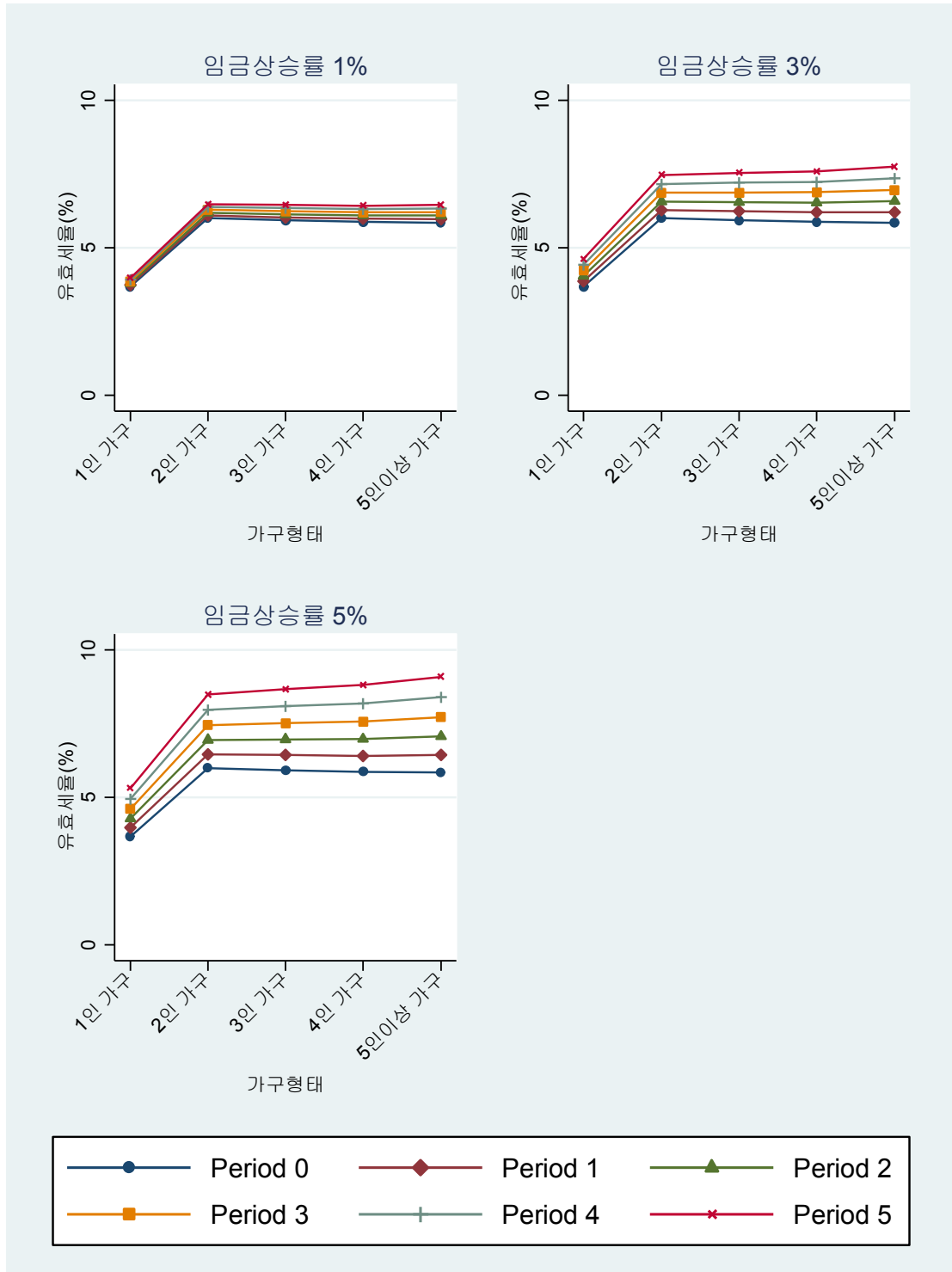
- 근로소득세의 누진적 구조 때문에 급여구간별로 유효세율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가구형태별로 유효세율을 분석하는 것은 그 중요도가 다소 떨어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의 변화가 어떻게 유효세율의 변화를 수반하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표 III-13>, <표 III-17>과 [그림 III-8]에서는 가구형태별 유효세율 분석 결과를 제시
  - 가구형태별 유효세율 분석은 앞선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 분석과 유사한 행태를 보임
    - 임금상승률 가정별로 그 수준은 상이하나 대체로 1인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형태에 걸쳐 유사한 수준으로 유효세율이 증가한 것이 확인 가능
    - 면세자 비중 분석과 유사하게 1인가구의 유효세율의 변화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미미하게 유효세율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요컨대, 이상의 결과는 면세자 비중 증가가 지나치게 낮은 유효세율에서 기인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면세자 축소 대안은 중소득구간에서 유효세율을 적절히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암시

〈표 Ⅲ-11〉 명목임금상승률 기정과 가구형태별 유효세율 변화

(단위: %)

명목임금 상승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period						period						period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1%	3.68	3.74	3.80	3.86	3.92	3.98	0.06	6.00	6.09	6.19	6.28	6.38	6.48	0.10	5.92	6.03	6.13	6.23	6.34	6.44
2%	3.68	3.80	3.92	4.04	4.17	4.30	0.12	6.00	6.19	6.38	6.57	6.77	6.97	0.19	5.92	6.13	6.34	6.55	6.76	6.98
3%	3.68	3.86	4.04	4.23	4.42	4.62	0.19	6.00	6.28	6.57	6.86	7.16	7.47	0.29	5.92	6.23	6.55	6.87	7.20	7.54
4%	3.68	3.92	4.16	4.42	4.69	4.96	0.26	6.00	6.37	6.76	7.16	7.56	7.98	0.40	5.92	6.33	6.76	7.19	7.64	8.10
5%	3.68	3.98	4.29	4.61	4.96	5.32	0.33	6.00	6.47	6.95	7.45	7.97	8.49	0.50	5.92	6.43	6.97	7.52	8.09	8.67
명목임금 상승률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period						period													
	0	1	2	3	4	5	0	1	2	3	4	5								
1%	5.87	5.98	6.09	6.20	6.31	6.42	0.11	5.85	5.97	6.09	6.21	6.33	6.46	0.12						
2%	5.87	6.09	6.31	6.53	6.76	7.00	0.23	5.85	6.09	6.33	6.58	6.83	7.09	0.25						
3%	5.87	6.20	6.53	6.88	7.23	7.59	0.34	5.85	6.21	6.58	6.96	7.34	7.74	0.38						
4%	5.87	6.31	6.76	7.22	7.70	8.19	0.46	5.85	6.33	6.82	7.34	7.87	8.41	0.51						
5%	5.87	6.41	6.98	7.57	8.18	8.81	0.59	5.85	6.45	7.07	7.72	8.40	9.09	0.65						

[그림 Ⅲ-8] 명목임금상승률 가정과 가구형태별 유효세율 변화



## 나. 시나리오 1: 표준세액공제 축소 대안

- 첫 번째로 고려하고자 하는 면세자 축소 대안은 표준세액공제의 축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현행 13만원(2014년 기준)의 표준세액공제를 1만원씩 감소(총 13개의 대안)시켜가며 면세자 비중 축소 효과와 세부담 효과를 분석
-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어 산출세액에서 13만원(현행은 13만원, 보완대책 이전에는 12만원)을 일괄공제
  -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신고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이 13만원(표준세액공제액) 미만인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 표준세액공제 적용 조건항목을 살펴보면, 소득과 연동(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 등)되거나 가구의 지출(의료비, 교육비, 등)에 따라 공제대상금액이 증가하므로, 대체로 저소득층 1인가구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음
  - 따라서 표준세액공제 축소 대안은 저소득 1인가구들을 과세자로 전환시키고 이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예상 가능
- 표준세액공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면세자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 표준세액공제를 1만원씩 축소할 때 면세자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0.9%p 감소
    - 급여구간별로는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자로 전환
    - 가구형태별로는 1인과 2인 가구에서 면세자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 추가 세부담 또한 면세자 비중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
    - 표준세액공제 1만원씩 축소할 때 1인당 추가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약 1,412원 가량 증가시키며, 표준세액공제 1만원 축소에 따른 평균적인 총세수 증가액은 약 234.8억원으로 추정
    - 급여구간별로는 총급여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대부분의 추가 세부담이 전가
    - 가구형태별로는 1인과 2인 가구가 추가 세부담이 가장 높음

- 요컨대, 표준세액공제 축소 대안은 세수의 증대는 최소화하면서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부담이 대부분 저소득 1인가구에 주어진다든 점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1) 면세자 비중 분석

- 표준세액공제 축소 대안별 면세자 비중 변화는 <표 III-14>에 제시하였으며, [그림 III-9]는 이를 도식화
  - <표 III-14>의 두 번째 열은 각각의 대안별 면세자 비중을, 마지막 열은 현행 면세자 수준(48.17%) 대비 면세자 비중 감소 폭을 제시
- 분석 결과는 표준세액공제를 1만원씩 축소함에 따라 면세자 비중이 선형형태를 그리며 평균적으로 약 0.9%p 감소함을 보여줌
  - 표준세액공제를 1만원씩 축소함에 따라 면세자 비중은 최소 0.56%p에서 최대 1.05%p 감소하며, 평균적으로 표준세액공제 1만원 축소당 면세자 비중이 약 0.9%p 감소
    - 이는 표준세액공제가 면세자 비중에 미치는 효과의 선형성을 고려할 때,
    - 면세자 비중을 5%p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세액공제액을 약 5.6만원 감소시켜야 함을 의미
  - 표준세액공제를 완전히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면세자 비중이 현행 대비 약 11.65%p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함에 따라 어떠한 특성의 근로자가 과세자로 전환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근로자의 특성별 면세자 비중 변화를 추적해볼 필요
  - 급여구간(2014년 총급여 기준)별 분석은 어떠한 소득계층이 과세자로 전환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
  - 가구형태별 분석은 가구의 형태(가구원의 수)에 따른 근로자의 과세자 전환 근거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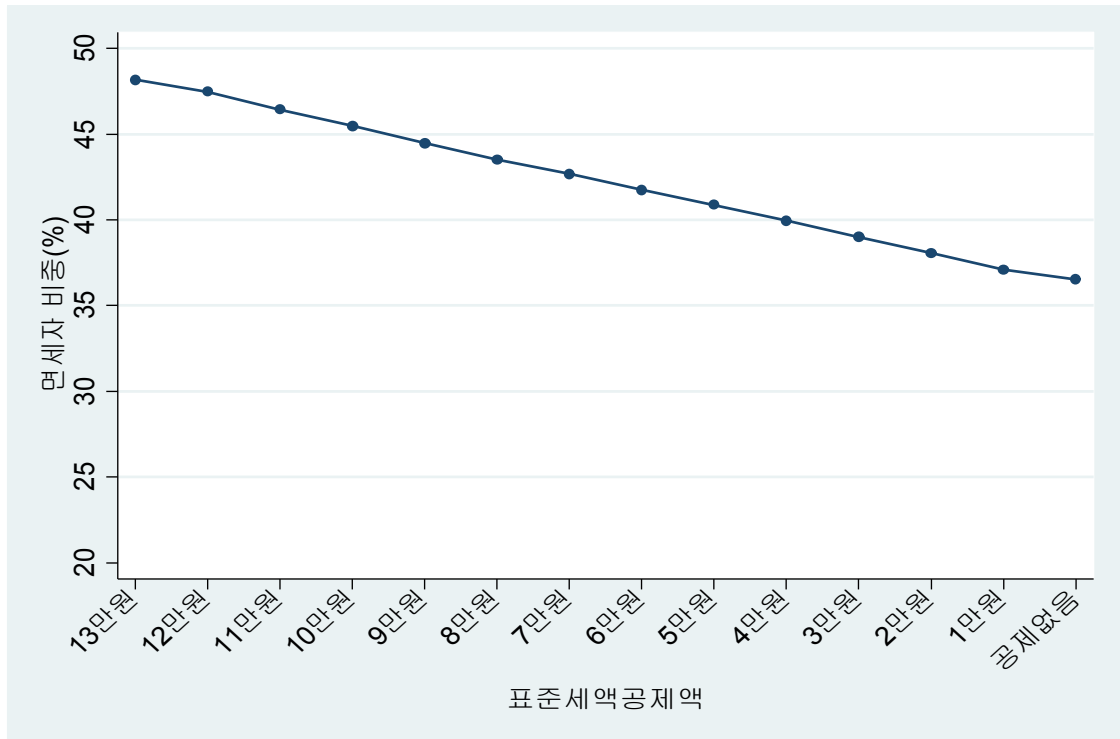
<표 III-12> 표준세액공제 대안별 면세자 비중 변화

(단위: %, %p)

대안	면세자 비중	현행 대비 면세자 감소폭
13만원 (현행)	48.18	-
12만원	47.48	-0.70
11만원	46.43	-1.74
10만원	45.49	-2.68
9만원	44.48	-3.70
8만원	43.51	-4.67
7만원	42.68	-5.49
6만원	41.75	-6.42
5만원	40.88	-7.30
4만원	39.96	-8.21
3만원	39.01	-9.17
2만원	38.06	-10.12
1만원	37.09	-11.08
공제없음	36.53	-11.65

[그림 III-9] 표준세액공제 대안별 면세자 비중 변화

(단위: %)



〈표 III-13〉 급여구간별(총급여기준) 면세자 비중 변화(표준세액공제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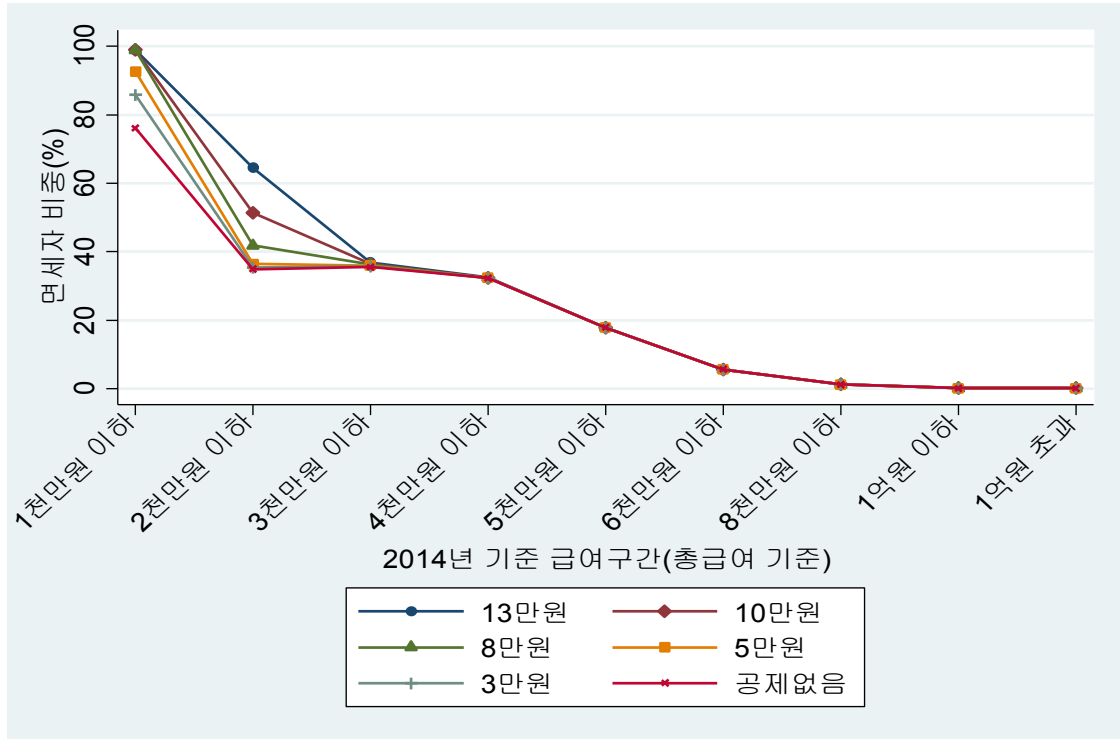
(단위: %, %p)

표준세액 공제액(원)	2014년 기준 급여구간별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3만원	98.98 (-)	64.55 (-)	36.86 (-)	32.44 (-)	17.84 (-)	5.64 (-)	1.22 (-)	0.15 (-)	0.15 (-)	
12만원	98.97 (-0.01)	61.15 (-3.40)	36.77 (-0.09)	32.43 (-0.02)	17.84 (0)	5.64 (0)	1.22 (0)	0.15 (0)	0.15 (0)	
11만원	98.97 (-0.01)	56.03 (-8.52)	36.67 (-0.19)	32.41 (-0.03)	17.84 (0)	5.64 (0)	1.22 (0)	0.15 (0)	0.15 (0)	
10만원	98.97 (-0.01)	51.44 (-13.11)	36.56 (-0.30)	32.40 (-0.04)	17.84 (0)	5.64 (0)	1.22 (0)	0.15 (0)	0.15 (0)	
9만원	98.96 (-0.02)	46.48 (-18.07)	36.43 (-0.43)	32.39 (-0.05)	17.84 (0)	5.64 (0)	1.22 (0)	0.15 (0)	0.15 (0)	
8만원	98.90 (-0.08)	41.85 (-22.70)	36.29 (-0.57)	32.38 (-0.06)	17.84 (0)	5.63 (-0.01)	1.21 (0)	0.15 (0)	0.15 (0)	
7만원	98.21 (-0.77)	38.66 (-25.89)	36.18 (-0.68)	32.37 (-0.07)	17.84 (0)	5.63 (-0.01)	1.21 (0)	0.15 (0)	0.15 (0)	
6만원	95.53 (-3.45)	37.30 (-27.25)	36.06 (-0.80)	32.36 (-0.08)	17.84 (0)	5.63 (-0.01)	1.21 (0)	0.15 (0)	0.15 (0)	
5만원	92.65 (-6.33)	36.47 (-28.09)	35.94 (-0.92)	32.35 (-0.09)	17.84 (0)	5.63 (-0.01)	1.21 (0)	0.15 (0)	0.15 (0)	
4만원	89.41 (-9.57)	35.87 (-28.68)	35.85 (-1.01)	32.33 (-0.11)	17.84 (0)	5.63 (-0.01)	1.21 (0)	0.15 (0)	0.15 (0)	
3만원	85.85 (-13.13)	35.45 (-29.10)	35.73 (-1.13)	32.32 (-0.12)	17.84 (0)	5.63 (-0.01)	1.21 (0)	0.15 (0)	0.15 (0)	
2만원	82.18 (-16.80)	35.17 (-29.39)	35.64 (-1.22)	32.31 (-0.13)	17.84 (0)	5.63 (-0.01)	1.21 (0)	0.15 (0)	0.15 (0)	
1만원	78.37 (-20.61)	34.96 (-29.59)	35.58 (-1.28)	32.29 (-0.15)	17.84 (-0.01)	5.63 (-0.01)	1.21 (0)	0.15 (0)	0.15 (0)	
공제없음	76.09 (-22.89)	34.92 (-29.63)	35.53 (-1.33)	32.28 (-0.16)	17.84 (-0.01)	5.63 (-0.01)	1.21 (0)	0.15 (0)	0.15 (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현행 제도와의 비중 차이(%p)를 의미

[그림 III-10]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 변화(표준세액공제 대안)

(단위: %)



- <표 III-15>과 [그림 III-10]은 표준세액공제 대안에 따라 급여기간별 면세자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제시
  - 분석 결과, 표준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면세자 비중 감소는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그룹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가능
    - 특히, 표준세액공제 축소는 총급여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들을 대거 과세자로 전환시키는 효과
    - 1천만원 이하 급여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표준공제액이 6만원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남
  - 표준세액공제 대안의 한 가지 특징은 총급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급여구간에서는 면세자 비중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 반면, 세액공제 전환 후 면세자 비중은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의 구간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III-10] 참조)
    - 따라서 표준세액공제 축소안은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의 소득그룹 근로자들을 타깃팅하여 과세자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는 한계 존재

<표 III-14>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표준세액공제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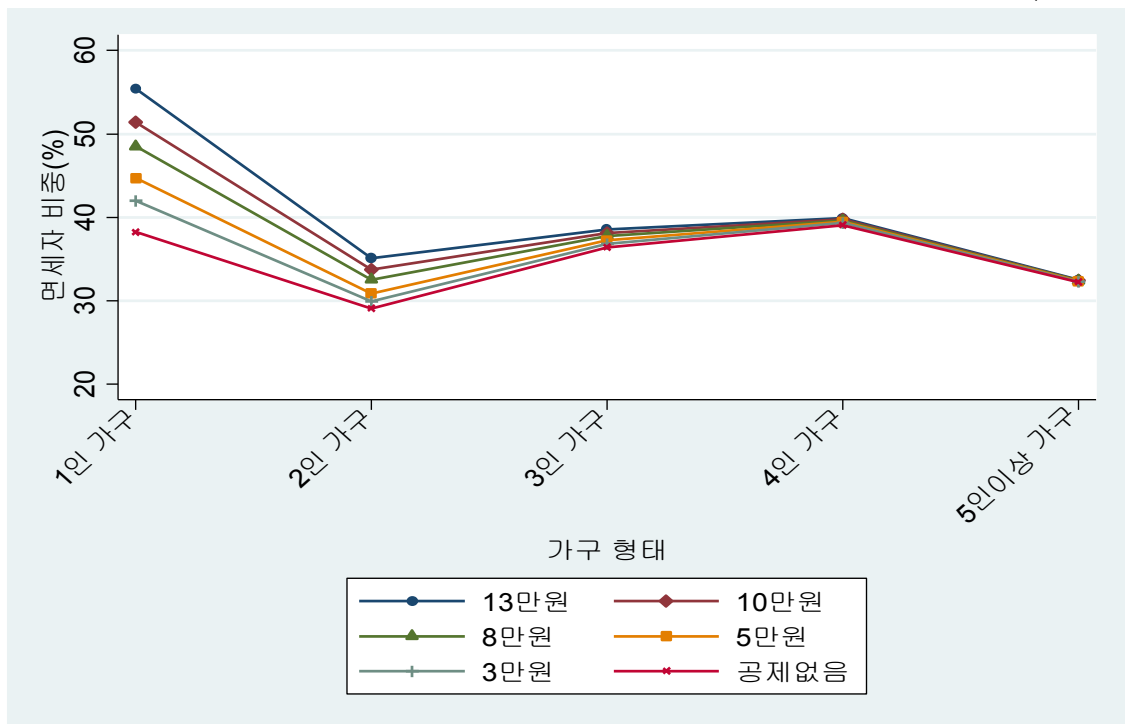
(단위: %, %p)

표준세액 공제액(원)	가구형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13만원	55.39 (-)	35.11 (-)	38.54 (-)	39.88 (-)	32.49 (-)
12만원	54.35 (-1.04)	34.76 (-0.35)	38.45 (-0.09)	39.85 (-0.03)	32.48 (-0.01)
11만원	52.80 (-2.59)	34.20 (-0.91)	38.31 (-0.24)	39.81 (-0.08)	32.47 (-0.03)
10만원	51.42 (-3.98)	33.70 (-1.41)	38.12 (-0.42)	39.77 (-0.12)	32.45 (-0.04)
9만원	49.94 (-5.46)	33.06 (-2.05)	37.96 (-0.58)	39.71 (-0.17)	32.44 (-0.06)
8만원	48.51 (-6.88)	32.54 (-2.57)	37.78 (-0.76)	39.64 (-0.24)	32.42 (-0.08)
7만원	47.33 (-8.07)	31.98 (-3.13)	37.62 (-0.92)	39.59 (-0.29)	32.39 (-0.10)
6만원	45.96 (-9.43)	31.47 (-3.64)	37.43 (-1.11)	39.53 (-0.36)	32.37 (-0.12)
5만원	44.71 (-10.69)	30.87 (-4.24)	37.23 (-1.31)	39.47 (-0.42)	32.34 (-0.15)
4만원	43.38 (-12.01)	30.35 (-4.75)	37.01 (-1.53)	39.38 (-0.50)	32.31 (-0.18)
3만원	41.98 (-13.42)	29.91 (-5.20)	36.79 (-1.76)	39.30 (-0.58)	32.29 (-0.21)
2만원	40.57 (-14.83)	29.50 (-5.61)	36.59 (-1.95)	39.19 (-0.69)	32.27 (-0.22)
1만원	39.11 (-16.28)	29.16 (-5.95)	36.44 (-2.10)	39.12 (-0.76)	32.24 (-0.26)
공제없음	38.23 (-17.17)	29.09 (-6.02)	36.39 (-2.16)	39.05 (-0.83)	32.22 (-0.2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현행 제도와와의 비중 차이(%p)를 의미

[그림 III-11] 가구형태와 면세자 비중(표준세액공제 대안)

(단위: %)



- <표 III-16>과 [그림 III-11]에서는 표준세액공제 대안에 따른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의 변화를 제시
  - 분석결과는 표준세액공제 축소 폭이 증가함에 따라 면세자 비중이 모든 가구 형태에 걸쳐서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 줌
  - 또한 가구형태별로 비교하면, 표준세액공제 축소에 따라 대체로 1인가구와 2인 가구 면세자 비중이 두드러지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 추가 세부담 분석

- 표준세액공제 축소를 통한 면세자 비중 감소는 근로자들의 결정세액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축소 대안별·근로자 특성별 세부담 변화를 분석할 필요 존재
- <표 III-17>은 표준공제가 1만원씩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추가적인 세부담의 기초통계치를 보여주며, [그림 III-12]는 추가 세부담의 평균적인 변화를 도식화
  - 여기서 세부담 증가액은 각 대안별 근로자의 결정세액과 현행(13만원)제도하에서 동일한 근로자의 결정세액의 차이를 계산
- 표준세액공제 축소에 따라 평균적인 1인당 추가 세부담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표준세액공제가 1만원 축소될 때 1인당 추가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약 1,41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표준세액공제를 완전히 폐지하였을 때에 1인당 추가 세부담은 약 18,352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각 시나리오에 따른 개인별 추가 세부담의 분포를 보면,
    - 표준세액공제 축소로 인하여 세부담이 증가한 인원은 전체의 2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개인의 추가 세부담의 최대치는 130,016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
  - 2014년 총급여가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총세수 증가액을 계산하면,
    - 표준세액공제 1만원 축소로 인한 평균적인 총세수 증가액은 약 234.8억원으로 추정

- 극단적인 예로 표준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총세수 증가액은 약 0.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표 III-15> 표준세액공제 대안별 세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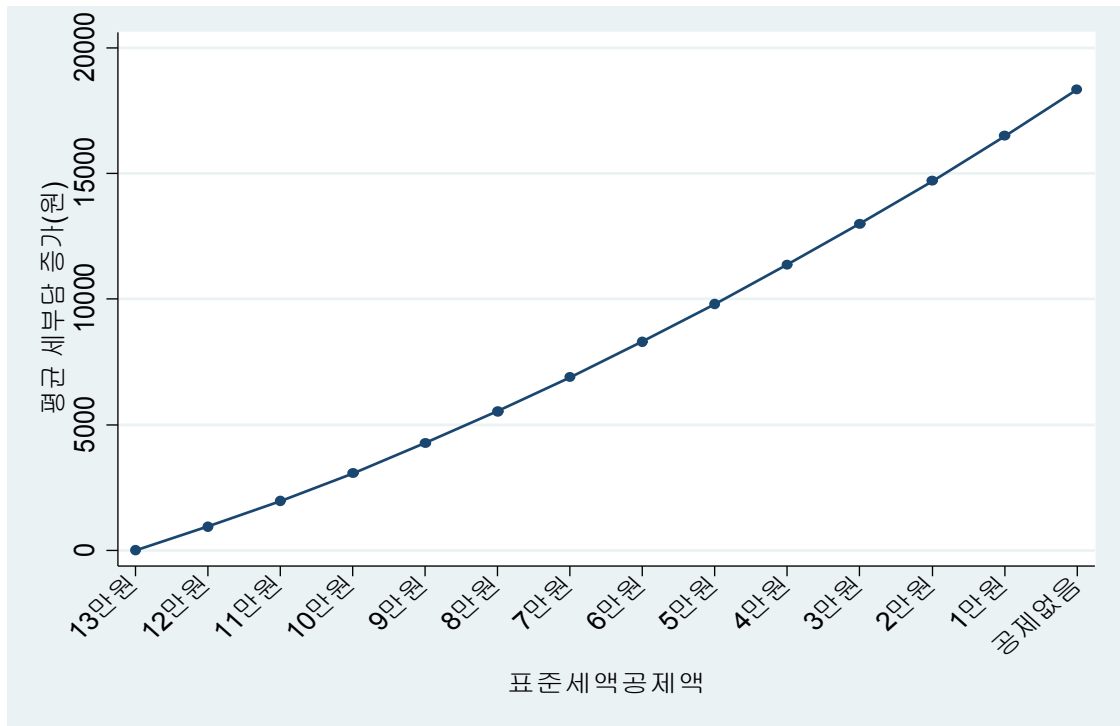
(단위: 원, %)

대안	표준세액 공제액	세부담 증가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상위 90% 값	상위 75% 값	중앙값	최소값
1	12만원	940 [9.75]	2,943	122,780	0	0	0	0
2	11만원	1,955 [10.80]	5,859	123,396	7,160	0	0	0
3	10만원	3,061 [11.73]	8,855	123,830	16,608	0	0	0
4	9만원	4,263 [12.75]	11,904	124,585	26,081	0	0	0
5	8만원	5,539 [13.72]	14,997	125,119	35,020	0	0	0
6	7만원	6,890 [14.54]	18,126	125,788	43,805	0	0	0
7	6만원	8,313 [15.47]	21,285	126,102	52,774	0	0	0
8	5만원	9,805 [16.35]	24,471	126,730	61,228	0	0	0
9	4만원	11,366 [17.26]	27,679	127,367	69,577	0	0	0
10	3만원	12,999 [18.22]	30,908	128,034	77,872	0	0	0
11	2만원	14,707 [19.17]	34,164	128,330	86,221	0	0	0
12	1만원	16,495 [20.13]	37,446	128,330	94,714	0	0	0
13	공제없음	18,352 [20.70]	40,760	130,016	103,275	0	0	0

주: [ ] 안의 숫자는 세부담이 증가한 인원의 비율(%)

[그림 III-12] 표준세액공제 대안별 세부담 증가

(단위: 원)



- <표 III-16>과 [그림 III-13]은 표준세액공제 대안별로 급여구간별 추가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제시
  - 급여구간별로 보았을 때, 표준세액공제 축소는 총급여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소득그룹에 대부분의 추가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총급여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소득그룹의 세부담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앞서 살펴본 면세자 비중 변화와 세부담 분석의 결과와 비교하면,
    - 면세자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소득그룹에서 면세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 추가 세부담은 1천만원 미만 소득그룹에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6〉 급여구간별(총급여기준) 평균 세부담 증가(표준세액공제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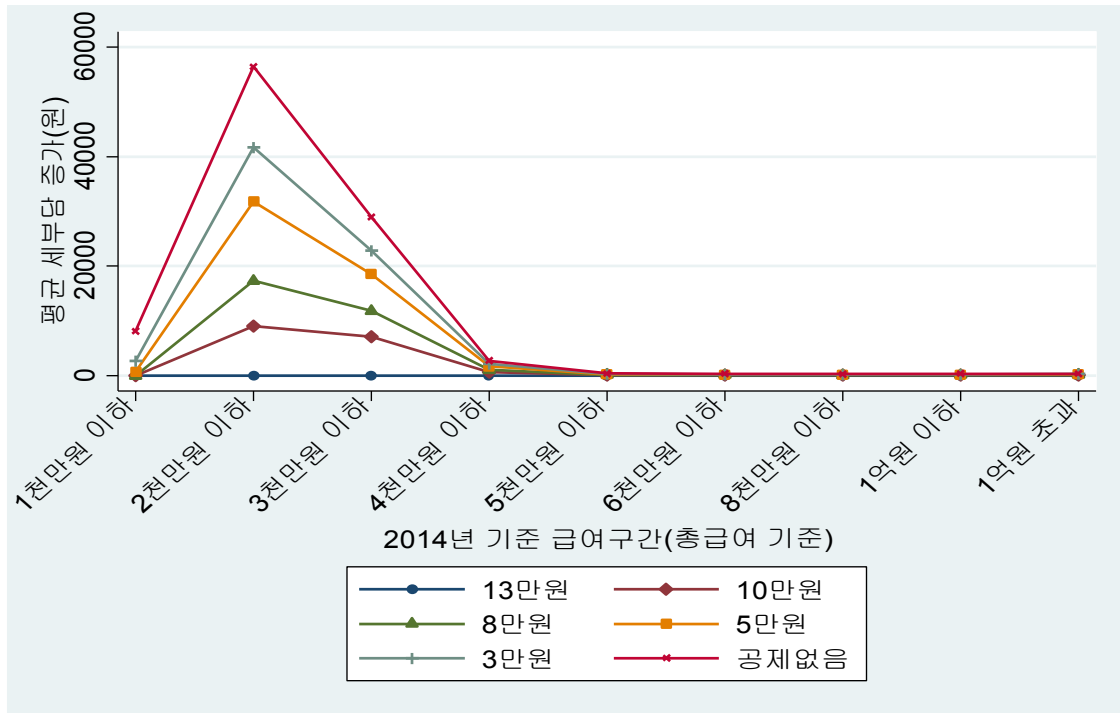
(단위: 원, %)

표준세액 공제액	2014년 기준 급여구간별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2만원	1 [0.01]	2,584 [27.53]	2,412 [24.16]	222 [2.23]	34 [0.34]	28 [0.28]	24 [0.24]	27 [0.27]	30 [0.30]	
11만원	2 [0.01]	5,579 [32.65]	4,785 [24.26]	435 [2.24]	65 [0.35]	53 [0.28]	46 [0.24]	53 [0.27]	59 [0.30]	
10만원	2 [0.01]	9,030 [37.24]	7,157 [24.38]	649 [2.25]	95 [0.35]	78 [0.28]	68 [0.24]	79 [0.27]	88 [0.30]	
9만원	3 [0.02]	12,975 [42.20]	9,510 [24.51]	863 [2.26]	126 [0.35]	103 [0.28]	91 [0.24]	104 [0.27]	116 [0.30]	
8만원	4 [0.08]	17,308 [46.83]	11,837 [24.64]	1,078 [2.27]	156 [0.35]	129 [0.28]	113 [0.25]	130 [0.27]	145 [0.30]	
7만원	41 [0.77]	22,007 [50.02]	14,128 [24.76]	1,292 [2.29]	186 [0.35]	154 [0.28]	135 [0.25]	156 [0.27]	173 [0.30]	
6만원	249 [3.45]	26,885 [51.38]	16,381 [24.88]	1,507 [2.30]	216 [0.35]	179 [0.28]	157 [0.25]	182 [0.27]	202 [0.30]	
5만원	730 [6.33]	31,821 [52.21]	18,591 [24.99]	1,720 [2.30]	246 [0.35]	205 [0.28]	179 [0.25]	207 [0.27]	230 [0.30]	
4만원	1,524 [9.57]	36,768 [52.81]	20,753 [25.09]	1,930 [2.32]	275 [0.35]	230 [0.28]	202 [0.25]	233 [0.27]	259 [0.30]	
3만원	2,650 [13.13]	41,718 [53.22]	22,867 [25.20]	2,136 [2.33]	304 [0.35]	255 [0.28]	224 [0.25]	259 [0.27]	287 [0.30]	
2만원	4,129 [16.80]	46,657 [53.51]	24,944 [25.29]	2,338 [2.34]	333 [0.35]	280 [0.28]	246 [0.25]	284 [0.27]	315 [0.30]	
1만원	5,978 [20.61]	51,580 [53.72]	26,982 [25.35]	2,537 [2.37]	362 [0.35]	306 [0.28]	268 [0.25]	310 [0.27]	343 [0.30]	
공제없음	8,172 [22.89]	56,470 [53.76]	28,985 [25.41]	2,731 [2.38]	391 [0.35]	331 [0.28]	289 [0.25]	335 [0.27]	370 [0.30]	

주: 대괄호(D) 안의 숫자는 세부담이 증가한 인원의 비율(%)

[그림 III-13] 급여구간별 세부담 증가(표준세액공제 대안)

(단위: 원)



- <표 III-17>과 [그림 III-14]는 표준세액공제 대안에 따른 가구형태별 추가 세부담 변화에 대한 결과를 제시
  - 면세자 비중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표준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추가 세부담은 1인가구와 2인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가능
    - 특히, 1인가구의 추가 세부담은 가장 뚜렷한 증가를 보여주며, 표준세액공제 1만원 증가에 따라 1인당 추가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약 1,706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

<표 III-17> 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가(표준세액공제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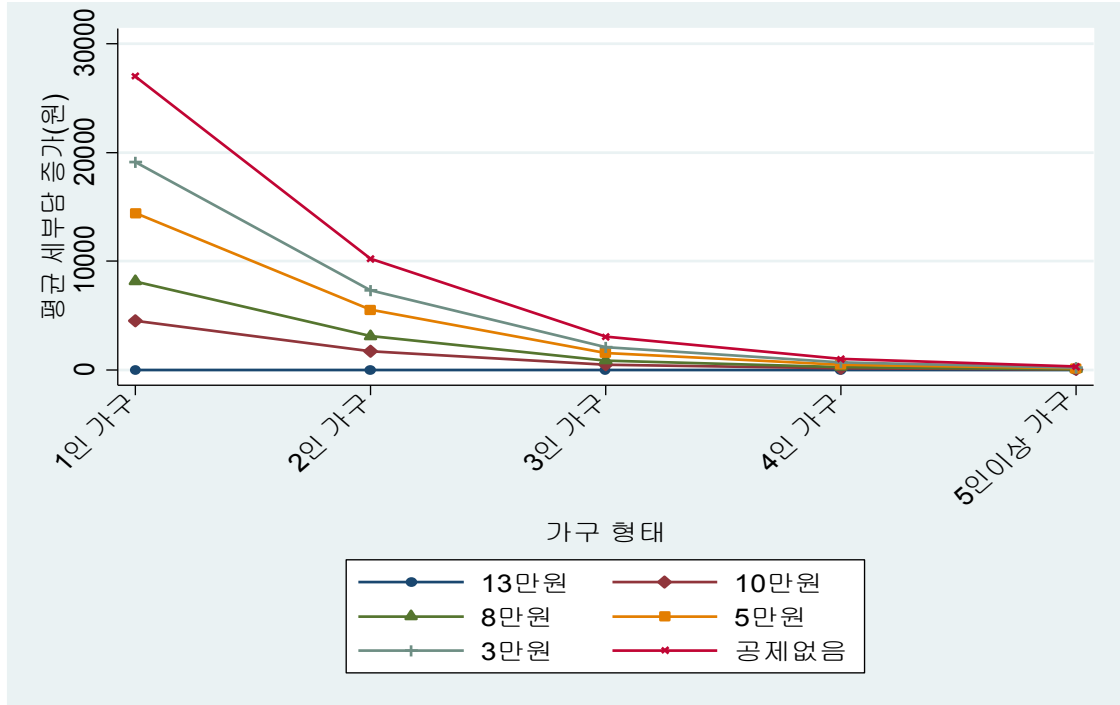
(단위: 원, %)

표준세액 공제액	가구형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12만원	1,382 [14.34]	540 [5.60]	153 [1.57]	48 [0.49]	13 [0.14]
11만원	2,878 [15.88]	1,111 [6.16]	311 [1.72]	97 [0.54]	27 [0.15]
10만원	4,508 [17.27]	1,732 [6.65]	484 [1.91]	152 [0.58]	42 [0.17]
9만원	6,280 [18.75]	2,402 [7.30]	675 [2.07]	210 [0.64]	58 [0.18]
8만원	8,158 [20.17]	3,120 [7.82]	879 [2.24]	275 [0.71]	76 [0.20]
7만원	10,149 [21.36]	3,880 [8.38]	1,097 [2.40]	346 [0.76]	97 [0.23]
6만원	12,242 [22.72]	4,681 [8.89]	1,329 [2.59]	420 [0.82]	119 [0.25]
5만원	14,436 [23.98]	5,527 [9.49]	1,576 [2.79]	500 [0.88]	143 [0.28]
4만원	16,731 [25.30]	6,407 [10.00]	1,841 [3.01]	586 [0.96]	170 [0.31]
3만원	19,130 [26.71]	7,324 [10.45]	2,123 [3.24]	680 [1.04]	200 [0.33]
2만원	21,641 [28.12]	8,271 [10.86]	2,424 [3.44]	783 [1.15]	232 [0.35]
1만원	24,271 [29.57]	9,249 [11.20]	2,740 [3.58]	894 [1.23]	266 [0.38]
공제없음	27,009 [30.46]	10,237 [11.27]	3,062 [3.64]	1,013 [1.30]	303 [0.40]

주: 대괄호([ ]) 안의 숫자는 세부담이 증가한 인원의 비율(%)

[그림 III-14] 가구형태와 세부담 증가(표준세액공제 대안)

(단위: 원)



다. 시나리오 2: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

□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고려하고 있는 면세자 축소 대안은 근로소득공제 축소이며, 구체적으로 <표 III-13>에 제시된 5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른 면세자 비중 축소 효과와 세부담 효과를 분석

<표 III-18>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

(단위: %)

대안	근로소득공제 공제율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1,500만원	총급여액 1,500~4,500만원	총급여액 4,500만원~1억원	총급여액 1억원초과
현행	70	40	15	5	2
1	65	40	15	5	2
2	60	40	15	5	2
3	65	35	15	5	2
4	60	35	15	5	2
5	60	35	15	5	1

- 자영업자와 달리 근로소득자의 경우 통근비용과 같은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제하여 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근로소득공제임
  -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기준 소득구간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공제혜택을 제공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70%
    -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40%,
    - 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15%
    -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5%
    - 총급여액 1억원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는 1%를 공제
  
-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대안은 소득구간별 공제율이 감소함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이 총급여의 증가에 누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가능
  - 특히, 중·저소득 구간의 근로자들 중 면세점에 위치한 자들의 결정세액이 증가하여 광범위한 소득구간에 걸쳐 기존 면세자들을 과세자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반면,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는 대부분의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면세자 감소로 인한 비용은 상당수의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며, 총세수액도 다른 대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근로소득공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면세자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 근로소득공제 각 대안별 면세자 비중은 약 2.0~5.7%p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예컨대, 대안 3의 경우 1,500만원 이상 개인의 소득공제액은 현행과 비교하여 75만원이 감소한 것(소득세율 6% 적용 시 산출세액은 4.5만원 증가)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면세자 비중은 약 4.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급여구간별로는 전 소득구간에 걸쳐서 면세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5천만원 이하의 소득그룹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과세자로 전환
    - 가구형태별로는 모든 가구형태에서 유사한 비율로 면세자가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1인 가구 면세자 비중 감소 폭이 높음

- 추가 세부담은 각 대안별로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이며, 급여구간과 가구형태에 비해 상당히 누진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대비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은 각 시나리오별로 최소 1.6만원에서 최대 7.3만원에 이룸
  - 이를 2014년 근로자 수 기준 총세수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0.3조원에서 최대 1.2조원가량 세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급여구간별로는 급여구간이 높아짐에 따라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 또한 누진적으로 증가하여, 대체로 고소득구간의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
  - 가구형태별로는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이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1인가구의 평균 추가 세부담의 증가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요컨대, 근로소득공제 대안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소득그룹에 걸쳐 근로자들을 과세자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모든 근로자의 결정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과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특히, 근로소득공제 축소안은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면세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소득구간(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을 과세자로 전환시키는 데 효과적
  - 반면,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인해 총세수액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1인당 세부담은 상당히 누진적
    - 특히, 면세자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적은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단점이 존재
  - 한편 근로소득공제 축소안은 면세자 비중 감소에 대한 비용이 특정 집단에 쏠리는 현상이 적고, 대체로 전 소득계층에 걸쳐 고루 세부담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효과 또한 존재

### 1) 면세자 비중 분석

- 근로소득공제 대안별 면세자 비중 변화는 <표 III-21>와 [그림 III-15]에 제시
  - 근로소득공제 대안별 면세자 비중은 현행 대비 약 2.0~5.7%p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총급여 1,500만원인 근로자 기준 근로소득공제 대안별로 각각 25만, 50만, 75만, 100만원(대안 4와 대안5)씩 소득공제액이 감소함에 따라 산출세액은(소득세율 6% 적용 시) 약 1.5만원에서 6만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는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면세자 비중 감소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
- 대안 4와 대안 5는 1억원 이상 급여구간의 공제율의 차이만 존재하여 두 대안이 면세자 비중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 반면, 추가 세부담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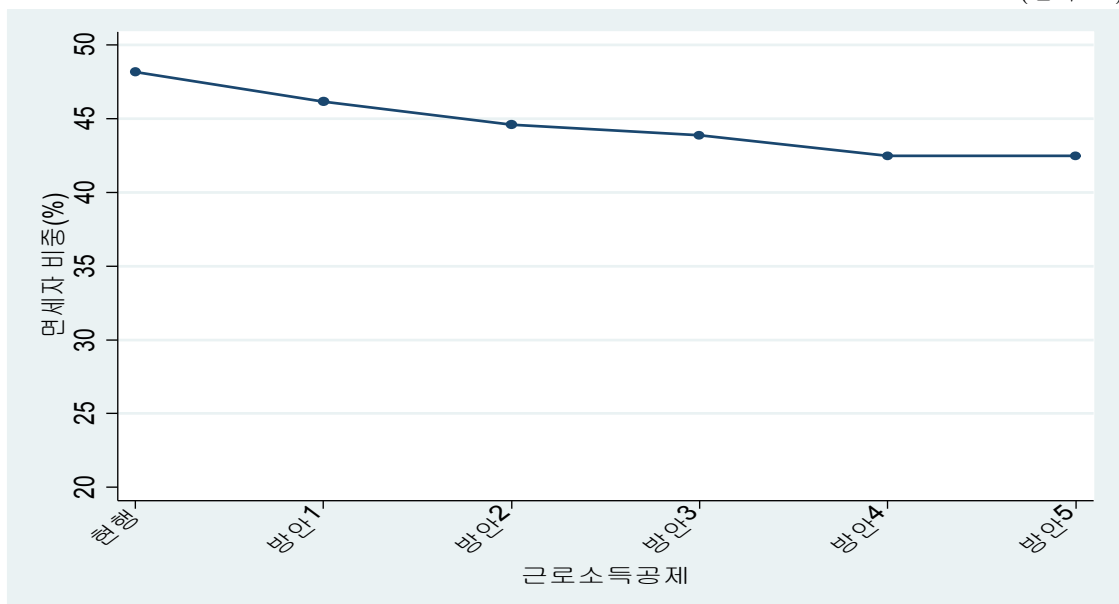
<표 III-19> 근로소득공제 대안별 면세자 비중 변화

(단위: %, %p)

대안	면세자 비중	현행대비 면세자 감소비율
현행	48.18	-
1	46.17	-2.00
2	44.61	-3.56
3	43.87	-4.31
4	42.48	-5.69
5	42.48	-5.69

[그림 III-15] 근로소득공제 대안별 면세자 비중

(단위: %)



<표 III-20> 급여구간별(총급여기준) 면세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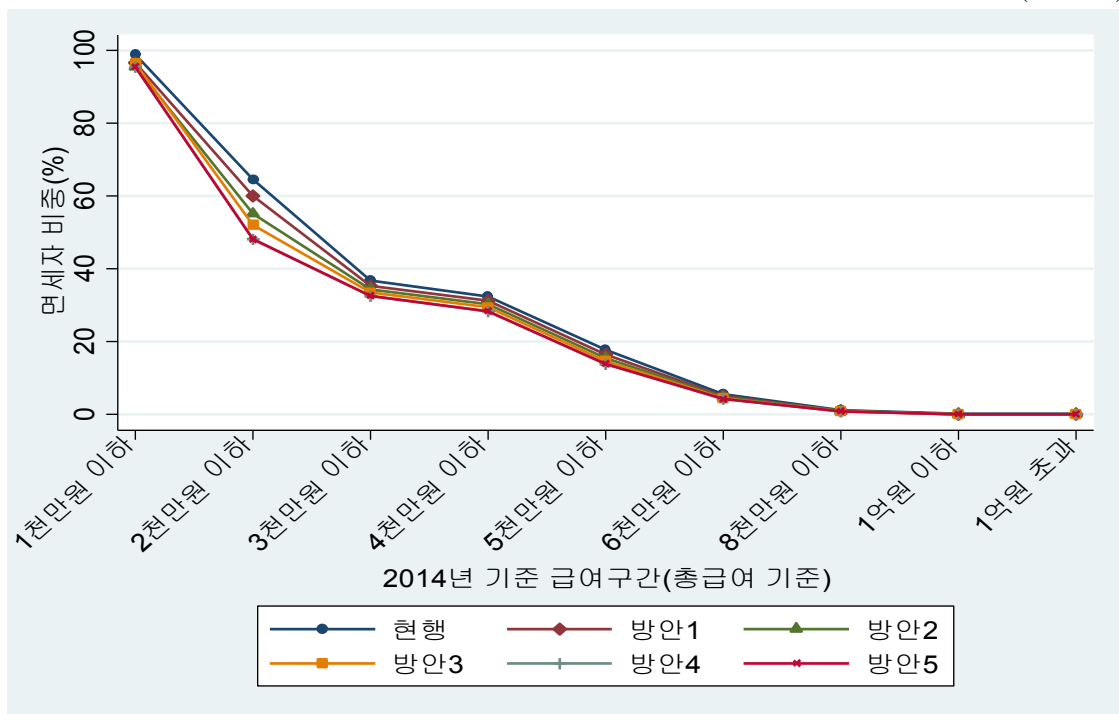
(단위: %, %p)

근로소득 공제대안	2014년 기준 급여구간별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현행	98.98 (-)	64.55 (-)	36.86 (-)	32.44 (-)	17.84 (-)	5.64 (-)	1.22 (-)	0.15 (-)	0.15 (-)
1	96.65 (-2.33)	60.08 (-4.47)	35.30 (-1.56)	31.23 (-1.21)	16.48 (-1.37)	5.07 (-0.57)	1.07 (-0.15)	0.11 (-0.04)	0.12 (-0.03)
2	95.63 (-3.35)	55.22 (-9.33)	34.43 (-2.43)	30.33 (-2.11)	15.56 (-2.28)	4.78 (-0.86)	1.00 (-0.21)	0.10 (-0.04)	0.10 (-0.04)
3	96.51 (-2.47)	52.12 (-12.43)	33.54 (-3.32)	29.45 (-3.00)	14.71 (-3.13)	4.51 (-1.13)	0.93 (-0.29)	0.10 (-0.05)	0.10 (-0.05)
4	95.56 (-3.42)	48.16 (-16.39)	32.59 (-4.27)	28.42 (-4.02)	13.90 (-3.95)	4.24 (-1.40)	0.86 (-0.36)	0.09 (-0.06)	0.09 (-0.05)
5	95.56 (-3.42)	48.16 (-16.39)	32.59 (-4.27)	28.42 (-4.02)	13.90 (-3.95)	4.24 (-1.40)	0.86 (-0.36)	0.09 (-0.06)	0.09 (-0.0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현행 제도와의 비중 차이(%p)를 의미

[그림 III-16]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근로소득공제 대안)

(단위: %)



□ <표 III-22>와 [그림 III-16]은 근로소득공제 대안에 따라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제시

- 먼저 우리는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은 상당히 광범위한 소득구간(5천만원 이하의 소득그룹)에 걸쳐 면세자 비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 가능
  - 이 중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소득그룹에서 면세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를 다른 대안과 비교하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소득그룹에서 면세자 비중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
-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면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소득구간인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소득그룹의 면세자 비중이 유의미하게 변화했다는 점이 특징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가 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실질적으로 과세를 구현해야 할 소득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을 과세자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사료

□ <표 III-21>과 [그림 III-17]은 근로소득공제 대안에 따라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 변화에 대한 결과를 제시

<표 III-21>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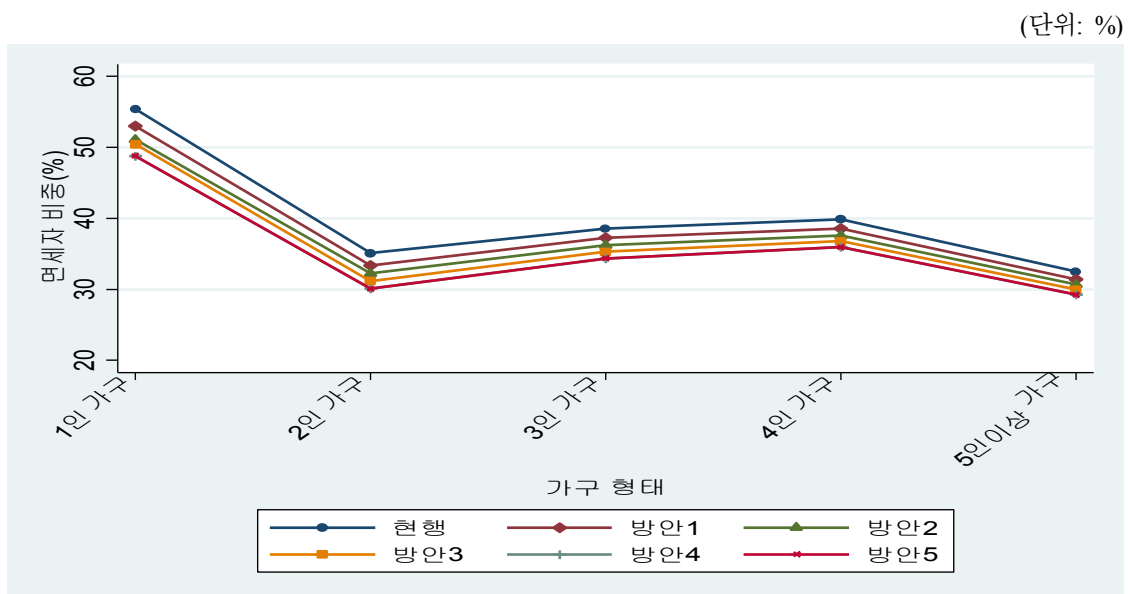
(단위: %, %p)

근로소득 공제대안	가구형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현행	55.39 (-)	35.11 (-)	38.54 (-)	39.88 (-)	32.49 (-)
1	53.02 (-2.37)	33.37 (-1.74)	37.23 (-1.31)	38.54 (-1.35)	31.41 (-1.08)
2	51.11 (-4.29)	32.25 (-2.86)	36.22 (-2.33)	37.58 (-2.30)	30.68 (-1.81)
3	50.46 (-4.94)	31.18 (-3.93)	35.30 (-3.24)	36.80 (-3.09)	29.96 (-2.53)
4	48.80 (-6.59)	30.09 (-5.02)	34.33 (-4.22)	35.94 (-3.94)	29.23 (-3.26)
5	48.80 (-6.59)	30.09 (-5.02)	34.33 (-4.22)	35.94 (-3.94)	29.23 (-3.2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현행 제도와의 비중 차이(%p)

-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로 인해 면세자 비중이 전 가구형 태에 걸쳐 상당히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면세자 비중 감소 폭이 더욱 작아지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1%p 내외로 매우 미약한 수준
- 이러한 현상은 면세자 비중의 감소가 1인가구에 집중되어 있던 표준세액공제 대안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

[그림 III-17] 가구형태와 면세자 비중(근로소득공제 대안)



## 2) 추가 세부담 분석

-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산출세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추가 세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III-22> 과 [그림 III-18]에 제시
  - <표 III-22>를 보면 각 대안별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은 최소 1.6만원에서 7.3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표준세액공제 폐지 시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이 1.8만원 정도라는 것 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
  -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을 토대로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총세수 증가액을 계산 하면, 대안별로 각각 0.3조, 0.6조, 0.8조, 1.1조,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한편, 1인당 추가 세부담의 분포를 살펴보면, 특정 개인에게 과도하게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수의 근로자가 그 비용을 고루 분담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안 5를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인한 개인의 추가 세부담은 최대 38만원 수준이며, 50% 이상의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
  - 여기서 대안 5는 1억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추가적으로 1% 감소하였기 때문에 최댓값이 매우 높은 극단치가 나타남

〈표 III-22〉 근로소득공제 대안별 세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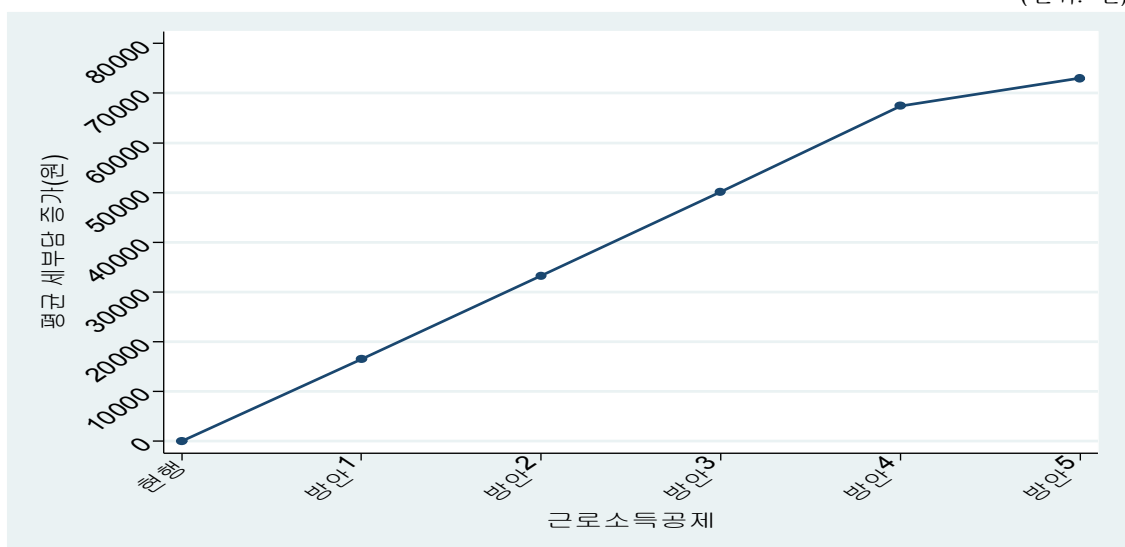
(단위: 원, %)

근로소득 공제대안	세부담 증가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상위 90% 값	상위 75% 값	중앙값	최솟값
1	16,483 [53.77]	21,547	95,232	37,500	37,500	6,750	0
2	33,253 [55.33]	43,077	190,208	75,000	75,000	13,500	0
3	50,136 [56.08]	64,689	285,184	112,500	112,500	20,250	0
4	67,432 [57.46]	86,196	380,160	150,000	150,000	27,000	0
5	73,019 [57.46]	140,732	24,900,000	150,000	150,000	27,000	0

주: 대괄호([ ]) 안의 숫자는 세부담이 증가한 인원의 비율(%)

[그림 III-18] 근로소득공제 대안별 세부담 증가

(단위: 원)



□ <표 III-23>과 [그림 III-19]는 근로소득공제 대안에 따른 급여구간별 추가 세부담 변화에 대한 결과를 제시

-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은 급여의 증가에 따라 상당히 누진적인 형태를 보이며, 대체로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은 최대 500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3.1만~12.6만원 수준에 이르며,
  - 최고 소득구간인 1억원 초과인 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 세부담은 7.4만에서 46.4만원에 이름
- 본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공제 대안별·급여구간별 분포에 대한 기초통계치를 살펴보면, 개인의 추가 세부담은 매우 조밀하게 분포하여 있고 극단치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예컨대, 대안 5를 제외하고 세부담이 가장 높은 대안 4의 1억원 초과인 소득구간을 보면, 최댓값이 38.0만원 수준에 반면에 중앙값이 35.0만원에 이름
  - 이는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인한 추가 세부담이 개인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추가 세부담이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고루 분배된다는 것을 의미
- 이러한 결과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안이 면세자 비중 감소 및 총세수액의 증가와 더불어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표 III-23> 급여구간별(총급여기준) 세부담 증가(근로소득공제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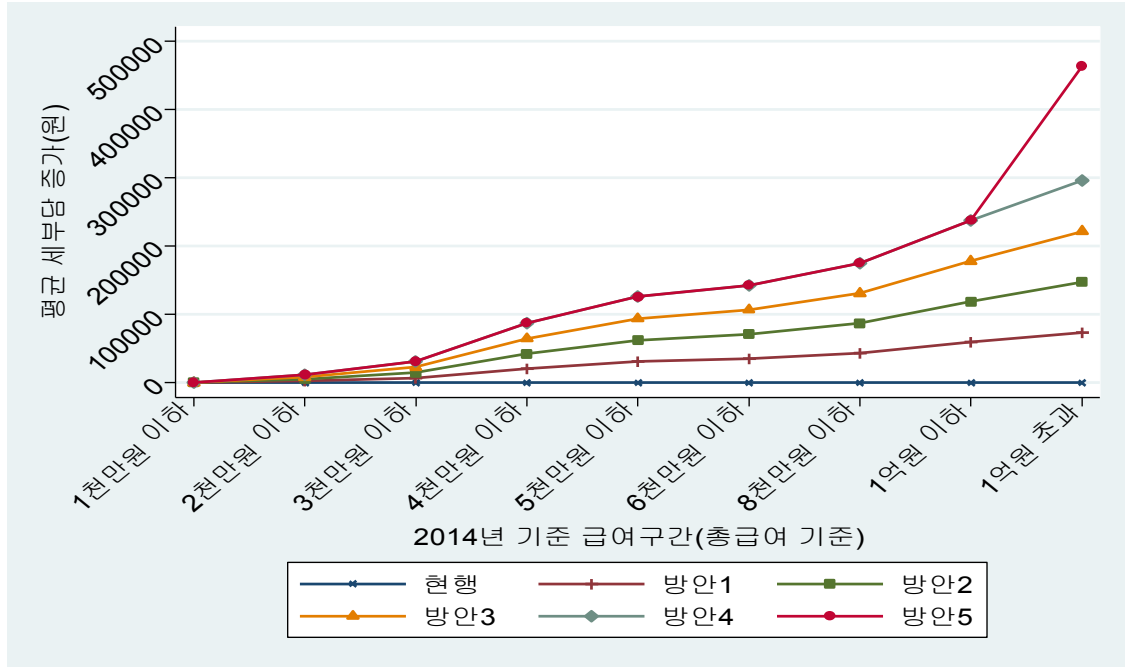
(단위: 원, %)

근로소득 공제대안	2014년 기준 급여구간별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	164 [3.35]	2,568 [39.92]	7,169 [64.70]	20,893 [68.76]	30,960 [83.52]	35,522 [94.92]	43,426 [98.92]	59,373 [99.87]	73,799 [98.32]
2	422 [4.37]	5,407 [44.77]	14,759 [65.57]	42,446 [69.66]	62,292 [84.43]	71,172 [95.21]	87,152 [98.99]	118,805 [99.87]	147,735 [98.34]
3	238 [3.49]	8,300 [47.88]	22,790 [66.46]	64,655 [70.54]	93,961 [85.28]	106,921 [95.48]	131,156 [99.06]	178,283 [99.88]	221,805 [98.34]
4	503 [4.44]	11,672 [51.84]	31,289 [67.41]	87,510 [71.57]	125,970 [86.09]	142,775 [95.75]	175,449 [99.13]	237,807 [99.89]	296,001 [98.34]
5	503 [4.44]	11,672 [51.84]	31,289 [67.41]	87,510 [71.57]	125,970 [86.09]	142,775 [95.75]	175,449 [99.13]	237,807 [99.89]	463,743 [98.35]

주: 대괄호 ([ ]) 안의 숫자는 세부담이 증가한 인원의 비율(%)

[그림 III-19] 급여구간별 세부담 증가(근로소득공제 대안)

(단위: 원)



- <표 III-24>와 [그림 III-20]은 근로소득공제 대안에 따른 가구형태별 추가 세부담 변화에 대한 결과를 제시
  - 가구형태별로 1인당 평균 세부담은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4인 가구의 세부담 증가 폭은 상당히 유사
    - 반면, 1인가구의 평균 추가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그 증가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 5인 이상 가구는 다시 세부담 증가 폭이 상승
  - 이러한 결과는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이 특정 가구형태에 세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전 가구에 걸쳐 세부담을 부담케 하면서 면세자를 축소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
    - 이는 1인가구 대부분의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난 표준세액공제 대안과는 대조적

<표 III-24> 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가(근로소득공제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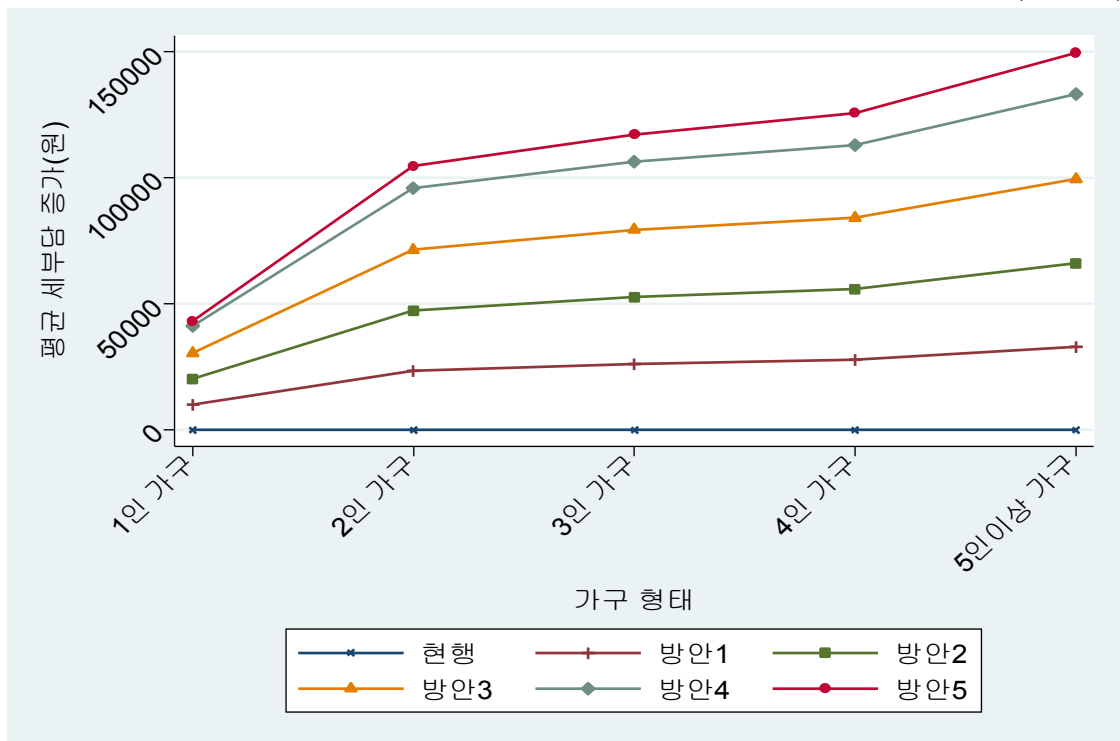
(단위: 원, %)

근로소득 공제대안	가구형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1	10,014 [46.88]	23,517 [66.63]	26,169 [62.77]	27,772 [61.46]	32,888 [68.59]
2	20,299 [48.80]	47,355 [67.75]	52,650 [63.78]	55,862 [62.42]	66,086 [69.32]
3	30,588 [49.45]	71,465 [68.82]	79,429 [64.70]	84,233 [63.20]	99,574 [70.04]
4	41,349 [51.10]	95,914 [69.91]	106,530 [65.67]	112,905 [64.06]	133,379 [70.77]
5	43,232 [51.10]	104,673 [69.91]	117,236 [65.67]	125,725 [64.06]	149,697 [70.77]

주: 대괄호 ([ ]) 안의 숫자는 세부담이 증가한 인원의 비율(%)

[그림 III-20] 가구형태와 세부담 증가(근로소득공제 대안)

(단위: 원)



### 라. 시나리오 3: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면세자 축소 대안은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이며, 구체적으로 <표 III-25>에 제시된 9가지의 대안에 따른 면세자 비중 축소 효과와 세부담 효과를 분석
  - 세액공제 종합한도는 먼저 일정 급여 이상, 즉 총급여 2,000만, 2,500만, 3,0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
  -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한도는 산출세액의 일정률, 즉 85%, 90%, 95%로 설정
  - 세액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세액감면항목과 전 세액공제 항목을 대상으로 하나, 정책적으로 뚜렷한 목적이 있고 면세자 축소에 기여하는 바가 적은 항목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

<표 III-25>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

대안	대상자	공제한도	공제한도 적용대상
1	총급여액 2,000만원 이상	산출세액의 95%	세액공제 중 다음 항목 제외 • 연금계좌공제 • 기부금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혹은  • 외국납부세액공제
2		산출세액의 90%	
3		산출세액의 85%	
4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산출세액의 95%	
5		산출세액의 90%	
6		산출세액의 85%	
7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산출세액의 95%	
8		산출세액의 90%	
9		산출세액의 85%	

-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기존 공제항목의 정책적 의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면세자 축소에 효과적인 세액공제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
  - 이러한 점에서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안, 혹은 외국납부세액공제만을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안, 두 가지에 대한 고려가 가능

-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안의 결과는 면세자 비중과 추가 세부담에 있어서 미미한 차이가 존재하나 동일한 함의를 지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두 번째 안에 대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
-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표 III-26>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항목과 국세통계연보상의 총세액공제액을 정리
- 총공제세액으로 볼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세액공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세자 증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외납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공제액이 적고 뚜렷한 정책적 목표가 있으므로 세액공제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 반면,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출산장려라는 뚜렷한 정책적 목표가 있으며 공제액 또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도 적용대상에 포함할 때 문제의 여지는 있음
  - 하지만 2014년부터 시행된 자녀장려세제<sup>7)</sup>와의 이중 혜택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도 적용으로 인해 자녀세액공제의 일부를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그 규모나 개인의 세부담 면에서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를 종합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적 목표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 <표 III-27>은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내에서 항목별로 면세자 비중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해 보기 위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제항목별 면세자 비중 변화에 대한 결과를 제시
- 부연하면, 제시된 표는 각 대안별로 모든 세액공제항목을 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을 때와, 전체 세액공제항목 중 하나의 항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면세자 비중의 변화를 제시
    - 따라서 제외된 세액공제항목이 없는 경우의 면세자 비중과 비교하여, 개별 항목을 제외하였을 때 면세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면, 이는 제외된 세액공제항목이 면세자 비중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7) 현행 자녀장려세제는 총급여 4,000만원이하의 근로자에게 자녀 1명당 5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자세한 요건 및 자녀장려금 산정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31 참조

- 이를 통해 보건대, 면세자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액공제항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 따라서 면세자 축소에 대한 효과성 면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상기한 5가지 세액공제항목은 공제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반면,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표준세액공제, 월세액공제는 면세자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6〉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적용대상

(단위: 백만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항목		2014년 귀속 총공제세액	공제한도 적용대상 포함여부		
			포함	불포함	
세액감면	소득세법 세액감면금액	446	○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금액	17,003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취업청년	226,494	○		
	조세조약상 감면	2,789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5,406,693	○		
	자녀세액공제	956,981	○		
	연금계좌	789,826		○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836,419	○	
		의료비	857,473	○	
		교육비	1,117,846	○	
		기부금	683,661		○
		표준세액공제	469,994	○	
	납세조합공제	7,804	○		
	주택차입금	1,770	○		
	외국납부	104,445		○	
	월세액	41,492	○		

주: 2014년 귀속 총공제세액은 2015년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정리

〈표 III -27〉 세액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주요 항목별 면세자 비중 변화

(단위: %)

대안	대상자 (총급여액)	공제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세액공제 항목									
			없음	근로소득	자녀세액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	월세액
1	2,000만원 이상	95%	36.67	48.17	43.46	37.09	45.90	42.39	41.41	38.36	37.13	37.03
2		90%	36.67	48.16	43.23	36.84	43.91	41.91	40.98	37.94	37.10	37.01
3		85%	36.67	48.14	42.79	36.76	42.22	41.46	40.60	37.71	37.05	36.99
4	2,500만원 이상	95%	39.93	48.17	45.40	40.22	46.81	44.28	43.93	41.18	40.12	40.18
5		90%	39.93	48.16	45.17	40.03	44.88	43.87	43.52	40.84	40.08	40.16
6		85%	39.93	48.14	44.73	39.98	43.28	43.50	43.18	40.66	40.04	40.15
7	3,000만원 이상	95%	42.50	48.17	46.67	42.69	47.34	45.72	45.67	43.39	42.56	42.64
8		90%	42.50	48.16	46.44	42.55	45.50	45.39	45.34	43.13	42.53	42.63
9		85%	42.50	48.14	46.01	42.52	44.15	45.09	45.04	42.99	42.52	42.62

-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은 구성상 특정 소득구간(중·상위소득구간)의 결정 세액 및 면세자 비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먼저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은 세액공제 한도 적용 대상자를 급여구간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특정 급여 이상의 근로소득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 또한 산출세액의 일정률을 한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의 비중이 적은 최상위 고소득자의 세액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
  - 이에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은 중·상위 소득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의 결정세액과 면세자 비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면세자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면세자 비중은 적용 대상자의 소득구간 설정 범위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제한도에 따른 면세자의 차이는 약 1%p 내외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적용 대상자의 급여수준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5%p 내외, 2,500만원 이상인 경우 7%p 내외,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p 내외로 면세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일한 급여구간 대상자 중에서 공제한도가 5% 감소할 때에는 면세자 비중이 평균적으로 약 0.4%가량 차이가 존재
    - 급여구간별로 보았을 때, 면세자 비중은 2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 가장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 가구형태별로는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면세자 비중이 더욱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추가 세부담은 적용 대상자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차이가 적으나, 공제한도 설정에 따라 뚜렷한 세부담 차이가 존재
    - 현행 대비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은 공제한도가 95%인 경우 약 2.5~3.7천원 수준이며, 90%인 경우에는 5.9~8.5천원, 85%의 경우 9.9~13.9천원 수준
    - 반면, 동일한 공제한도일 경우 적용대상자별 세부담의 차이는 약 1.2~3천원 수준에 불과

- 이러한 세부담을 2014년 기준 총세수액으로 환산하면,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으로 인해 최소 425억원에서 최대 2,318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급여구간별로 보았을 때, 1인당 추가 세부담은 대체로 넓은 범위로 중·상위 소득자들에게 전가되며, 특히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 가구형태별로는 1인당 추가 세부담이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하는 뚜렷한 선형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요컨대,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은 중·상위의 특정 소득구간을 타깃팅으로 하여 면세자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로 중위 소득자와 다인가구에 과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안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소득구간의 근로자들을 과세자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특히 세액공제 전환 이후 면세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소득구간(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을 과세자로 전환시키는 데 효과적
- 또한, 총세수액의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 가능
- 반면, 추가 세부담의 측면에서 주로 중위소득에 세부담이 전가되는 측면이 존재하며, 또한 다인가구의 세부담 증가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1) 면세자 비중 분석

□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면세자 비중 변화는 <표 III-28>과 [그림 III-21]에 제시

-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면세자 비중은 적용 대상자의 급여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약 5~10%p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적용 대상자 급여구간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약 5%p 내외, 2,500만원 이상인 경우 7%p 내외,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p 내외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반면, 면세자 비중은 공제한도의 차이에 따라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동일한 적용대상자 급여수준에서 공제한도가 5% 감소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면세자 비중이 약 0.4%p가량만 감소

□ <표 III-29>와 [그림 III-22]는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에 따라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제시

-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대안은 중·상위 소득구간에 걸쳐 면세자 비중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 면세자 비중이 급격히 축소할 것으로 예상
  - 예컨대, 총급여 2천만원 이상인 자를 세액공제 한도 적용대상자로 설정하였을 때에는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소득그룹의 면세자의 비중이 현행 30%대에서 한 자릿수대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 가능
- 이처럼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은 중위 소득구간에서 면세자 비중을 낮추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이러한 결과는 특히 세액공제 이후 면세자로 전환된 소득그룹인 중위소득만을 타깃으로 하여 과세자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와 더불어 2,000만원 미만 저소득구간의 근로소득자들은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또한 특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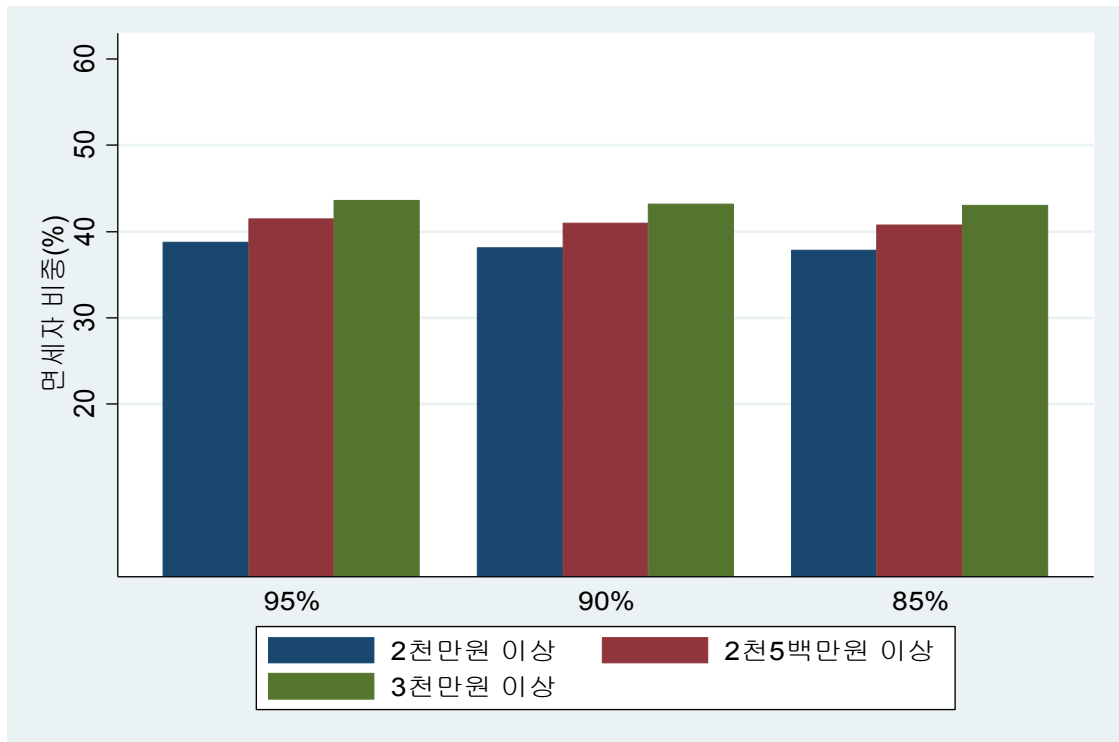
<표 III-28>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면세자 비중 변화

(단위: %, %p)

대안	대상자	공제 한도	면세자 비중	현행대비 면세자 감소비율
현행			48.18	
1	총급여액 2,000만원 이상	95	38.76	-9.42
2		90	38.13	-10.05
3		85	37.83	-10.35
4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95	41.46	-6.71
5		90	40.96	-7.21
6		85	40.73	-7.44
7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95	43.59	-4.59
8		90	43.21	-4.97
9		85	43.04	-5.14

[그림 III-21]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면세자 비중

(단위: %)



〈표 III-29〉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제도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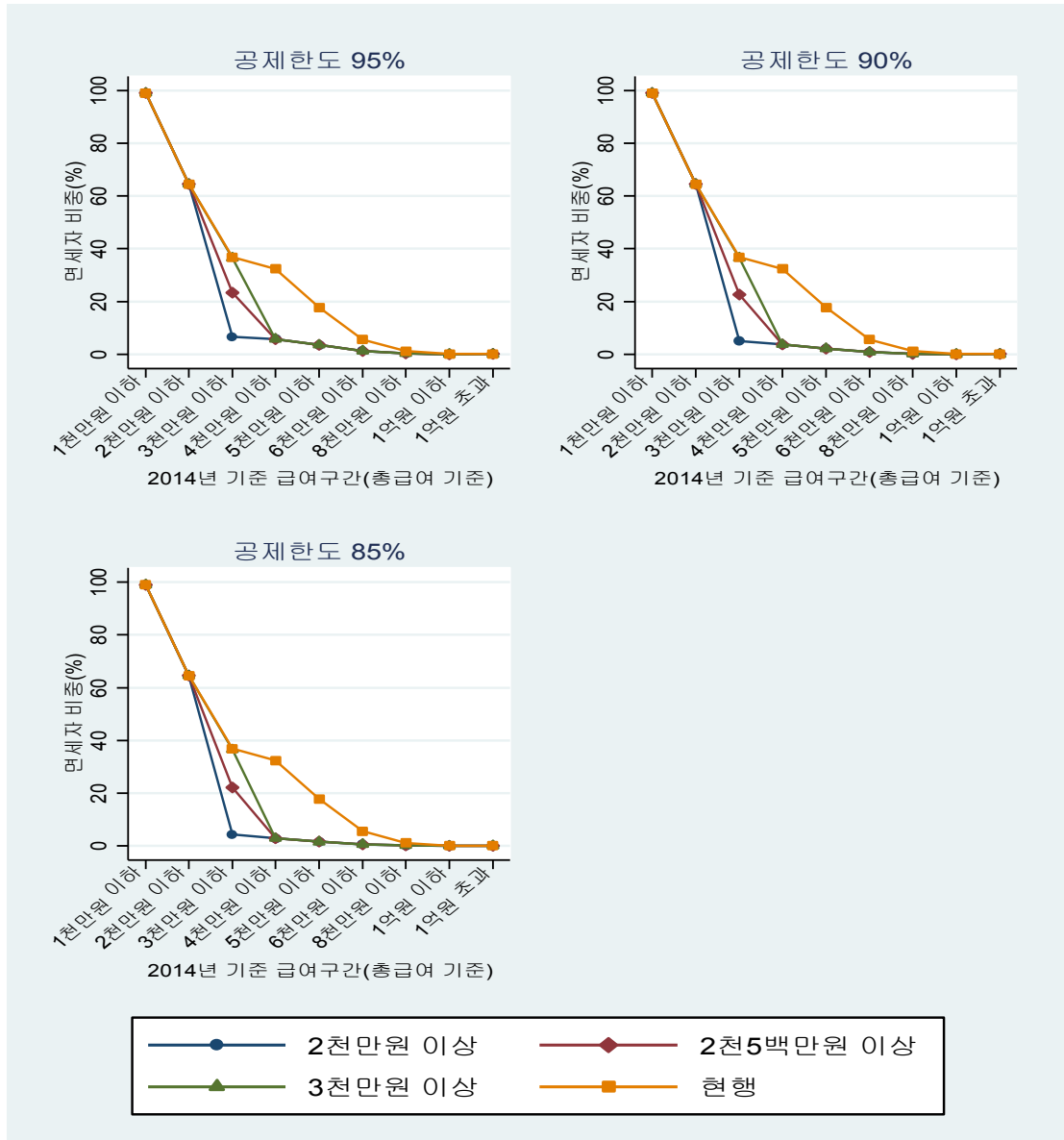
(단위: %, %p)

대안	대상자	공제 한도	2014년 기준 급여구간(총급여기준)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현행			98.98 (-)	64.55 (-)	36.86 (-)	32.44 (-)	17.84 (-)	5.64 (-)	1.22 (-)	0.15 (-)	0.15	
1	총급여액 2,000만원 이상	95	98.98 (0)	64.49 (-0.06)	6.67 (-30.19)	5.83 (-26.62)	3.63 (-14.21)	1.37 (-4.27)	0.37 (-0.84)	0.08 (-0.07)	0.13 (-0.01)	
2		90	98.98 (0)	64.49 (-0.06)	5.14 (-31.72)	3.78 (-28.66)	2.26 (-15.59)	0.95 (-4.69)	0.29 (-0.93)	0.06 (-0.09)	0.13 (-0.02)	
3		85	98.98 (0)	64.49 (-0.07)	4.31 (-32.55)	2.91 (-29.53)	1.63 (-16.21)	0.73 (-4.91)	0.23 (-0.99)	0.05 (-0.10)	0.13 (-0.02)	
4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95	98.98 (0)	64.55 (0)	23.37 (-13.49)	5.83 (-26.62)	3.63 (-14.21)	1.37 (-4.27)	0.37 (-0.84)	0.08 (-0.07)	0.13 (-0.01)	
5		90	98.98 (0)	64.55 (0)	22.63 (-14.23)	3.78 (-28.66)	2.26 (-15.59)	0.95 (-4.69)	0.29 (-0.93)	0.06 (-0.09)	0.13 (-0.02)	
6		85	98.98 (0)	64.55 (0)	22.25 (-14.61)	2.91 (-29.53)	1.63 (-16.21)	0.73 (-4.91)	0.23 (-0.99)	0.05 (-0.10)	0.13 (-0.02)	
7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95	98.98 (0)	64.55 (0)	36.56 (-0.30)	5.83 (-26.62)	3.63 (-14.21)	1.37 (-4.27)	0.37 (-0.84)	0.08 (-0.07)	0.13 (-0.01)	
8		90	98.98 (0)	64.55 (0)	36.55 (-0.31)	3.78 (-28.66)	2.26 (-15.59)	0.95 (-4.69)	0.29 (-0.93)	0.06 (-0.09)	0.13 (-0.02)	
9		85	98.98 (0)	64.55 (0)	36.54 (-0.32)	2.91 (-29.53)	1.63 (-16.21)	0.73 (-4.91)	0.23 (-0.99)	0.05 (-0.10)	0.13 (-0.0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현행제도와와의 비중 차이(%p)

[그림 III-22]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단위: %)



<표 III-30>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단위: %, %p)

대안	대상자	공제 한도	가구형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현행			55.39 (-)	35.11 (-)	38.54 (-)	39.88 (-)	32.49 (-)
1	총급여액 2,000만원 이상	95	51.77 (-3.63)	23.29 (-11.82)	18.30 (-20.25)	15.76 (-24.12)	10.03 (-22.46)
2		90	51.54 (-3.86)	22.31 (-12.80)	17.00 (-21.54)	14.35 (-25.53)	8.52 (-23.97)
3		85	51.42 (-3.97)	21.84 (-13.27)	16.38 (-22.16)	13.70 (-26.18)	7.74 (-24.76)
4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95	53.47 (-1.92)	27.93 (-7.18)	24.00 (-14.55)	20.00 (-19.88)	11.63 (-20.86)
5		90	53.35 (-2.04)	27.22 (-7.89)	22.86 (-15.68)	18.67 (-21.21)	10.14 (-22.35)
6		85	53.30 (-2.10)	26.90 (-8.21)	22.35 (-16.20)	18.06 (-21.82)	9.36 (-23.13)
7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95	54.50 (-0.89)	31.21 (-3.90)	29.05 (-9.49)	24.54 (-15.34)	14.04 (-18.45)
8		90	54.45 (-0.95)	30.75 (-4.36)	28.17 (-10.37)	23.35 (-16.53)	12.62 (-19.88)
9		85	54.42 (-0.97)	30.56 (-4.55)	27.79 (-10.76)	22.84 (-17.05)	11.87 (-2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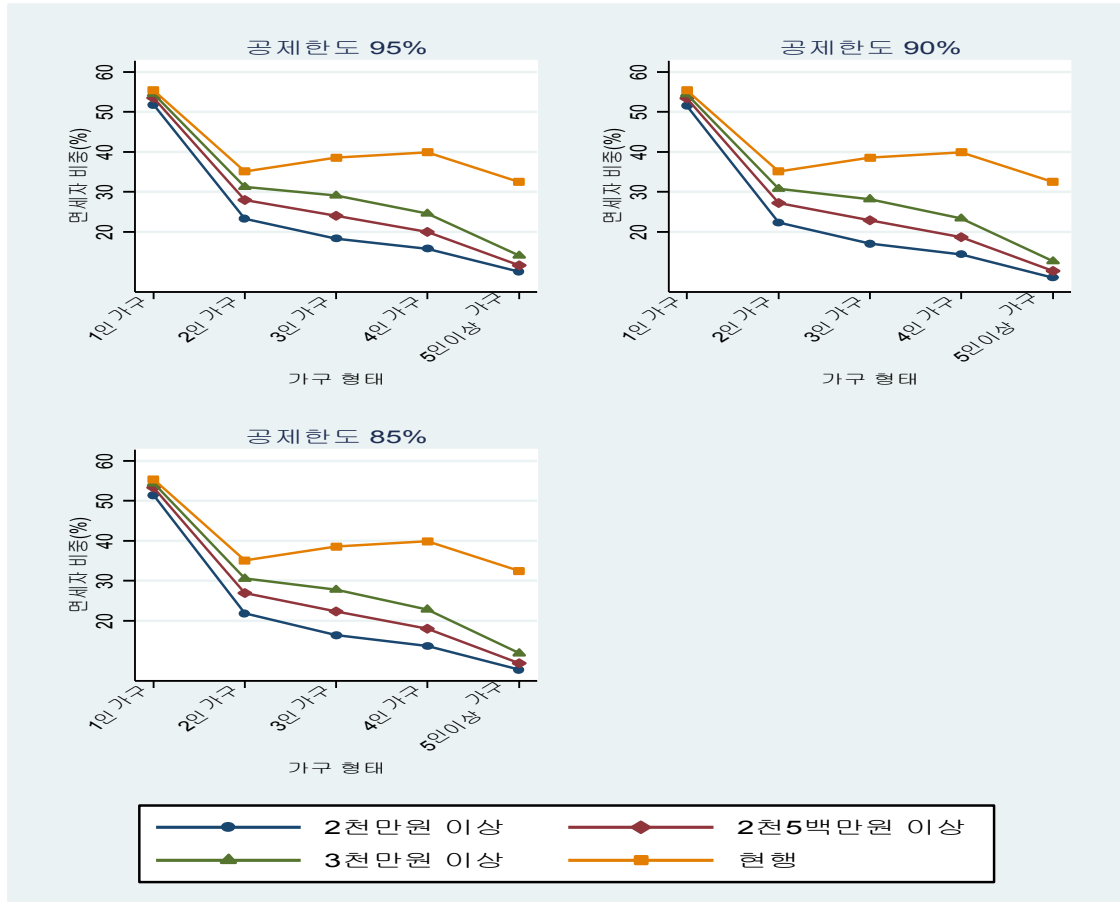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현행 제도와의 비중 차이(%p)

□ <표 III-30>과 [그림 III-23]은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에 따라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 변화에 대한 결과를 제시

- 제시된 표와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결과는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으로 인해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면세자 비중의 감소가 더욱 뚜렷해진다는 점
  - 반면 1인가구의 면세자 비중 감소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1인가구 면세자 비중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던 표준세액공제와는 상반되는 결과
-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라 면세자 비중이 대폭 감소한다는 것은 다가구일수록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는 기존에 다가구에서 지원하는 정책과 상충할 가능성을 내포

[그림 Ⅲ-23]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단위: %)



## 2) 추가 세부담 분석

□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의 시나리오에 따른 추가 세부담 분석 결과는 <표 Ⅲ-31> 과 [그림 Ⅲ-24]에 제시

- 먼저 현행 대비 1인당 추가 세부담은 세액공제 한도 적용 대상자 구분보다는 공제한도 비율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존재
  -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은 공제한도가 95%일 경우 약 2.5~3.7천원 수준이며, 90%인 경우에는 5.9~8.5천원, 85%의 경우 9.9~13.9천원 수준이나,
  - 동일한 공제한도별로 비교해보면 적용대상자별 추가 세부담의 차이는 약 1.2~3천원에 불과한 수준
-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으로 인한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은 표준세액공제나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에 비해 작은 편

- 1인당 추가 세부담은 최소 2.5천원 최대 13.9천원으로 다른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며,
- 이를 토대로 총세수 증가액을 계산하면, 세액공제 종합한도로 인해 최소 425 억원에서 최대 2,318억원가량 세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반면 추가 세부담의 분포를 보았을 때, 세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근로자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특정 개인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가능
- 추가 세부담 증가의 대안별 최댓값을 살펴보면, 특정 개인의 결정세액이 대안별로 245만원에서 736만원가량 증가
- 또한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한 근로자의 비율은 대체로 10% 안팎에 불과
- 이러한 결과는 세액공제 종합한도로 인해 손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이들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추가 세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표 III-31>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세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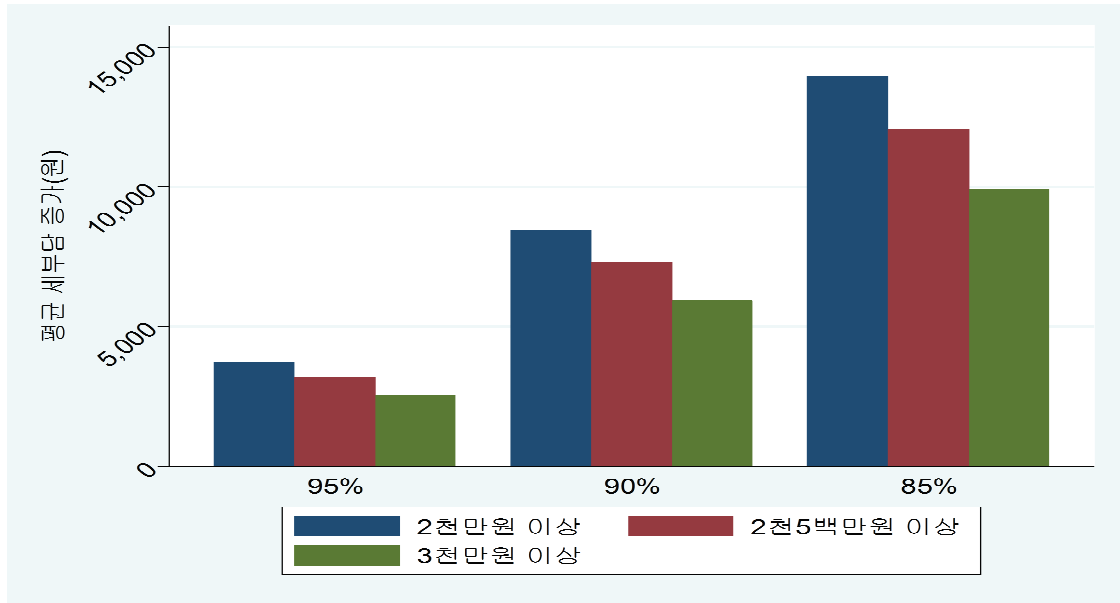
(단위: 원, %)

대안	대상자	공제 한도	세부담 증가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상위 90% 값	상위 75% 값	중앙값	최솟값
1	총급여액 2,000만원 이상	95%	3,741 [10.02]	14,660	2,454,004	302	0	0	0
2		90%	8,468 [11.47]	31,147	4,908,012	24,242	0	0	0
3		85%	13,941 [12.84]	48,824	7,362,016	49,112	0	0	0
4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95%	3,194 [7.17]	14,357	2,454,004	0	0	0	0
5		90%	7,303 [8.28]	30,592	4,908,012	0	0	0	0
6		85%	12,078 [9.20]	48,049	7,362,016	0	0	0	0
7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95%	2,556 [4.93]	13,705	2,454,004	0	0	0	0
8		90%	5,931 [5.80]	29,345	4,908,012	0	0	0	0
9		85%	9,901 [6.51]	46,238	7,362,016	0	0	0	0

주: 대괄호([ ]) 안의 숫자는 세부담이 증가한 인원의 비율(%)

[그림 III-24]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세부담 증가

(단위: 원)



<표 III-32> 급여구간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단위: 원, %)

대안	대상자	공제 한도	2014년 기준 급여구간별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	총급여액 2,000만원 이상	95%	7,444 [31.82]	12,037 [28.27]	9,596 [15.45]	4,277 [4.81]	1,315 [0.97]	240 [0.09]	162 [0.08]
2		90%	15,940 [35.45]	26,876 [32.52]	22,837 [18.68]	10,714 [6.17]	3,386 [1.35]	620 [0.12]	390 [0.10]
3		85%	25,370 [39.55]	43,655 [35.67]	38,533 [21.44]	18,888 [7.64]	6,187 [1.75]	1,147 [0.17]	729 [0.11]
4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95%	4,063 [14.25]	12,037 [28.27]	9,596 [15.45]	4,277 [4.81]	1,315 [0.97]	240 [0.09]	162 [0.08]
5		90%	8,736 [15.78]	26,876 [32.52]	22,837 [18.68]	10,714 [6.17]	3,386 [1.35]	620 [0.12]	390 [0.10]
6		85%	13,859 [17.07]	43,655 [35.67]	38,533 [21.44]	18,888 [7.64]	6,187 [1.75]	1,147 [0.17]	729 [0.11]
7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95%	- [0.31]	12,037 [28.27]	9,596 [15.45]	4,277 [4.81]	1,315 [0.97]	240 [0.09]	162 [0.08]
8		90%	- [0.35]	26,876 [32.52]	22,837 [18.68]	10,714 [6.17]	3,386 [1.35]	620 [0.12]	390 [0.10]
9		85%	- [0.38]	43,655 [35.67]	38,533 [21.44]	18,888 [7.64]	6,187 [1.75]	1,147 [0.17]	729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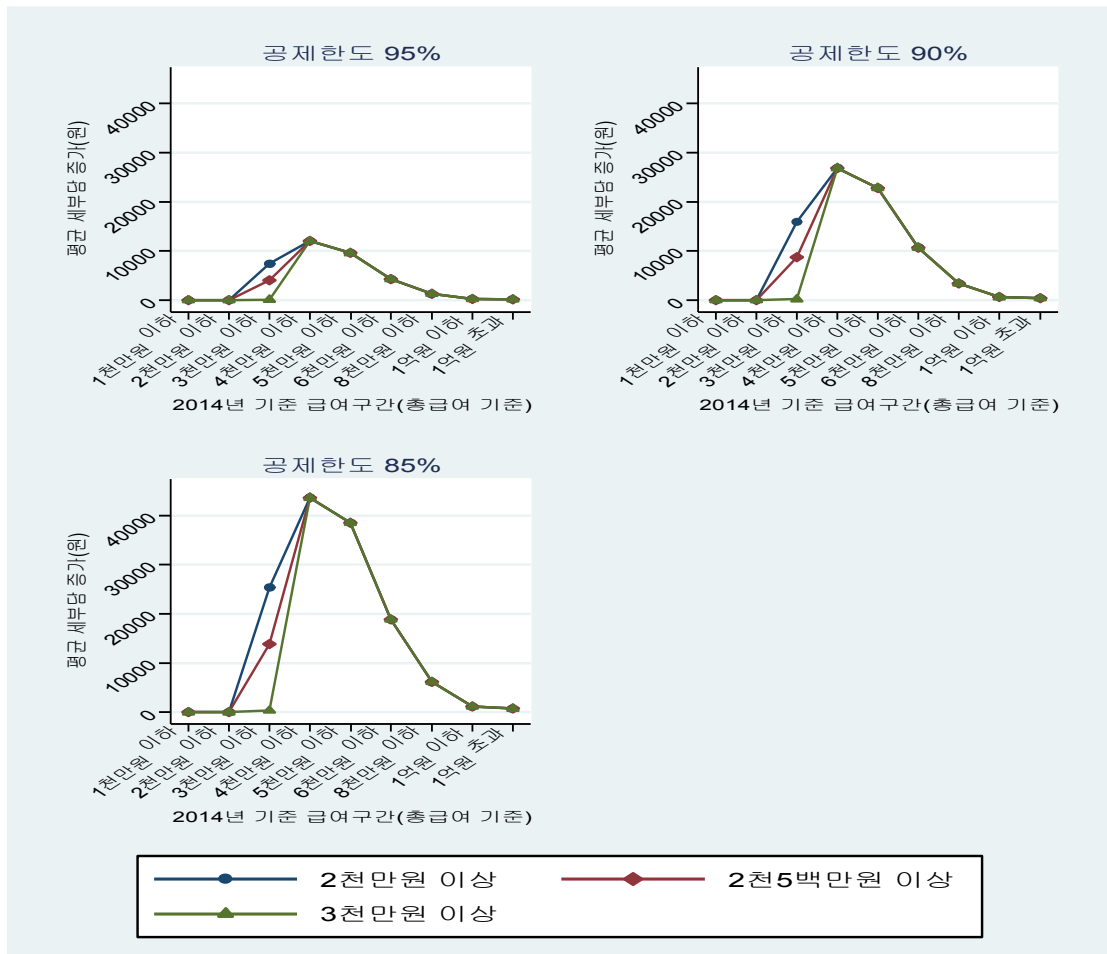
주: [ ] 안의 숫자는 세부담이 증가한 인원의 비율(%)

□ <표 III-32>와 [그림 III-25]는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에 따른 급여구간별 추가 세부담 변화에 대한 결과를 제시

-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으로 인하여 중·상위 소득자들의 1인당 추가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2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대부분의 추가 세부담이 전가
  - 1인당 추가 세부담은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소득구간에서 가장 높으며, 이를 기점으로 종모양의 형태로 1인당 추가 세부담이 감소
  - 반면, 8천만원 이상의 최상위 근로소득자들의 1인당 추가 세부담은 1,000원 이내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추가 세부담은 세액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자보다는 공제한도 적용률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5] 급여구간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단위: 원)



<표 III-33> 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단위: 원, %)

대안	대상자	공제 한도	가구형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가구
1	총급여액 2,000만원 이상	95%	1,592 [3.91]	4,105 [12.87]	7,164 [21.58]	9,321 [25.20]	10,329 [23.38]
2		90%	3,481 [4.59]	9,446 [15.20]	16,307 [24.41]	21,154 [28.06]	23,985 [26.26]
3		85%	5,630 [5.43]	15,793 [17.37]	26,916 [26.77]	34,740 [30.16]	39,923 [28.55]
4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95%	1,159 [2.06]	3,172 [7.92]	6,186 [15.76]	8,746 [20.92]	10,184 [21.78]
5		90%	2,536 [2.39]	7,449 [9.64]	14,302 [18.30]	19,987 [23.67]	23,693 [24.64]
6		85%	4,080 [2.68]	12,611 [11.13]	23,839 [20.39]	32,968 [25.71]	39,482 [26.91]
7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95%	736 [0.96]	2,196 [4.34]	4,864 [10.40]	7,710 [16.35]	9,781 [19.36]
8		90%	1,620 [1.12]	5,279 [5.47]	11,481 [12.50]	17,866 [18.94]	22,872 [22.15]
9		85%	2,612 [1.26]	9,080 [6.47]	19,415 [14.27]	29,732 [20.85]	38,236 [2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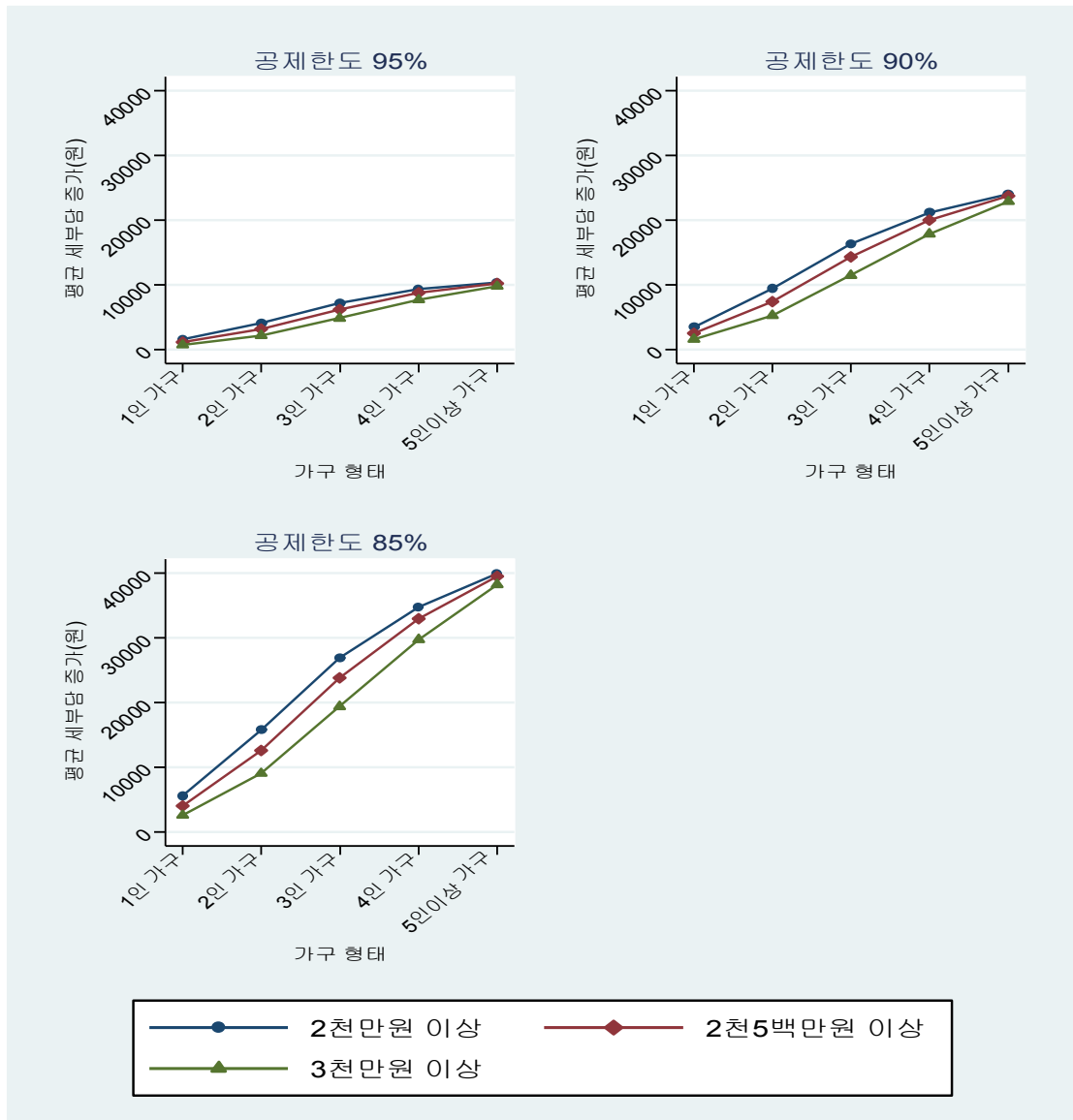
주: 대괄호([ ]) 안의 숫자는 세부담이 증가한 인원의 비율(%)

□ <표 III-33>과 [그림 III-26]는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에 따른 가구형태별 추가 세부담 변화에 대한 결과를 제시

- 가구형태별 추가 세부담 분석결과는 [그림 III-26]에서 보여주듯이, 가구원 수와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이 매우 뚜렷한 선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 가능
- 특히, 공제한도의 적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선형 관계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제한도가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세부담이 매우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세액공제 종합한도의 대안이 다인가구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추가 세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세제를 통한 다인가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정책과 상충할 가능성이 농후
- 반면, 1인가구의 추가 세부담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며, 이는 표준세액공제 축소안과는 상반되는 결과

[그림 III-26] 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단위: 원)



#### 4. 소결 및 정책 대안 평가

- 2013년 세법개정과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특별공제항목들이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한계세율에 의거하여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

- 이로 인해 고소득자의 공제율은 세액공제 이후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저소득자의 공제율은 세액공제 이후 증가
  - 따라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저소득자의 공제 혜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면세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
    -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통해 계산한 결과,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면세자의 비중은 32.16%에서 47.91%로 큰 폭으로 증가<sup>8)</sup>
- 이와 같은 면세자 비중의 과도한 증가는 소득세제의 역할을 매우 제한적으로 만들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존재
- 면세자 비중이 종전과 유사한 수준인 30%대로 회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적절한 면세자 축소 대안을 검토할 필요
- 사회·경제적으로 적절한 면세자 비중의 수준에 대한 기준이나 국제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 비중은 분명 과도한 수준이라 판단
  - 면세자 비중은 최근에 급증한 경향이 있으므로 최소한 종전 수준(30%대)으로 복귀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책목표가 될 것으로 판단
    -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주요국의 면세자 비중이 각각 35.8%, 33.5%라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30%대의 면세자 비중을 정책목표로 삼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 본 연구에서는 면세자 축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미시자료에 근거하여 면세자 비중과 세부담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
- 먼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서 면세자 비중의 자연감소율을 추정하고 면세자 축소 대안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
  - 다음으로 표준세액공제 축소대안, 근로소득공제 축소대안,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대안의 세 가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면세자와 세부담 효과를 심층 분석

8) 각주 1)과 동일

- 본 연구의 결과는 정태적 분석의 특성상 면세자 비중 감소효과를 과대추정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추정치들이 향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댓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에 주의를 요함
  - 정태적 분석은 그 특성상 근로소득자의 경제 상태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음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불가
    -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 효과
    - 물가상승에 의한 지출액의 증가 효과
    -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 공제신고의 누락(기존 면세자의 경우 가능성이 높음)
  - 위와 같은 사항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면세자 감소의 추정치가 과대추정될 우려가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해석을 제시할 필요
  
- 먼저, 본 연구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명목임금이 증가할 경우를 상정하고, 면세자 비중의 자연감소율을 추정
  - 향후 가장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가정한 명목임금상승률 3%, 물가상승률을 1%를 기준으로 한 추정결과,
    - 매년 약 1% 초중반 정도 면세자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 내에 5~8%p 정도 면세자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소득 기준 현재 면세자 비중이 약 48%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을 유지한다면 30%대로 면세자 비중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따라서 좀 더 빠르게 면세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 가장 현실성 있게 적용 가능한 세 가지 면세자 축소 대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면세자 축소 효과와 함께 세부담 증가 효과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각 축소 대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표준세액공제 축소 대안의 특징은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면세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나, 추가적인 세부담이 대부분 저소득 1인가구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

- 면세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 표준세액공제가 1만원 축소할 때 약 0.9%p 감소하며,
  - 급여구간별로는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자로 전환
  - 가구형태별로는 1인과 2인 가구에서 면세자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 추가 세부담의 변화는
  - 표준세액공제가 1만원 축소할 때, 1인당 평균 세부담은 약 1,412원 증가하며 총세수 증가액은 약 234.9억원으로 추정
  - 급여구간별로 총급여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대부분의 추가 세부담이 전가
  - 가구형태별로는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추가 세부담이 가장 높게 증가
-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의 특징은 가구형태와 상관없이 상당히 광범위한 소득구간의 근로자들을 과세자로 전환시킬 수 있으나, 모든 근로자의 결정세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다른 대안에 비해 과세 부담이 큰 편
  - 면세자 비중은 각 시나리오별로 약 2.0~5.7%p 감소할 것을 예상
    - 상당히 광범위한 소득구간(특히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에 걸쳐 감소하나,
    - 가구형태별로 상당히 균등하게 면세자 비중이 감소
  - 각 시나리오별로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은 1.6만원에서 7.3만원에 이르며, 총세수액은 최소 0.3조원에서 최대 1.2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급여구간별·가구형태별로 추가 세부담이 상당히 누진적으로 증가
  - 한편,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은 추가 세부담이 특정 개인에게 쏠리는 경향이 적고(추가 세부담의 최댓값이 작은 편), 대체로 전 소득계층에 걸쳐 고루 세부담이 전가되는 경향이 존재
-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대안의 특징은 중·상위의 특정구간(최상위 제외)을 타깃팅하여 면세자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로 중위 소득자와 다인가구에 과세가 전가되는 단점이 존재
  - 면세자 비중은 적용대상자의 총급여 수준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5%p 내외, 2,500만원 이상인 경우 7%p 내외, 2,000만원 이상인 경우 10%p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급여구간별로는 2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의 소득에서 면세자의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나며,
  - 가구형태별로는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면세자 비중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
  - 추가 세부담은 적용자의 급여수준보다 공제한도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은 공제한도가 95%인 경우 약 2.5~3.7천원, 공제한도가 90%인 경우 약 5.9~8.5천원, 공제한도가 85%인 경우 약 3.9~13.9천원 증가
  - 이에 따른 총세수 증가액은 최소 425억원에서 최대 2,318억원에 이룸
  - 급여구간별로는 중·상위 소득구간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가 가장 뚜렷
  - 가구형태별로는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라 뚜렷하게 세부담이 증가
- 면세자 축소 대안은 본질적으로 근로소득자 중 누군가의 세부담 증가라는 희생을 전제로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의 뚜렷한 정책적 목표와 주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
-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정책대안들도 각 대안별 장·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이전에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면세자 축소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
- 먼저, 정책의 목표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면, 표준세액공제 축소안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이 합리적
- 단, 표준세액공제 축소는 1인가구에 세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종의 싱글세(single tax)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중·상위 소득자들을 타깃팅(최상위 제외)하여 면세자 축소를 도모한다면,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이 효과적
- 단, 다인가구의 세부담이 높게 증가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출산과 관련한 보조적인 정책적 대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앞의 두 대안은 단기적으로 면세자를 축소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소득세율 구조의 정상화에는 기여하는 바가 적을 것으로 판단
  
- 반면,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은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율 구조의 정상화와 장기적인 면세자 비중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전병목·원종학(2003), 전병목(2008), 안종석(2015) 등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저·중소득 구간에서 유효세율이 매우 낮아 소득세제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
    - 실제 앞선 유효세율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4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 속한 근로소득자의 유효세율이 1% 내외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
  - 따라서 장기적인 면세자 축소 대안은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 대안은 소득세율 구조의 정상화와 면세자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단, 근로소득공제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율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
  
- 기타 면세자 축소 대안으로 김재진(2016), 예산정책처(2016)에서는 최저한세 도입, 특별세액공제 한도 설정, 소득공제 한도와 phase-out rule의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고려한 면세자 축소와 유사한 효과가 있거나 현실 적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
  - 최저한세의 경우 일정 급여 이상의 근로자들을 모두 과세자로 전환시키는 정책으로 평가 가능
    - 이는 면세자 수의 감소에는 효과적이지만, 정책적인 의도나 내실이 담기지 않는 임시방편적인 대안으로 판단
  - 특별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한도 설정대안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과 유사한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



## IV. 소득세제의 기부금 영향 분석





## IV. 소득세제의 기부금 영향 분석

### 1. 기부금 공제제도

-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한도와 공제율은 기부대상에 따라 달라짐
  -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의 15%(2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0%)
    -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전액이며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종교단체 기부가 있는 경우 기부금액의 한도는 (소득금액의 10% + min(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외 기부금액))
    - 즉 종교단체 기부금액의 한도는 소득의 10%이며 그 외 기부금액의 한도는 소득의 20%로 운영
    - 종교단체 기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30%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기부금액의 한도
  - 제도 개편 이전과 비교할 때 세액공제율의 경우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만 하락하였으며, 기부금액의 한도는 변화가 없음
- 제도 변화로 인해 각 소득수준별로 혜택에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계층은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소득자
  - 제도 변경 이전에는 소득세 한계세율인 24% 이상 세율로 공제를 받았지만, 제도변경 후 15% 세율로 공제를 받기 때문
  - 만약 기부금이 정상재화라면 기부금의 가격(즉 1- 세액공제율)이 올라가는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자의 경우 기부금액이 감소할 것이며
    - 가격이 하락하는 1,200만원 이하자의 경우, 기부금액이 증가할 것임

<표 IV-1>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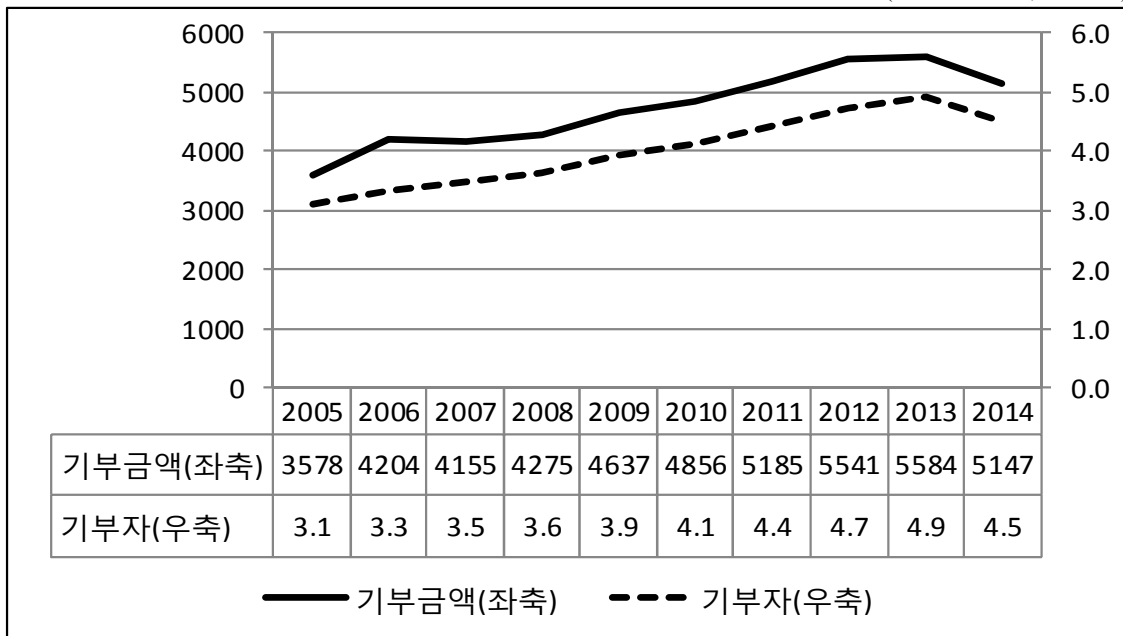
과세표준	2013년 귀속	2014년 귀속
~ 1,200만원	6% 이하	15(30)
1,200 ~ 4,600만원	15% 이하	15(30)
4,600 ~ 8,800만원	24% 이하	15(30)
8,800 ~ 15,000만원	35% 이하	15(30)
15,000만원 초과	38% 이하	15(30)

주: 괄호 안은 기부금액 2천만원 초과 시 적용되며, 2013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율 38% 이하의 의미는 과세표준이 동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한 단계 아래 세율인 35%가 적용된다는 의미

- 기부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2014년 이후 세액공제) 제도 변화가 일어난 2014년을 기점으로 하락 반전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총기부금액은 2005년 3.6조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5.6조원에 이르렀다가 2014년에는 5.1조원 수준으로 하락하였기 때문
  - 기부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13년 기준 4.9백만명에 도달하였다가 2014년 4.5백만명 수준으로 하락

[그림 IV-1] 기부금 규모 및 공제 신청자 추이

(단위: 십억원, 백만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박명호·전병목(2016)에서 재인용.

□ 연말정산 신고자 중 기부금 공제 신청자의 비중 역시 제도 변화와 함께 추세적 변화를 보이고 있음

○ 기부금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2005년 26.1%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3년 30.2%에 도달하였다가 2014년 27.0%로 하락

- 제도 변화에 따른 이동인지 추세 전환인지 판단의 어려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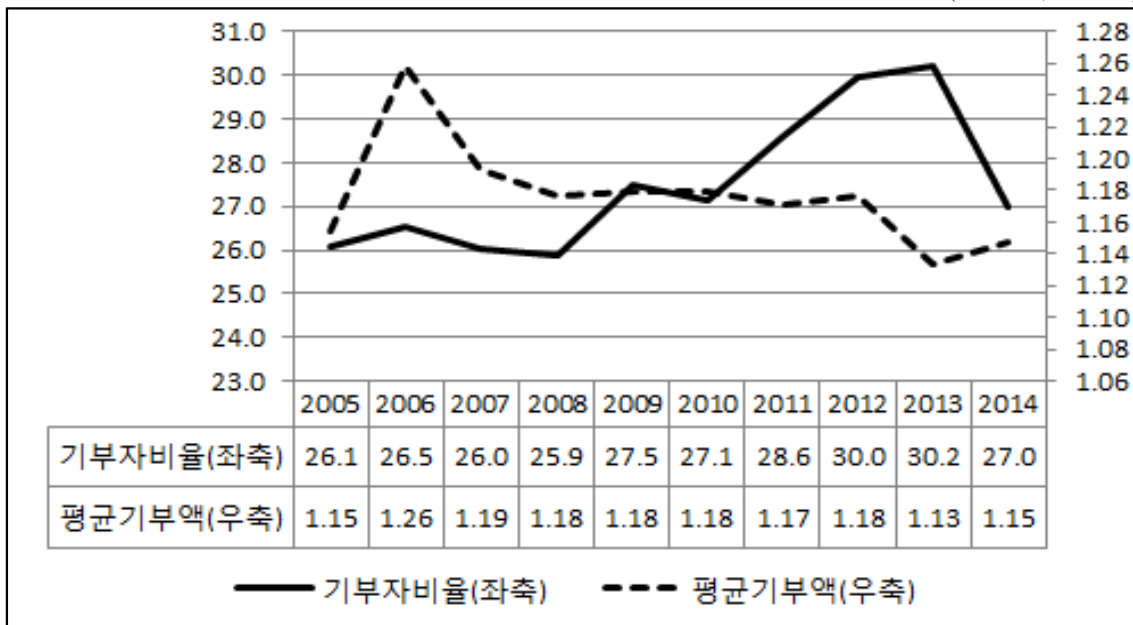
○ 반면 기부자당 평균 기부액은 점진적인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4년에는 소폭 증가

- 평균 기부액은 2006년 126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하고 2013년 113만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 115만원 수준으로 반등

- 그러나 2014년 변동 폭은 연간 2만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

[그림 IV-2] 기부금 공제 신청자 비중 및 평균기부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박명호·전병목(2016)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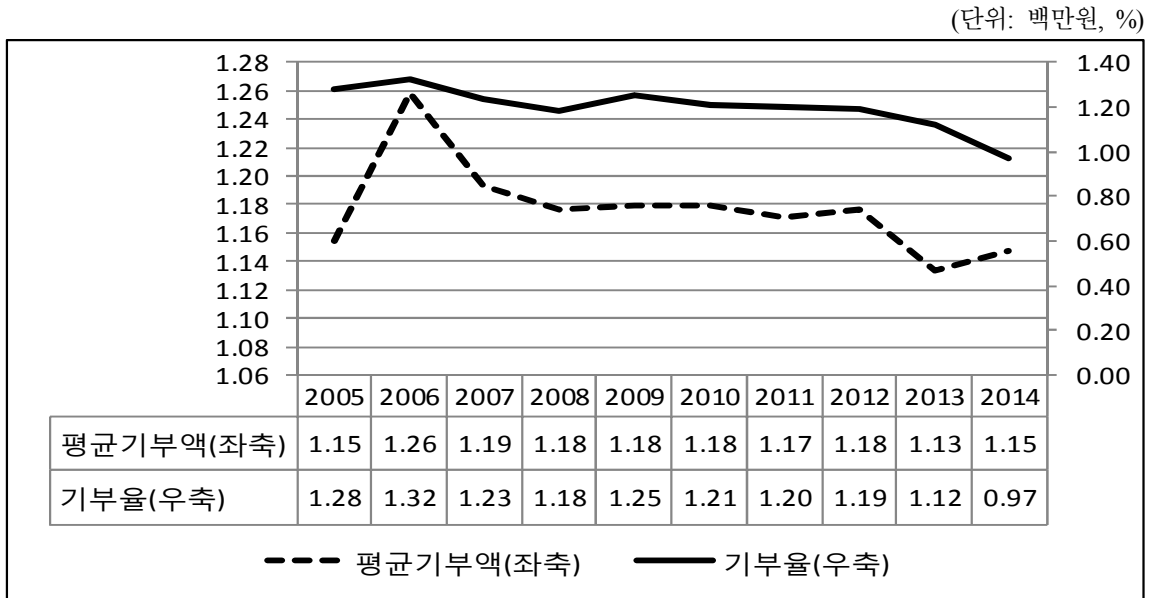
□ 기부금공제 신청자의 평균 기부액 하락추세는 전반적인 기부율(기부액/급여총액) 하락과 함께 나타남

○ 기부율은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 추세는 기부금공제 관련 세제 변화가 있었던 2014년에도 지속

- 기부율 하락 폭은 전년의 0.07%p보다 더욱 확대된 0.15%p

- 결국 2014년에 나타난 평균 기부액의 상승 반전은 소득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기부율의 대폭적 하락을 상쇄할 정도로 급여총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평균 기부액 소폭 증가

[그림 IV-3] 기부금 공제신청자의 평균기부액과 기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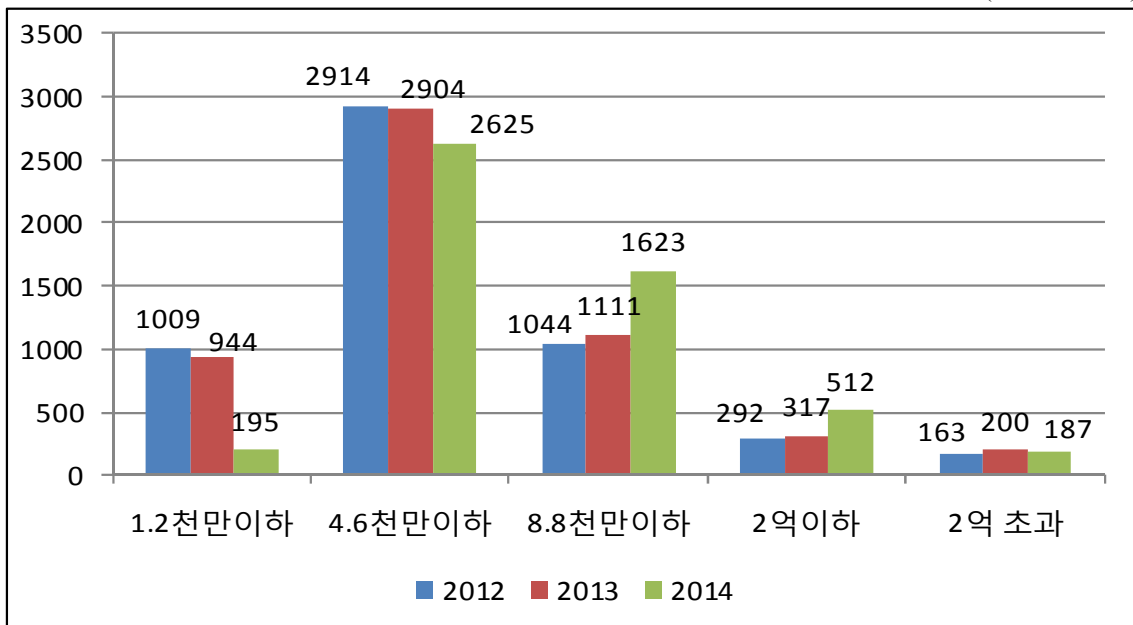
주: 기부율은 기부금공제 신청자의 급여총액 대비 기부액 비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박명호·전병목(2016)에서 재인용.

- 공제제도 변경으로 인한 기부금 가격 변화 효과를 가늠해보기 위해 과표구간별 기부자 및 기부금 변화를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도 변경 이후 저소득층의 기부가 급격히 감소
- 한편, 국세통계연보 자료는 신고인원 혹은 신고금액이 아니라 공제적용인원 혹은 공제적용금액에 대한 통계치를 제시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기부행태 변화를 정확히 추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에 주의해야 할 필요
  - 국세통계연보 자료는 신고서 순서에 따라 공제적용인원과 공제적용금액에 대한 통계치를 계산
  -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면세자가 된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는 기부금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인원으로 간주되지 않음

- 특히, 2014년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면세자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이들 중 상당수가 기부금을 신고하였음에도 『국세통계연보』상의 기부금 공제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국세통계연보 자료는 세액공제 전환 이후 저소득층의 기부인원과 기부금액을 상당 부분 과소추정하는 한계가 있음에 유념할 필요
- 과표구간별 소득자의 공제신청 기부금액은 과표구간 4,600만원 이하자의 경우 기존의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과표구간 4,600만원~2억원 소득자는 상승추세가 지속
-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 자들의 기부금액은 2013년 9,440억원에서 2014년 1,950억원으로 급격히 하락
    - 동 구간 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은 세제개편으로 낮아졌는데도 전년보다 큰 하락 폭을 보여줌
  - 최대 기부계층인 과표 1,200만원~4,600만원 소득자도 총기부금액 하락 폭이 확대
    - 이 구간 역시 기부금 가격의 변화가 없거나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인데 2014년 총기부금액은 2.6조원으로 전년 2.9조원 대비 2,800억원 감소

[그림 IV-4] 과표구간별 소득자의 기부금액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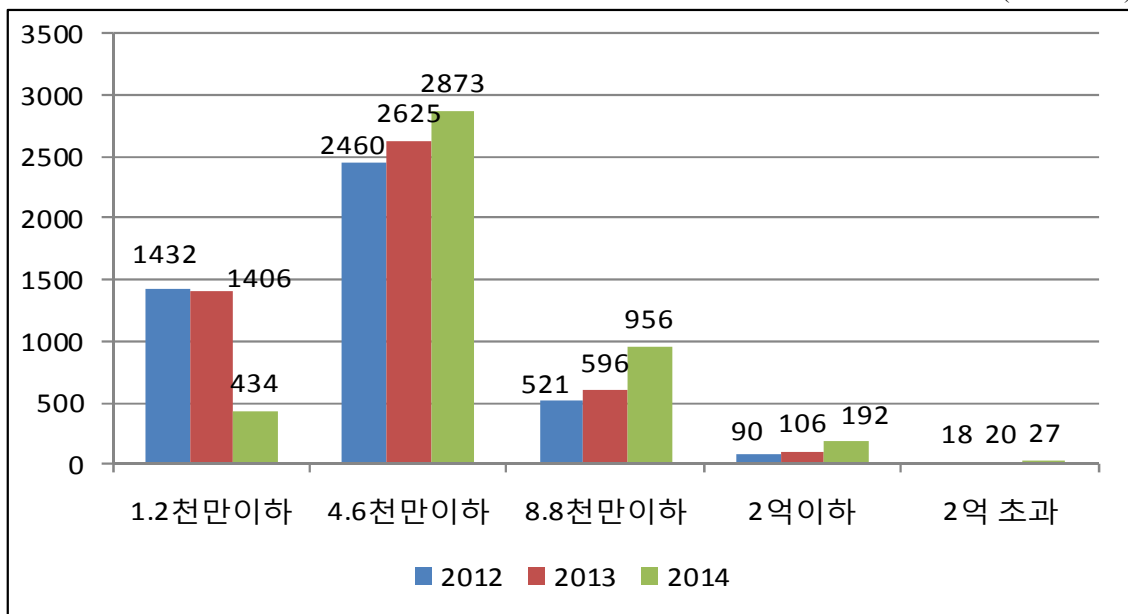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박명호·전병목(2016)에서 재인용.

- 기부금공제 신청자 규모 역시 과표 1,200만원 이하에서 급격히 감소
  - 신청자 규모는 2012년 143만명에서 140만명(2013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제도 변경 이후 43만명(2014년) 수준으로 급감
    - 과표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공제율이 기존 6%에서 15%로 높아져 혜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경제적 직관과 배치되는 결과
  - 반면 제도 변화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든 과표 4,600만원 초과 소득자 중 기부금공제 신청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부금에 대한 조세가격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과표 4,600만원~8,8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기부금공제 신청자가 2013년 59.6만명에서 2014년 95.6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의 증가추세와 비교하더라도 크게 증가한 수치

[그림 IV-5] 과표구간별 기부금공제 신청자 추이

(단위: 천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박명호·전병목(2016)에서 재인용.

- 소득자 대비 기부금공제 신청자 비중도 기부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경제적 직관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줌
  - 즉 기부가격이 하락한 과표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기부자 비율이 2013년 22.3%에서 2014년에는 5.9%로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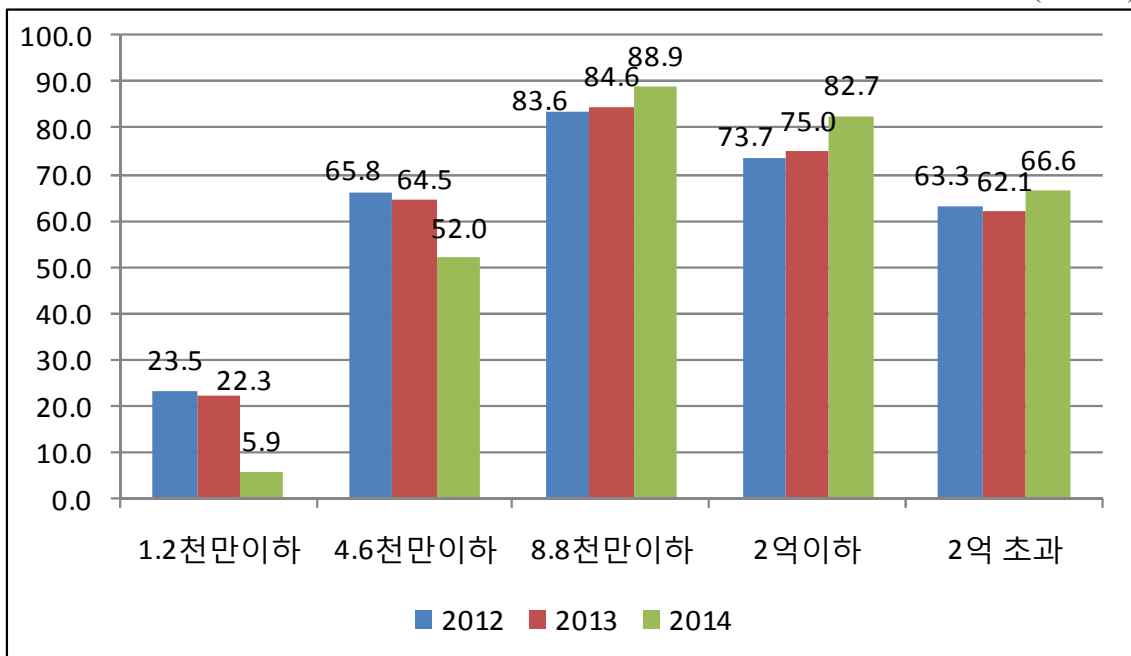
- 반면 기부가격이 상승한 과표 8,800만원~2억원 이하 계층의 기부자 비율이 75.0%(2013)에서 82.7%(2014)로 크게 증가
  - 2억원 초과자의 기부자 비율도 2013년 62.1%에서 2014년 66.6%로 직전연도에 비해 상당 폭 증가

□ 반면 기부금공제 신청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은 대부분 계층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과표구간 2억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2012년 이래 평균 기부금액이 감소 추세
  - 2014년 기부금 세제개편에 따라 평균 기부금액 감소 폭이 소폭 확대
  - 기부자 비율이 높은 과표구간 4,600만원 ~ 8,800만원, 8,800만원~2억원 구간 소득자의 경우 평균 기부금액이 2013년 각각 1.9백만원, 3.0백만원에서 2014년에는 10% 내외 감소한 1.7백만원, 2.7백만원으로 하락
- 다만 과표구간 2억원 초과자의 경우 평균 기부액이 2014년 크게 30% 이상 감소
  - 2012년(9.1백만원) 대비 증가한 2013년 10.1백만원 수준의 평균기부액이 2014년에는 7.0백만원으로 감소

[그림 IV-6] 과표구간별 소득자 대비 기부금공제 신청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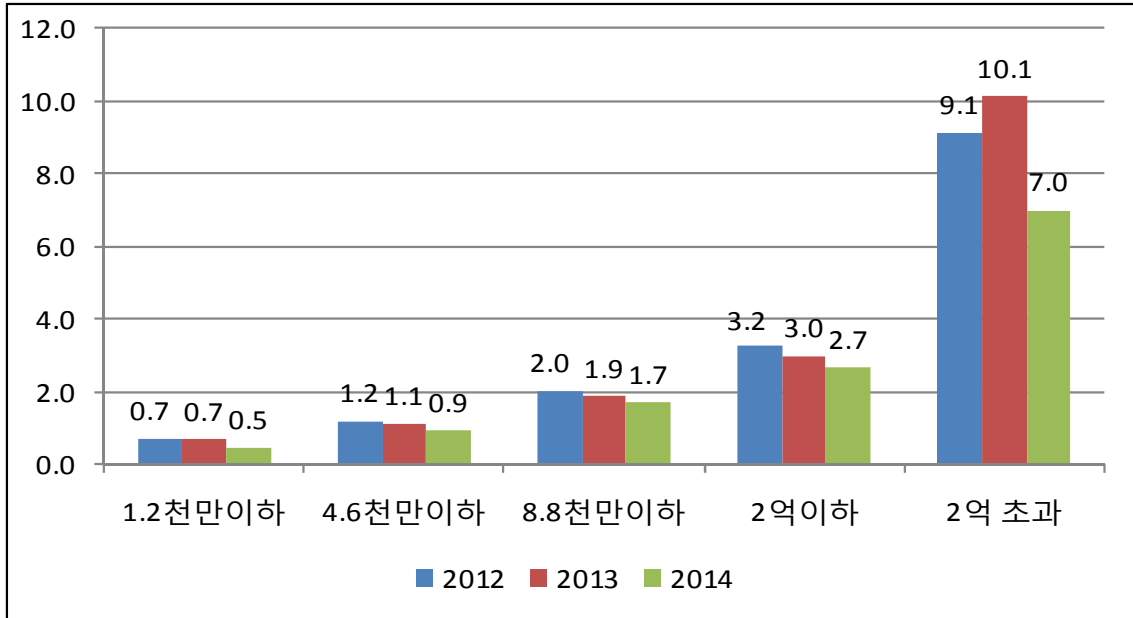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박명호·전병목(2016)에서 재인용.

[그림 IV-7] 기부금공제 신청자의 과표구간별 평균 기부금액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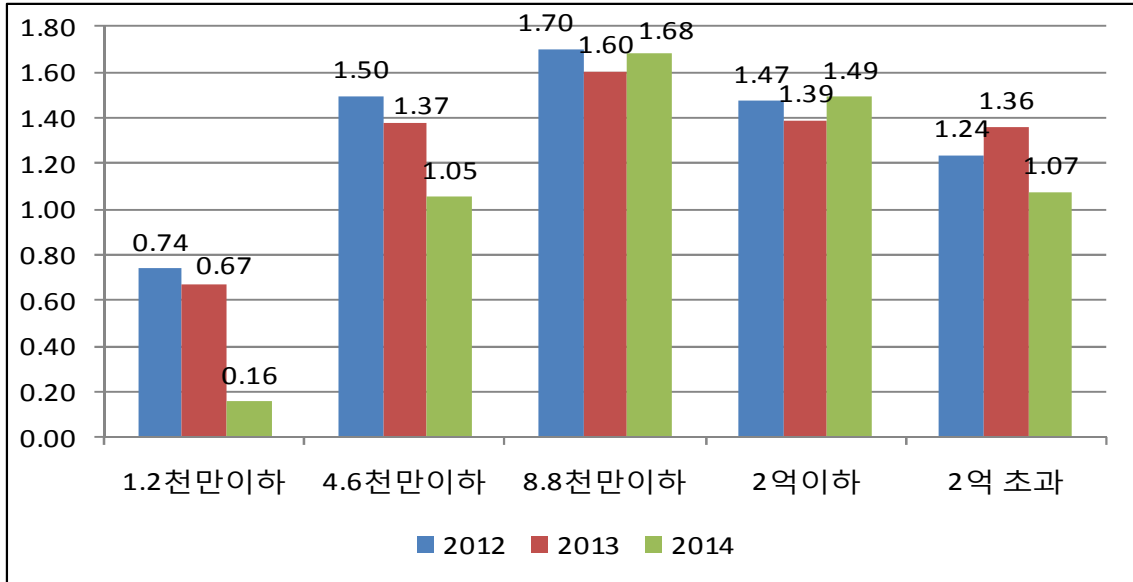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박명호·전병목(2016)에서 재인용.

- 기부금공제 신청자의 소득수준 대비 기부금액의 비율인 기부율은 과표 1,200만원 이하 계층에서 크게 하락하였으며 1,200만원~4,600만원 계층도 하락 추세 지속
  - 두 구간의 경우 기존의 하락추세가 제도개편(2014년) 시점을 기준으로 더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부금가격이 유지 또는 하락한 구간이므로 경제적 직관과 일치하지 않으나 제도 변경의 심리적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였을 수 있음
  - 반면 과표 4,600만원~8,800만원, 8,800만원~2억원 구간에서는 기부율이 전년의 하락과는 달리 반등하는 결과
    - 기부금가격이 상승한 구간이나 기부율은 상승하여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시사
  
- 잠재적 문제점은 총기부액이 가장 많은 과표구간 1,200만원~4,600만원의 중간계층의 기부율이 크게 하락하여 세제를 통한 기부 활성화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림 IV-8] 기부금공제 신청자의 과표구간별 기부율 추이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박명호·전병목(2016)에서 재인용.

- 기부금 세제개편 전후 기부금 관련 지표 변화는 전반적으로 총기부액, 기부자 수, 기부자 비율, 평균 기부액, 기부율 모두 하락
  - 그 중에서 전년의 추세와 달라진 지표는 총기부액과 기부자 수로서 2013년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는 하락
  -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축소된 세제개편이 기부금 하락을 유도 또는 심화시켰을 수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기부금가격 변화를 반영하는 과표구간별 지표 변화는 세제개편의 영향보다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을 수 있었음을 시사
  - 세액공제율이 높아진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 자들의 모든 기부 관련 지표는 전년도보다 크게 하락
    - 세액공제율이 동일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과표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서도 총기부액, 기부자 비율, 평균 기부액, 기부율이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
    - 이는 동 계층에서 가격 인하 영향을 압도하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의미
  - 반면 세액공제율이 낮아져 기부의 혜택이 줄어든 과표 4,600만원~2억원 구간에서는 기부자 비율, 기부율이 증가하였으며 기부자의 평균 기부액은 감소

- 기부혜택 축소에도 불구하고 기부자 비율이 증가되었으며 기부율(기부금액/급여총계) 역시 높아져 총기부액 증가
- 기부자 평균 기부액 하락은 기부가격 상승으로 설명 가능
- 과표 2억원 초과자의 경우, 기부자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기부율 하락과 이에 따른 평균 기부금액 하락으로 총기부액은 감소
- 평균 기부액은 기부가격 상승이 시사하는 방향으로 변화

<표 IV-2> 기부금 세제개편 전후(2013년 대비 2014년)의 지표별 변화 방향

과표구간	총 기부액	기부자수	기부자비율	평균기부액	기부율
~ 1,200만원	하락지속	하락지속	하락지속	하락지속	하락지속
1,200 ~ 4,600만원	하락지속	상승지속	하락지속	하락지속	하락지속
4,600 ~ 8,800만원	상승지속	상승지속	상승지속	하락지속	상승반전
8,800 ~ 2억원	상승지속	상승지속	상승지속	하락지속	상승반전
2억원 초과	하락반전	상승지속	상승반전	하락반전	하락반전
합계	하락반전	하락반전	하락지속	하락지속	하락지속

주: ‘지속’은 2012년 대비 2013년 변화추세가 2014년에도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며 ‘반전’은 2012년 대비 2013년 변화추세가 반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  
 자료: 박명호·전병목(2016)

## 2. 선행연구

- 기부행위에 대한 소득세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정책의 관심이었으며 그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진행
  - 외국의 관련연구는 과거 단순한 가격효과를 분석하는 데서 발전하여 시점 간 의사결정, 항상소득과 일시적 소득의 영향 구분 등의 방향으로 발전
  - 우리나라의 연구는 기부금 관련 자료의 제공이 제한되어 아직까지 단순한 가격효과 분석에 머물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에 대한 선행연구는 송헌재(2013), 박기백(2010) 등이 대표적
  - 박기백(2010)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분석을 통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도출

- 다수의 기부금액이 0인 점을 감안하여 Tobit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가격탄력성은 -0.564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으며 소득탄력성은 0.720으로 추정
- 송헌재(2013) 역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2008~2012년 자료(매년 약 5천가구 조사)를 패널분석하여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도출
  - 조사자료 중 개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총 2,122명의 근로자가 5년간 제출한 5,985개
  - 분석모형은 Random Effect Tobit 모형
  - 분석결과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7.5~-9.9로 나타났으며 소득탄력성은 1.4~1.8로 상당히 높은 수준
- Feldstein and Taylor(1976)는 미국 재무성 1962, 1970년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횡단면분석과 두 기간 소득구간별 변화율 분석을 함께 시행하여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추정
  - Tobit 모형 추정을 통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1.0~-1.5 수준임을 제시
- Clotfelter(1980)는 미국의 세무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itemized deduction의 경계에 있는 납세자가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패널자료를 이용한 장단기 가격탄력성을 비교
  - 추정결과 itemized deduction의 경계에 있는 납세자는 전체 가격탄력성의 크기를 줄이는 영향을 미치며 기부금의 가격에 대한 반응도는 점차적으로 나타나 장기 탄력성이 단기 탄력성보다 크게 나타남을 보임
  - 가격 탄력성은 -1 내외로 추정
- Randolph(1995)는 미국의 세무신고자료 패널(1979~1988)을 이용하여 납세자들이 기부의 시기를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줌
  - 즉 자신의 일시적인 소득 및 가격변동에 따라 기부금액을 조절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소득탄력성은 과소추정, 가격탄력성은 과대추정하게 됨을 보임

- Auten, Sieg and Clotfelter(2002)는 미국의 소득세 세무신고자료 패널(1979~1993)을 이용하여 가격 및 소득 변화를 항구적(Persistent)과 일시적(Transitory)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력성을 추정
  - 항구적 가격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0.79 \sim -1.26$ 으로 추정되었으며 일시적 가격변화에 대한 기부 탄력성은  $-0.40 \sim -0.52$ 로 추정
  - 반면 소득탄력성은 항구적 변화에 대해서는  $0.40 \sim 0.87$  수준이며 일시적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0.29 \sim 0.49$  수준
  
- Bakija and Heim(2011)은 미국의 소득세 신고자료 패널(1979~2006)을 이용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조세 변화에 대한 점진적 조정을 허용하여 탄력성을 추정
  - 주별 기부가격 차이를 기반으로 추정한 항구적 가격 변화에 대한 기부금탄력성은 -1보다 큰 값(절대값)을 보이며 연방세의 변화를 기반으로 추정한 수치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절대값)의 탄력성 보임
  - 연방세와 주별 변화를 함께 고려할 경우 가격탄력성은  $-0.6 \sim -1.1$  내외로 추정
  
-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상당한 격차를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개인소득세제의 차이와 추정에 이용된 자료(서베이자료 vs. 세무신고자료)의 차이 등이 원인일 수 있지만
  - 기부금에 대한 동서양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음

### 3. 추정모형

-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타당성은 최적조세이론에서 도출될 수 있음
  - Saez(2004), Almunia, Lockwood and Scharf(2016)은 최적조세이론의 관점에서 기부금, 주택소유 등과 같은 기부재(Contribution good)에 대해 분석
    - 기부재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일정한 양(+의 외부효과도 있는 재화를 의미
  - 선행연구 결과는 기부재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은 동 재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

□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사회후생효과는 Almunia, Lockwood and Scharf(2016)과 같이 도출 가능

○ 개인의 효용함수를 소득(z)과 기부금(g)의 함수로 표현

$$U(z, g) = c - d(z) + v(g; \theta) + w(D)$$

-  $\theta \in [\underline{\theta}, \bar{\theta}]$ 는 개인의 이질성을 표현

$c$ 는 개인의 사적 소비,  $d(z)$ 는 노동공급에 따른 비용(disutility)

$v(g; \theta)$ 는 개인의 기부에 따른 효용

$w(D)$ 는 총 기부금에 따른 효용으로  $D = G + B$ ,  $G = E_{\theta}[g]$ 이며  $B$ 는 정부의 기부금 수혜단체에 대한 직접보조금 수준

○ 가계의 소득제약식은  $g + c \leq z - T(z - sg)$

-  $s$ 는 자발적 기부금에 대한 지원을

-  $T = \tau \max\{z - sg, 0\}$ 로 표현되는 선형소득세 시스템,  $\tau$ 는 소득세율

○ 내부해를 갖도록 하는 가정하에서 내부해는 다음의 조건 만족

-  $d'(z) = 1 - \tau$ ,  $v'(g(\theta); \theta) = 1 - s\tau$ ,  $\theta \geq \tilde{\theta}$

- 즉 근로의 한계 비효용은 세후소득률과 일치하고 자발적 기부의 한계효용은 기부금의 가격( $p = (1 - s\tau)$ )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 내부해의 조건으로부터 개인의 기부함수 도출 가능

$$g(p; \theta) = \begin{cases} g(p; \theta), & \theta \geq \tilde{\theta} \\ 0, & \theta < \tilde{\theta} \end{cases}$$

○ 내부해의 조건들을 개인의 효용함수에 대입하면 간접효용함수를 도출 가능

-  $V(\tau, p, G, B; \theta) = z \cdot (1 - \tau) - d(z(1 - \tau)) + v(g(p, \theta); \theta) - pg(p; \theta) + w(G + B)$

- 즉 소득제약식이 제약적일 때  $T = \tau \max\{z - sg, 0\}$ 을 이용하여 다음 관계식이 도출되기 때문

$$\begin{aligned} c &= z - g - T(z - sg) \\ &= z - g - \tau(z - sg) \\ &= z(1 - \tau) - (1 - s\tau)g \end{aligned}$$

□ 개인의 효용함수를 감안하여 정부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tau, p, B$  선택

○ 사회후생함수는  $W = E_{\theta}[V(\tau, p, G, B; \theta)]$

-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B + (1 - p)G(p) + E = \tau \cdot z$

- 여기서  $E$ 는 외생적 지출 수요

○ 사회후생극대화 문제의 일계조건은

- $\tau : -z + \lambda(z - \tau z_{1-\tau}) = 0$
- $p : G + w'(G+B)g_p + E = \tau \cdot z$
- $B : w'(G+B) - \lambda = 0$

○ 일계조건을 재정리하면

- $\lambda = \frac{z}{z - \tau \cdot z_{1-\tau}} > 1$
- 마지막 관계식은  $z_{1-\tau} > 0$ 에서 도출됨
- $\epsilon = -\frac{dG}{dp} \frac{p}{G} = 1 - \frac{1}{\lambda} < 1$
- $B$ 에 대한 일계조건을  $p$ 에 대한 일계조건에 대입

○ 최적조세이론에 따른 균형 탄력성은  $\lambda$ , 즉 정부자본조달의 한계비용(Marginal cost of Public Funds; MCPF)에 의해 결정

- 일반적인 MCPF 추정치가 1.5(Almunia, Lockwood and Scharf, 2016)임을 감안하면 대응되는 탄력성( $\epsilon$ )은 0.3이며 이보다 큰 탄력성을 보이면 조세지원의 증가가 사회후생의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부행위에 대한 가격탄력성의 추정이 조세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나라는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그 이전에 시행된 최고구간 신설 및 과표구간 조정으로 인해 탄력성 추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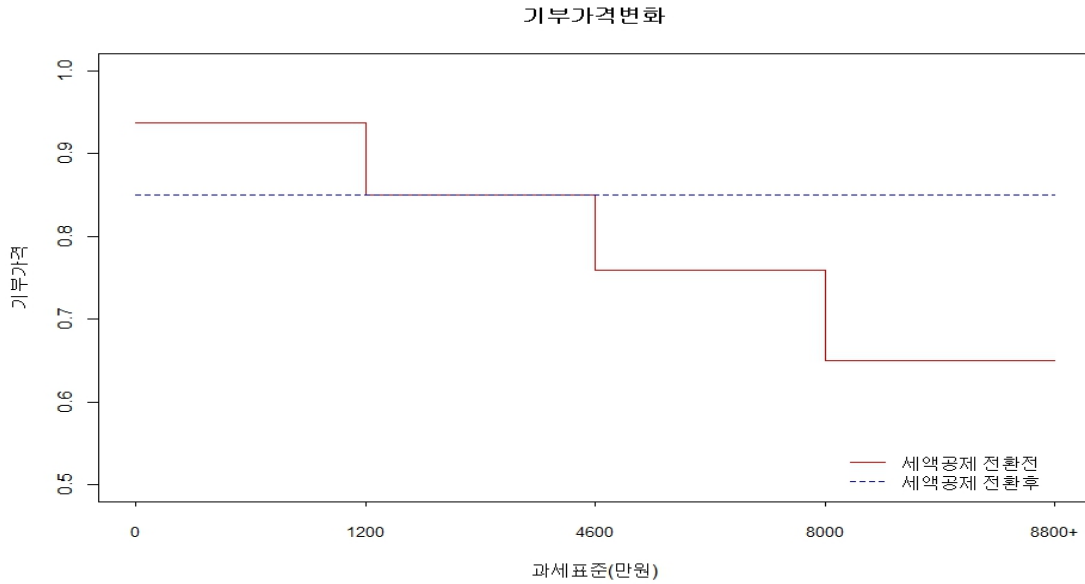
○ 과세표준 1,200~4,6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기부가격의 변화가 없어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비교집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표 IV-3> 연도별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과세표준	2011	과세표준	2012-2013	과세표준	2014~2015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3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38%

자료: 박명호·진병목(2016)

[그림 IV-9] 기부가격 변화



- 기부금액에 대한 추정모형은 가계의 효용극대화 모형의 해에서 도출되는 가격, 소득, 그리고 다양한 개인적 특수상황의 변수로 구성 가능
  - 구체적인 함수 형태는 조세지원의 효과를 ① Intensive Margin<sup>9)</sup>과 Extensive Margin<sup>10)</sup>으로 구분하여 패널모형으로 추정하는 모형(Panel Regression with Fixed Effects)과 ② 기부결정 여부를 반영한 2단계 모형(Two step Selection Correction Model)으로 구성
  - 추정모형은 다음의 두 가지 단계모형으로 추정
    - 기부결정을 설명하는 1단계 모형은

$$L_{i,t} = \delta_{t_0} + \delta'_{t_1} Z_{i1} + \dots + \delta'_{t_T} Z_{iT} + \nu$$

- 여기서  $g_{i,t} > 0$  이면  $L_{i,t} = 1$  이고 그렇지 않으면  $L_{i,t} = 0$
- 기부금액을 설명하는 2단계 구조모형은

$$\ln g = \epsilon \ln P + \eta \ln Y + \theta' X + \alpha_i + \alpha_t + u$$

- 1단계와 2단계모형을 구분하기 위한 배제변수로는 세대주 여부 변수를 활용
- 일반적으로 두 추정모형의 에러항은 상호 연관

$$u = \rho_t \nu \text{ where } \rho_t \neq 0$$

9) Intensive margin은 기존 기부자들의 기부 증가효과를 의미

10) Extensive margin은 기존의 비기부자들의 기부에 참여하는 효과를 의미

- Panel Regression with Fixed Effects 모형은  $\rho = 0$ (즉 자료편이가 없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고, Two step Selection Correction Model은 보다 일반적인 모형을 추정
- $\rho = 0$  가정 하에서 intensive margin은 기부자들만을 대상으로 2단계 구조모형에서 도출되며 extensive margin은 다음의 모형으로 도출

$$\Pr(g > 0) = \epsilon_{ext} \ln P + \eta_{ext} \ln Y + \theta' X + \alpha_i + \alpha_t + u$$

- 기부금액과 소득 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소득은 기부금소득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세후소득을 소득변수로 사용
- 기부가격과 기부금액 사이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첫 1원 기부에 대한 기부가격을 도구변수(IV)로 활용

$$P^{IV} = 1 - \tau(Yg = 0)$$

- 기부가격에 대한 반응 중에서 시차조정 효과 반영하기 위해 가격 및 소득변수의 변화율을 추가(Bakija and Heim; 2011)
- $\Delta \ln P = \ln P - \ln P_{-1}$ ,  $\Delta \ln Y = \ln Y - \ln Y_{-1}$

#### 4. 분석자료

- 기부금 가격탄력성 분석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세무신고 자료 중 무작위 추출된 자료를 활용
  - 2011~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신고자 10만명의 자료를 패널화
  - 동 자료의 추출방법은 소득기준 정렬자료에서 동일 간격을 두고 추출, 즉  $i$ ,  $i+n$ ,  $i+2n$ , ... 순으로 추출
- 분석대상 자료의 기초 통계량에 따르면 평균급여는 5,100만원 수준이며 결정세액은 약 299만원, 기부금액은 71만원
  - 분석의 신뢰성을 위해 각 연도별 소득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소득으로 전환
  - 기부금공제 신청자의 비율은 56% 수준이며 5년 연속 기부금공제 신청을 한 납세자의 비중은 39%임

<표 IV-4> 기초통계량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연령	499,990	44.09	9.88	18	96
성별	500,000	0.30	0.46	0	1
세대주구분	500,000	0.70	0.46	0	1
부양가족 수	499,924	2.68	1.65	0	11
총급여(원)	500,000	51,238,542	47,583,713	0	5,005,900,000
과세표준(원)	500,000	25,793,169	41,757,729	0	4,854,832,800
결정세액(원)	500,000	2,986,610	12,885,968	0	1,773,576,464
총기부금공제 대상금액	500,000	711,115	2,401,461	0	745,911,603
기부가격	500,000	0.87	0.05	0.62	0.94
기부여부1	500,000	0.56	0.50	0	1
기부여부2	500,000	0.39	0.49	0	1

주: 성별은 남성은 0, 여성은 1의 값을 갖도록 설정  
 내외국인 구분은 외국인은 0, 내국인은 1의 값을 가짐  
 세대주 구분은 세대원의 경우 0, 세대주의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변수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구분은 외국인단일세율 미적용자는 0,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자는 1  
 기부여부(1)은 총기부금공제 대상금액이 0보다 큰 경우 1의 값을 갖도록 설정된 변수  
 기부여부(2)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총기부금공제 대상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만 1의 값을 갖도록 설정된 변수

자료: 박명호·전병목(2016)

- 기부금공제를 신청한 기부자 비율은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약 7%p 하락하였으며 기부금공제대상 금액도 전년 127.6만원에서 117.1만원으로 하락
  - 기부자 비율의 하락은 소득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는데 2013년 40.3%에서 2014년 28.9%로 급락
  -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부자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

<표 IV-5> 기부금 관련 변수의 연도별 추이

(단위: 원, %)

연도	평균 총급여	기부자 비율	총기부금 공제대상금액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2011	45,963,181	55.52	1,248,388		
2012	48,758,261	57.86	1,297,689		
2013	51,328,105	59.27	1,275,809	96,896	1,175,773
2014	53,668,076	52.06	1,171,028	76,621	1,093,597
2015	56,475,086	55.94	1,333,394	85,448	1,245,492

주 : 기부자 비율은 연도별 총기부금공제 대상금액이 0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비율로 산출  
 기부금공제대상금액은 기부자들의 평균값

자료: 박명호·전병목(2016)

<표 IV-6> 소득구간별 기부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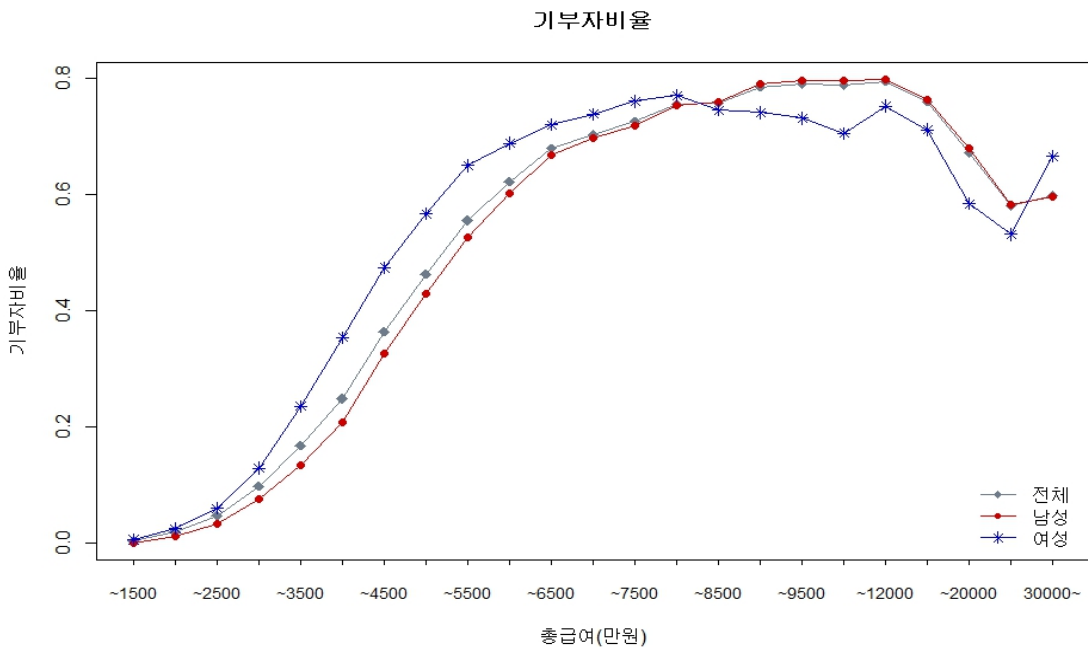
(단위: %)

	55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11	35.55	77.23	85.01	85.69
2012	38.64	79.11	86.03	86.71
2013	40.29	80.24	87.30	87.43
2014	28.93	76.54	86.59	87.53
2015	34.66	79.63	86.78	88.27

주: 기부자 비율은 연도별 총기부금공제 대상금액이 0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비율로 산출소득구간은 2015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박명호·전병목(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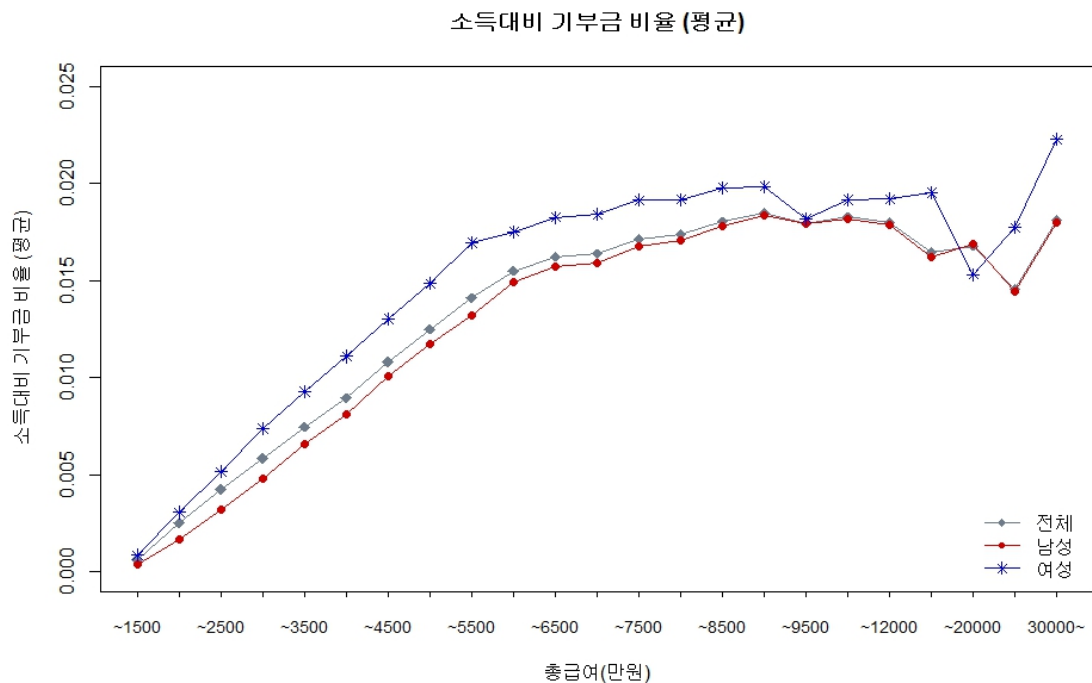
- 성별 소득수준별 기부자 비율은 약 8,500만원 소득 이하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기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이상 소득자 중에서는 남성들의 기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기부자 비율은 총소득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남녀 공통된 현상

[그림 IV-10] 성별·소득수준별 기부자 비율(2015)



- 소득대비 기부금액으로 계산된 기부율은 약 총급여 9천만원 수준까지는 소득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가 이후 소폭 하락 또는 유지되는 경향
- 기부율은 고소득구간에서 소득 대비 1.5~2.0% 수준을 유지
- 여성소득자의 기부율이 대부분 소득구간에 걸쳐 남성소득자의 기부율보다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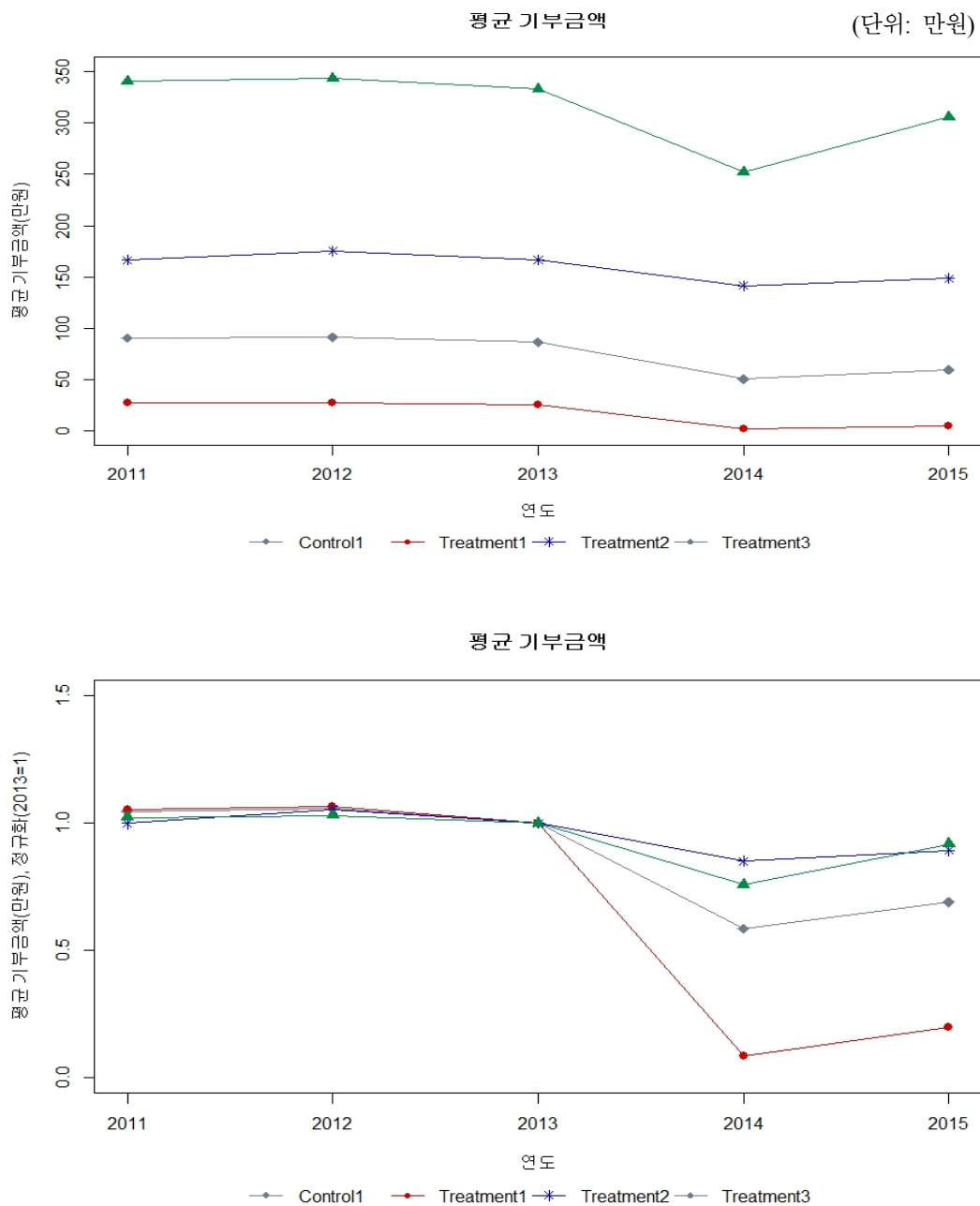
[그림 IV-11] 성별·소득수준별 기부율(2015)



- 연도별 평균 기부금액의 경우 제도 변화 시점인 2014년 하락하였다가 일정 부분 회복하는 추세
- 조세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기부가격이 변하지 않은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소득자를 통제그룹(Control 1)으로 정의하고, 기부가격이 변한 그룹을 처치그룹으로 구분
- 처치그룹은 다시 기부가격이 하락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자를 처치그룹 1(Treatment 1), 과세표준 4,600만~8,800만원 구간을 처치그룹 2(Treatment 2), 8,800만원 초과 구간을 처치그룹 3(Treatment 3)으로 세분화하여 가격 변화의 효과를 분석

- 평균 기부금의 추세를 살펴보면 세제가 변화된 2014년부터 통제그룹과 처치그룹의 변화추세가 변화
  - 2011년 평균기부금액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보면 처치그룹1의 기부금액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처치그룹 2, 3의 하락률은 비교그룹에 비해 작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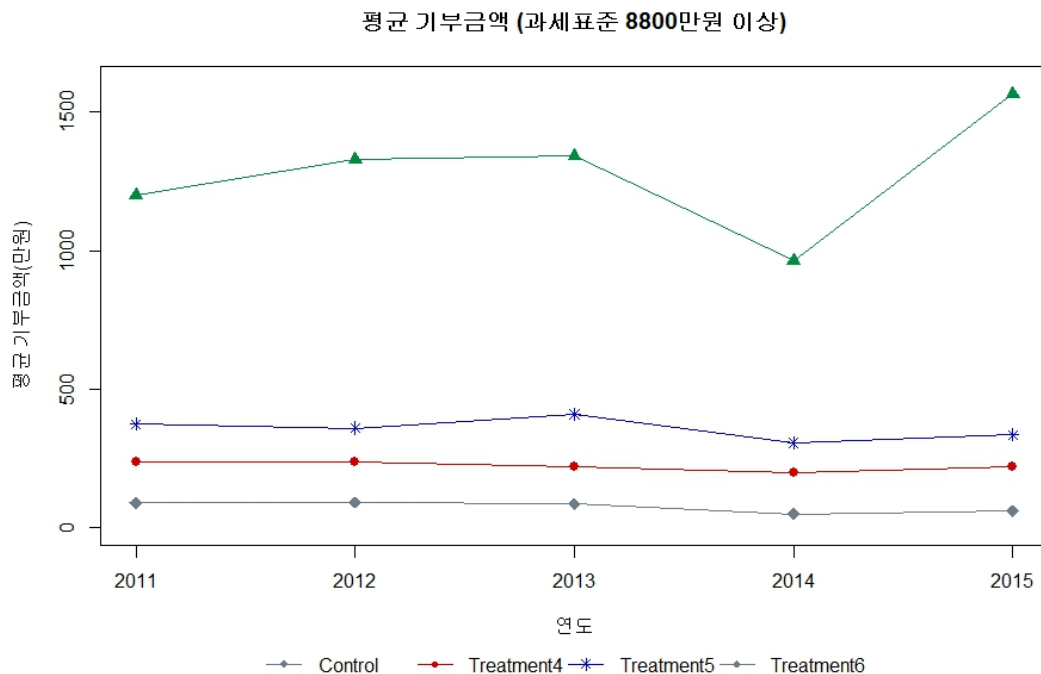
[그림 IV-12] 연도별 평균 기부금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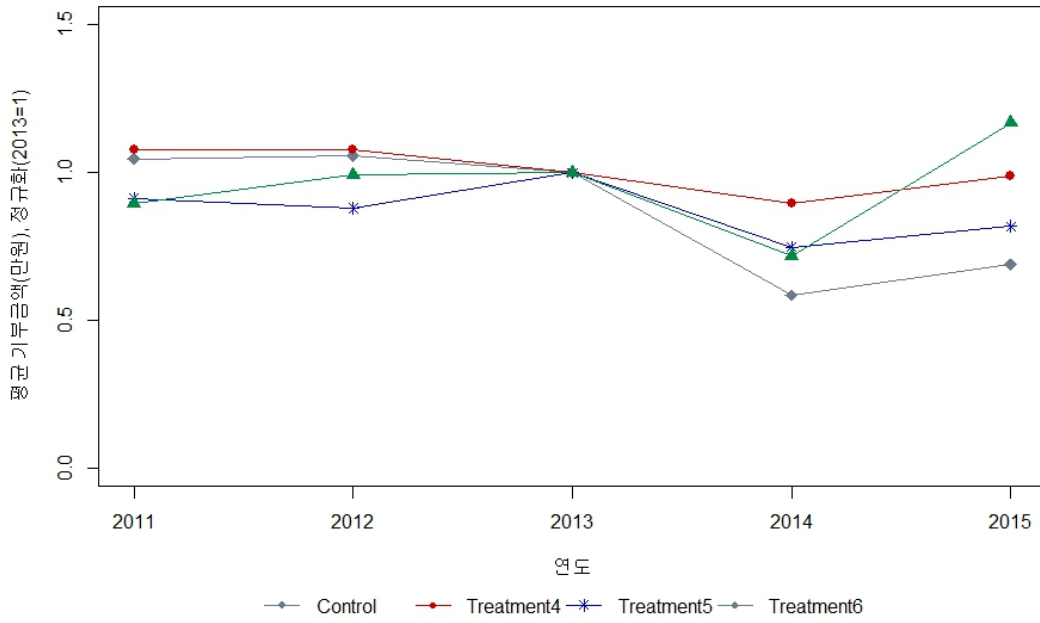
- 고소득자의 기부행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처치그룹 3을 다시 처치그룹 4(과표 8,800만원~1억5천만원), 처치그룹 5(과표 1억5천만원~3억원), 처치그룹 6(과표 3억원 초과)으로 구분
  - 세계개편에 따른 변화는 기부가격이 변하지 않은 통제그룹에 비해 기부가격이 높아진 처치그룹의 감소폭이 작게 나타남
  - 이러한 추세는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실제 기부에 대한 가격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
  
- 특히 고소득자 중 기부자만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부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전체 기부금액 증가율은 통제그룹에 비해 높은 상황
  -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에 대한 통제,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의 상대적 크기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

[그림 IV-13] 연도별 평균 기부금액 변화 추이(과표 8,800만원 이상 소득자)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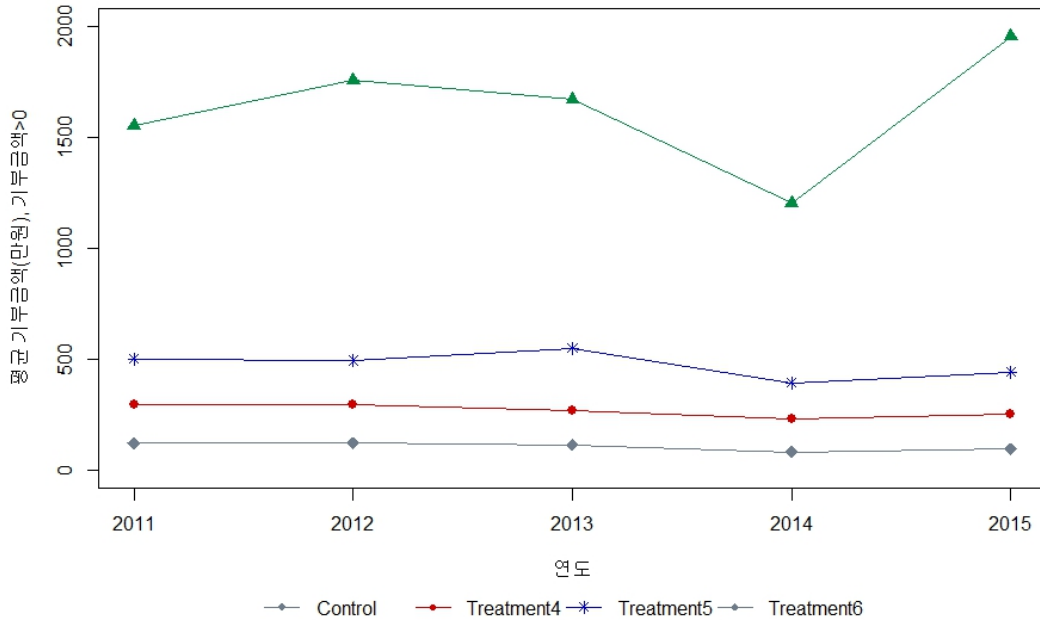


평균 기부금액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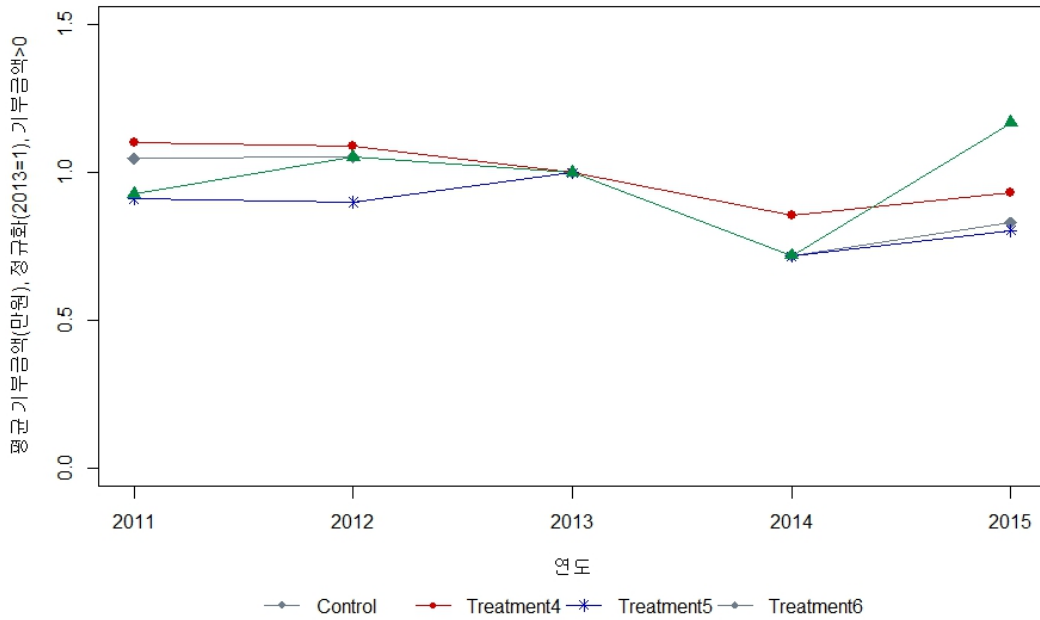


[그림 IV-14] 연도별 평균 기부금액 변화 추이(과표 8,800만원 이상이며 기부자)

평균 기부금액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기부자)



평균 기부금액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기부자)



□ 세액공제 변경 전후를 대상으로 통제그룹 및 처치그룹 기부 변화에 이중차분법 (Difference-in-Difference)을 적용하여 도출한 단순 가격탄력성은 경제적 이론과 달리 양(+)의 값을 보임

<표 IV-7>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단순 가격탄력성(Diff-in-Diff)

(기부금액 단위: 만원)

	2013		2014		변화액(변화율)		탄력성
	평균 기부금액	평균 기부가격	평균 기부금액	평균 기부가격	평균 기부금액	평균 기부가격	
Control	89	0.85	55	0.85	-34 (-38%)	0.00 (0%)	-
Treatment1	27	0.94	4	0.85	-23 (-86%)	-0.09 (-9%)	4.9
Treatment2	170	0.76	145	0.85	-24 (-14%)	0.09 (12%)	2.0
Treatment3	339	0.65	279	0.85	-60 (-18%)	0.20 (31%)	0.7

주: Control(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Treatment1(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Treatment2(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Treatment3(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가격탄력성은(기부금액 변화율T-기부금 변화율C)/(기부가격 변화율T-기부가격 변화율C)

- 다른 요인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기부결정이 당해연도 기부가격과 큰 상관성이 없을 가능성도 존재
- 보다 정교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분석 필요

## 5. 분석결과

- 기부금 가격탄력성 도출을 위한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목적에 맞게 조정
  - 기부가격변수는 각 소득자가 직면하는 근로소득세 한계세율을 차감한  $(1-\tau_i)$ 로서 세액공제 전환 후에는 세액공제율을 한계세율로 적용
  - 세후소득변수는 기부금액과의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부금이 없었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근로세액을 차감하여 도출

<표 IV-8> 주요 변수 설명

변수명	설명	비고
기부금공제금액	연도별 항목별 기부금공제금액의 총합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여 사용
세후소득	총급여에서 기부금 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소득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여 사용
기부가격	1-한계세율 또는 세액공제율로 산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기부금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을, 2014년 이후는 세액공제율(15%)을 일괄적으로 적용
연령	근로소득자의 연령	
성별	근로소득자의 성별	남성은 0, 여성은 1의 값을 갖도록 설정
연도별 더미	해당년도에만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소비자물가지수	기부금공제금액, 세후소득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사용	

자료: 박명호·전병목(2016)

## 가. 단순 모형(Panel Regression with Fixed Effects)

- 먼저 기부 여부 결정과 기부금액을 결정 구조식의 에러항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패널모형을 추정
  - 기부가격이 기부행위 참여도 및 기부참여자의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장점
  - 기부 여부 결정모형을 통해 extensive margin에 의한 탄력성, 즉  $\epsilon_{ext}$  를 추정할 수 있고 기부금액 결정모형을 통해 intensive margin에 의한 탄력성 추정 가능
  
- 기부가격의 변화가 기부결정에 미치는 extensive margins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소득의 영향력이 크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탄력성이 4.2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나 기부가격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 직관과도 일치하지 않는 양(+)의 값을 보이기 때문
  - 기부결정과정의 시차 또는 시점 간 조정을 고려할 경우, 기부가격 변동에 유의미하게 반응
    - 기부가격의 변화율에 대해 -0.47 내외의 탄력성을 보여 기부가격의 절대수준보다 상대적인 변화가 기부결정에 영향을 미침
  - 반면 소득의 경우, 절대적 수준이 시차를 갖고 기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 및 당년도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2.4 수준으로 유사<sup>11)</sup>
  - 고소득층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기부가격의 탄력성은 음(-)의 값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점 간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음
    - 소득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크게 낮아지며 당년도 소득보다 전년도 소득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 기부가격이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intensive margins)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매우 작은 수준
  - 시점 간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당년도 기부가격의 영향은 탄력성이 -0.01로 매우 낮으며, 오히려 전년도 가격 영향이 -0.12 수준으로 더 크게 나타남

11) 다음과 같이 추정식을 조정하여 도출 가능,  $\alpha \ln y_t + \beta \Delta \ln y_t = (\alpha + \beta) \ln y_t - \beta \ln y_{t-1}$

- 이는 당해연도 2월에 시행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공제제도의 효과성을 체감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기부자의 기부금액 결정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은 기부 여부에 미치는 영향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
-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기부금액 탄력성은 1.3 수준이며 소득의 절대수준의 영향력이 소득변동의 영향력보다 크게 타나남

<표 IV-9> 기부결정요인 회귀분석(Probit regression, Extensive Margins)

종속변수: 기부여부	Full sample			
	(1)	(2)	(3)	(4)
ln(기부가격)	0.290 (0.194)	0.278 (0.197)	0.229 (0.233)	0.218 (0.233)
ln(세후소득)	4.190*** (0.0308)	4.198*** (0.0315)	4.773*** (0.0340)	4.769*** (0.0341)
Δ ln(기부가격)			-0.474** (0.197)	-0.468** (0.197)
Δ ln(세후소득)			-2.415*** (0.0656)	-2.415*** (0.0656)
성별	0.442*** (0.0182)	0.460*** (0.0193)	0.575*** (0.0184)	0.590*** (0.0192)
연령/100	4.883*** (0.691)	4.750*** (0.702)	5.048*** (0.705)	4.981*** (0.705)
(연령/100)2	-6.823*** (0.774)	-6.676*** (0.786)	-7.029*** (0.782)	-6.969*** (0.782)
세대주여부		0.0563*** (0.0178)		0.0527*** (0.0176)
2012	-0.126*** (0.0215)	-0.126*** (0.0218)		
2013	-0.265*** (0.0217)	-0.265*** (0.0220)	-0.141*** (0.0190)	-0.140*** (0.0190)
2014	-0.517*** (0.0223)	-0.518*** (0.0226)	-0.362*** (0.0195)	-0.361*** (0.0195)
2015	-0.715*** (0.0223)	-0.716*** (0.0227)	-0.623*** (0.0198)	-0.622*** (0.0198)
Constant	-55.42*** (0.396)	-55.54*** (0.405)	-63.11*** (0.434)	-63.09*** (0.434)
lnsig2u	2.880*** (0.0163)	2.898*** (0.0162)	2.700*** (0.0137)	2.700*** (0.0137)
Observations	499,913	499,913	399,924	399,924
Number of id2	99,989	99,989	99,985	99,985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고소득층으로 한정할 경우 기부가격의 영향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에 큰 영향을 받음
  - 기부가격의 변화율에 대해 -0.55 수준의 탄력성을 보이는데 이는 전체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높은 당년도 탄력성 수준
  - 소득탄력성은 0.94~1.02 수준으로 전체 기부자의 소득탄력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고소득자 기부금액에 소득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축소됨을 확인

<표 IV-10> 기부금액에 대한 가격 영향(LSDV)

종속변수: ln(기부금)	Cond. 기부금>0			
	(1)	(2)	(3)	(4)
ln(기부가격)	0.0586 (0.0502)	0.0586 (0.0502)	-0.131* (0.0697)	-0.131* (0.0697)
ln(세후소득)	1.195*** (0.0235)	1.195*** (0.0235)	1.172*** (0.0367)	1.172*** (0.0367)
$\Delta \ln(\text{기부가격})$			0.121** (0.0582)	0.121** (0.0582)
$\Delta \ln(\text{세후소득})$			0.125*** (0.0296)	0.125*** (0.0296)
연령/100	9.564*** (0.774)	9.564*** (0.774)	5.478*** (1.080)	5.478*** (1.080)
$(\text{연령}/100)^2$	-11.78*** (0.835)	-11.78*** (0.835)	-9.766*** (1.148)	-9.766*** (1.148)
2012	0.0730*** (0.00553)	0.0730*** (0.00553)	-	-
2013	0.119*** (0.00544)	0.119*** (0.00544)	0.0679*** (0.00526)	0.0679*** (0.00526)
2014	-0.0569*** (0.00550)	-0.0569*** (0.00550)	-0.0866*** (0.00546)	-0.0866*** (0.00546)
Constant	-9.207*** (0.293)	-9.207*** (0.293)	-7.493*** (0.434)	-7.493*** (0.434)
Observations	196,400	196,400	157,120	157,120
R-squared	0.797	0.797	0.820	0.820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IV-11> 기부결정요인 회귀분석(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자)

종속변수: 기부여부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	(2)	(3)	(4)
ln(기부가격)	2.800	-2.595	-0.250	-2.589
	(8.285)	(8.161)	(9.548)	(8.834)
ln(세후소득)	-0.209	-0.385**	1.852***	0.821***
	(0.171)	(0.168)	(0.250)	(0.221)
$\Delta \ln(\text{기부가격})$			-0.280	-0.422
			(0.925)	(0.893)
$\Delta \ln(\text{세후소득})$			-2.284***	-1.510***
			(0.320)	(0.307)
성별	-0.439**	-0.470**	-0.193	-0.0392
	(0.179)	(0.195)	(0.202)	(0.208)
연령/100	50.74***	60.73***	44.52***	45.17***
	(6.063)	(8.397)	(7.718)	(6.902)
$(\text{연령}/100)^2$	-47.95***	-60.83***	-42.78***	-44.88***
	(5.763)	(8.349)	(7.510)	(6.723)
세대주여부		0.415***		1.570***
		(0.121)		(0.131)
2012	0.0573	0.0639		
	(0.202)	(0.195)		
2013	0.112	0.167	-0.0668	0.0317
	(0.195)	(0.189)	(0.182)	(0.178)
2014	-0.643	1.000	-0.0118	0.832
	(2.219)	(2.187)	(2.583)	(2.390)
2015	-0.612	1.080	-0.158	0.728
	(2.218)	(2.186)	(2.583)	(2.394)
Constant	-3.655	-5.718	-30.39***	-18.66***
	(3.784)	(3.925)	(4.985)	(4.346)
Insig2u	4.846***	4.815***	5.103***	4.976***
	(0.0670)	(0.0668)	(0.0630)	(0.0633)
Observations	14,101	14,101	12,606	12,606
Number of id2	5,385	5,385	5,324	5,324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IV-12> 기부금액에 대한 가격 영향(LSDV,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종속변수: ln(기부금)	Cond. 기부금>0,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	(2)	(3)	(4)
ln(기부가격)	0.409 (1.808)	0.409 (1.808)	0.613 (1.843)	0.613 (1.843)
ln(세후소득)	0.943*** (0.0867)	0.943*** (0.0867)	1.015*** (0.118)	1.015*** (0.118)
Δln(기부가격)			-0.546** (0.220)	-0.546** (0.220)
Δln(세후소득)			0.0387 (0.0926)	0.0387 (0.0926)
연령/100	24.89* (13.15)	24.89* (13.15)	14.39 (17.36)	14.39 (17.36)
(연령/100) <sup>2</sup>	-21.76*** (5.601)	-21.76*** (5.601)	-15.61** (7.073)	-15.61** (7.073)
2012	0.115 (0.133)	0.115 (0.133)		
2013	0.331 (0.251)	0.331 (0.251)	0.263 (0.169)	0.263 (0.169)
2014	-0.0194 (0.123)	-0.0194 (0.123)	0.0496 (0.175)	0.0496 (0.175)
Constant	-10.87 (6.635)	-10.87 (6.635)	-8.096 (8.935)	-8.096 (8.935)
Observations	9,535	9,535	8,616	8,616
R-squared	0.853	0.853	0.874	0.874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나. 2단계 추정모형(Two step Selection Correction Model)

- 기부 여부 결정과 기부금액 결정 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2단계 추정법을 적용
  - 즉 기부 여부 결정식의 에러항과 기부금액 결정식의 에러항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sample selection 문제를 조정하는 과정 포함
  
- 추정결과 기부 여부 결정에서 소득의 탄력성이 1.8로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부가격의 영향은 오히려 경제적 직관과 상반되는 양(+)의 값을 보임
  - 기부가격에의 탄력성이 경제적 직관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 이후 기부가격이 하락한 저소득층(즉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자)의 기부자 비율이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음

□ 기부 여부에 대한 선택편이를 감안한 추정에서 기부가격의 탄력성은 -0.19 상당히 낮은 수준

- 반면 소득탄력성은 0.7 수준으로 가격의 영향보다 크게 나타남
- 이전 선행연구들의 비정상적인 가격탄력성에 비해 합리적인 결과
  - 사회후생적 관점에서 낮은 가격탄력성은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을 높이지 않는 것이 사회후생을 높이는 결과
  - 즉 재원조달비용을 평균적으로 1.5로 가정할 때 가격탄력성(절대값)이 0.3보다 커야 조세지원 증가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Almunia, Lockwood and Scharf, 2016)

<표 IV-13> Heckman selection model(Pooled Regression)

	selection eq 종속변수: 기부 여부	outcome eq 종속변수: ln(기부금)
ln(기부가격)	1.120*** (0.0462)	-0.189*** (0.0588)
ln(세후소득)	1.838*** (0.00648)	0.697*** (0.0661)
성별	0.248*** (0.00528)	- -
연령/100	1.466*** (0.177)	10.81*** (0.789)
(연령/100) <sup>2</sup>	-2.176*** (0.196)	-10.89*** (0.842)
세대주여부	0.0140*** (0.00486)	
2012	-0.0570*** (0.00659)	0.0682*** (0.00556)
2013	-0.113*** (0.00661)	0.110*** (0.00555)
2014	-0.212*** (0.00670)	-0.0570*** (0.00549)
2015	-0.284*** (0.00674)	- -
lambda		-0.484*** (0.0601)
Constant	-24.03*** (0.0821)	-3.056*** (0.818)
Observations	499,913	196,400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자로 한정할 경우, 가격탄력성은 -1.25로 커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소득탄력성은 0.89 수준으로 소폭 증가
  - 고소득층의 기부행위도 소득의 영향이 크게 작용

<표 IV-14> Heckman selection model(Pooled Regression,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selection eq 종속변수: 기부 여부	outcome eq 종속변수: ln(기부금)
ln(기부가격)	-4.050** (1.849)	-1.253 (8.107)
ln(세후소득)	-0.144*** (0.0348)	0.886*** (0.287)
성별	-0.126*** (0.0424)	
연령/100	12.22*** (1.178)	43.20 (88.05)
(연령/100) <sup>2</sup>	-12.52*** (1.101)	-26.68 (24.02)
세대주여부	0.135*** (0.0266)	
2012	-0.00814 (0.0453)	-0.0233 (0.671)
2013	0.0198 (0.0436)	0.0689 (1.271)
2014	1.286*** (0.495)	0.100 (0.583)
2015	1.328*** (0.495)	
lambda		0.753 (3.581)
Constant	-2.392*** (0.793)	-18.84 (38.46)
Observations	14,101	9,535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한편 기부 여부의 선택편이를 각 연도별 분포 추정을 통해 조정할 경우 가격탄력성은 -0.14로 더욱 낮아지며 소득탄력성은 0.74 수준으로 소폭 증가
  - 기부 여부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은 크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나 기부가격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고 하락하는 추세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자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가격탄력성은 경제적 직관과 일치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소득탄력성은 1.0 수준으로 전체 기부자에 비해 소폭 증가

- 기부금액의 결정에 있어 가격보다 소득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표 IV-15> 기부여부 분석모형(Probit regression, annual)

종속변수: 기부여부	2011	2012	2013	2014	2015
ln(기부가격)	1.437*** (0.104)	1.204*** (0.104)	0.924*** (0.104)	- -	- -
ln(세후소득)	1.872*** (0.0177)	1.867*** (0.0183)	1.849*** (0.0187)	1.828*** (0.0118)	1.802*** (0.0117)
성별	0.241*** (0.0118)	0.242*** (0.0118)	0.244*** (0.0118)	0.261*** (0.0119)	0.261*** (0.0118)
연령/100	0.722* (0.395)	1.571*** (0.402)	2.185*** (0.411)	2.712*** (0.420)	2.808*** (0.426)
(연령/100) <sup>2</sup>	-1.904*** (0.456)	-2.536*** (0.454)	-2.899*** (0.455)	-3.337*** (0.454)	-3.123*** (0.452)
세대주 여부	0.0241** (0.0108)	0.0196* (0.0108)	0.0146 (0.0108)	0.00741 (0.0109)	0.000229 (0.0109)
Constant	-24.17*** (0.212)	-24.43*** (0.221)	-24.49*** (0.227)	-24.61*** (0.167)	-24.42*** (0.168)
Observations	99,981	99,982	99,984	99,982	99,984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IV-16> 기부금액 분석모형(Pooled regression)

종속변수: ln(기부금)	Cond: 기부금>0
ln(기부가격)	-0.139** (0.0565)
ln(세후소득)	0.739*** (0.0643)
연령/100	13.28*** (0.915)
(연령/100) <sup>2</sup>	-13.89*** (0.880)
2012	0.0670*** (0.00559)
2013	0.108*** (0.00562)
2014	-0.0585*** (0.00550)
lambda	-0.447*** (0.0588)
Constant	-4.106*** (0.731)
Observations	196,400
R-squared	0.797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IV-17> 기부금액 분석모형(Pooled regression,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종속변수: ln(기부금)	Cond: 기부금>0,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ln(기부가액)	1.876 (1.992)
ln(세후소득)	1.003*** (0.0931)
연령/100	6.440 (16.84)
(연령/100) <sup>2</sup>	-15.21** (6.730)
2012	0.239 (0.151)
2013	0.565** (0.284)
2014	-0.126 (0.137)
lambda	-0.732* (0.417)
Constant	-3.351 (7.897)
Observations	9,535
R-squared	0.853

주: Outcome equation is estimated via pooled regression with two-way fixed effects

성별 & 2015 omitted because of collinearity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6. 소결

- 기부금에 대한 조세제도의 공제방식 변화와 동 시기에 나타난 기부금 변화로 인해 조세정책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
  -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의 감소가 실제 고소득 납세자들의 기부를 감소시켰는지 그렇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 특히 가장 최근의 연구인 송헌재(2013)의 경우 외국에 비해 매우 큰 가격탄력성을 제시하여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기부금 감소가 매우 클 수 있었음을 제시

- 그러나 서베이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이 분포하지 않고 실제 소득세 신고자료와 일치하는 소득자는 많지 않음

□ 충분한 규모의 실제 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 정책 개혁 전후에 나타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증모형을 통해 분석할 필요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야기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향후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필요
-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패널로 구성하여 세제 변화에 따른 기부금 변화를 분석

□ 분석결과 기부금액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0.1 \sim -0.2$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소득탄력성이 0.7 내외로 높은 수준

- 구체적으로 기부참여 여부는 기부가격의 수준보다 변화율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받으며, 기부금액의 결정에서도 연말정산의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도 가격수준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음
  - 기부가격의 시차효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가격탄력성은 매우 낮은 수준
- 서베이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추정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 가격탄력성의 경우, 송헌재(2013)의  $-7.5 \sim -9.9$ , 박기백(2010)  $-0.56$ 보다 낮은 수준으로 박기백(2010)에 가까운 추정치
  - 선행연구들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외생적 정책 변화가 없었고 이질적인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기부금 변화만 고려한 한계는 존재
  - 소득탄력성의 상대적 크기도 가격탄력성보다 크게 나타나 송헌재(2013)보다는 박기백(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

□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것은 조세정책을 통한 사회후생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조세지원의 효과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 기부금 지출이 조세지원보다는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세지원 강화를 통한 기부금 증가 정책의 당위성 또는 효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 정부의 재원조달비용을 평균 1.5로 가정할 때 가격탄력성(절대값)이 0.3보다 커야 조세지원 증가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Almunia, Lockwood and Scharf, 2016)

## V. 결론





## V. 결 론

- 2014년 다양한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부금에 대한 조세정책 변화에 대한 논란도 제기
  - 2013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 특별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 근로소득자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 허용이 과세기반을 잠식하고 소득수준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기인
  - 그러나 중하위소득자들에 대한 한계세율보다 높은 15% 등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이어진 보완조치로 인해 면세자 비중은 크게 증가
    - 최하위 소득세율 6%가 적용되던 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제세액이 증가
    - 이에 따라 2013년 32.2% 수준이었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4년 47.9%로 크게 증가<sup>12)</sup>
    -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귀속소득기준 48.9%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 32.2%까지 하락하였다가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그 보완조치로 인해 2014년에는 47.9%로 크게 증가
  - 기부금에 대한 조세제도의 공제방식 변화와 동 시기에 나타난 기부금 변화로 인해 조세정책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
    - 기부금 수혜단체는 주로 공익활동에 종사하는데, 조세지원의 감소와 기부금 감소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정책 변화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
    - 구체적으로 기부의 조세혜택 감소가 실제 고소득 납세자들의 기부를 감소시켰는지 그렇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적 점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먼저 면세자 비중이 종전과 유사한 수준인 30%대로 회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적절한 면세자 축소 대안을 검토

12) 각주 1)과 동일

- 사회·경제적으로 적절한 면세자 비중의 수준에 대한 기준이나 국제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 비중은 분명 과도한 수준이라 판단하였기 때문
  - 면세자 비중은 최근에 급증한 경향이 있으므로 최소한 종전 수준(30%대)으로 복귀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책목표가 될 것으로 판단
    -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주요국의 면세자 비중이 각각 35.8%, 33.5%라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30%대의 면세자 비중을 정책목표로 삼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 면세자 비중에 대한 분석결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면세자 축소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
- 먼저, 정책의 목표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면, 표준세액 공제 축소안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이 합리적
    - 단, 표준세액공제 축소는 1인가구에 세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종의 싱글세(single tax)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중·상위 소득자들을 타깃팅(최상위 제외)하여 면세자 축소를 도모한다면,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대안이 효과적
    - 단, 다인가구에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출산과 관련한 보조적인 정책적 대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상기의 두 대안은 단기적으로 면세자를 축소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소득세율 구조의 정상화에는 기여하는 바가 적을 것으로 판단
  - 반면, 근로소득공제 축소대안은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율 구조의 정상화와 장기적인 면세자 비중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두 번째로 기부금 분석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 정책 개혁 전후에 나타난 기부금 변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증모형을 통해 분석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야기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향후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필요

-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패널로 구성하여 세제 변화에 따른 기부금 변화를 분석
- 분석결과 기부금액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0.1 \sim -0.2$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소득탄력성이 0.7 내외로 높은 수준
  - 기부 여부는 기부가격의 수준보다 변화율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받으며 기부금액의 결정에서도 연말정산의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도 가격수준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 이러한 탄력성 규모는 선행연구들의 추정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 가격탄력성의 경우, 송헌재(2013)의  $-7.5 \sim -9.9$ , 박기백(2010)  $-0.56$ 보다 낮은 수준으로 박기백(2010)에 가까운 추정치
    - 선행연구들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외생적 정책변화가 없었고 이질적인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기부금 변화만 고려한 한계는 존재
    - 소득탄력성의 상대적 크기도 가격탄력성도 크게 나타나 송헌재(2013)보다는 박기백(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
-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것은 조세정책을 통한 사회후생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지원의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
  - 기부금 증대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 참 고 문 헌

- 김상조, 「2014년 근로소득의 분배구조 및 실효세율 분석」,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50호, 2016.
- 김재진,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재정포럼』 제241호,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2016.07.
- 박기백, 「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2010.
- 박명호·전병목,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6.
- 성명재·우석진,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재정학회, 2013.
-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제6권 제4호, 2013.
- 안종석,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분석」, 『재정포럼』, 통권 제 243호,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2015.
- 전병목, 『소득세 세율체계 및 공제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 Almunia, M., B. Lockwood and K. Scharf, “The Price Elasticity of Charitable Deductions: Evidence from UK Tax Records,” Presentation Paper, University of Warwick, May 2016.
- Auten, G., H. Sieg and C. Clotfelter, “Charitable Giving, Income, and Tax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No. 1, 2002, pp. 371~382.
- Bakija, J. and B. Heim, “How Does Charitable Giving Respond to Incentives and Income? New Estimates From Panel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 64, No. 2, June 2011, pp. 615~650.
- Clotfelter, Charles,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Giving: Evidence From a Panel of Taxpay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 1980, pp. 319~340.
- Feldstein, M. and Amy Taylor, “The Income Tax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Econometrica*, Vol. 44, No. 6, 1976, pp. 1201~1222.

Randolph, William, “Dynamic Income, Progressive Taxes , and the Timing of Charitable Contribu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3, No. 4, 1995, pp. 709~738.

Saez, Emmanuel, “The Optimal Treatment of Tax Expenditu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2004, pp. 2657~268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2013.0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13.09.1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연말정산 보완대책」, 2015.04.07.

예산정책처,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 47호, 2016.09.

#### <웹사이트>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영국 국세청, <http://www.cra-arc.gc.ca>

캐나다 국세청, <https://data.gov.au>

호주 국세청, <https://www.gov.uk>



# 부 록





## <부 록>

### 1. 기부유형 및 금액의 변화 추이

<부표 1> 소득구간별 평균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추이

(단위: 원)

	5,5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11	684,725	1,065,468	1,499,137	2,495,534
2012	705,108	1,103,059	1,589,016	2,676,737
2013	702,767	1,089,690	1,538,814	2,690,823
2014	607,488	951,307	1,357,560	2,293,190
2015	716,198	1,140,422	1,539,264	2,731,180

주: 소득구간은 2015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박명호·전병목(2016)

<부표 2> 소득구간별 평균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추이

(단위: 원)

	5,5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13	30,051	57,343	95,343	347,940
2014	27,613	49,028	77,152	214,860
2015	30,204	59,490	80,451	265,421

주: 소득구간은 2015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박명호·전병목(2016)

<부표 3> 소득구간별 평균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추이

(단위: 원)

	5,5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13	671,302	1,027,597	1,440,084	2,337,930
2014	579,505	902,103	1,280,283	2,074,471
2015	683,792	1,079,735	1,456,985	2,459,654

주: 소득구간은 2015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박명호·전병목(2016)

## 2. 세액공제종합한도 대안 시나리오 추가분석(외납세액공제 제외)

-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대안은 적용대상에 따라 면세자 축소 및 세부담의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대안의 추가적인 분석으로 공제한도 적용대상을 외국납부세액공제만으로 설정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본 부록에 제시
  - 구체적으로 <부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III장에서 고려한 9가지 대안에 대해서 공제한도 적용대상을 외국납부세액만으로 한정하고 동일한 분석을 시행

<부표 4>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외납세액공제 제외)

대안	대상자	공제한도	공제한도 적용대상
1	총급여액 2,000만원 이상	산출세액의 95%	세액공제 중 다음 항목 제외 • 외국납부세액공제
2		산출세액의 90%	
3		산출세액의 85%	
4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산출세액의 95%	
5		산출세액의 90%	
6		산출세액의 85%	
7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산출세액의 95%	
8		산출세액의 90%	
9		산출세액의 85%	

- 외납세액공제만을 제외한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의 시나리오 또한 기본적으로 본문에 제시된 분석과 동일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면세자 축소 비중과 추가 세부담 수준에 대한 차이는 존재
- 외납세액공제만을 제외한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안에 따른 면세자 비중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전체 면세자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면세자 비중은 적용 대상자의 소득구간 설정 범위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제한도에 따른 면세자 비중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부표 5>와 [부도 1] 참조)

- 적용 대상자의 급여수준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약 6%p, 2,500만원 이상인 경우 8%p,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p 정도 면세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동일한 급여구간 대상자 중 공제한도에 따른 면세자 비중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소숫점 두자리 이상에서 면세자 비중의 차이는 존재하였음)
- 공제한도에 따라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외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수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정부분의 세액을 납부하는 결과가 나타남(최저한세와 유사한 결과)
- 급여구간별로 살펴보면, 면세자 비중은 2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 가장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부표 6>과 [부도 2] 참조)
- 가구형태별로는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면세자 비중이 더욱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부표 7>과 [부도 3] 참조)

□ 외납세액공제만을 제외한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추가 세부담은 적용 대상자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차이가 적으나, 공제한도 설정에 따라 뚜렷한 세부담 차이가 존재(<부표 8>과 [부도 4] 참조)
  - 현행 대비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은 공제한도가 95%인 경우 약 3.7~5.2천원 수준이며, 90%인 경우에는 7.9~11.1천원, 85%의 경우 12.7~17.7천원 수준
  - 반면, 동일한 공제한도일 경우 적용대상자별 세부담의 차이는 약 1.5~5천원 수준에 불과
  - 이러한 세부담을 2014년 기준 총세수액으로 환산하면,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으로 인해 최소 615억원에서 최대 2,937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급여구간별로 보았을 때, 1인당 추가 세부담은 대체로 중·상위 소득자들에게 전가되며, 특히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부표 9>와 [부도 5] 참조)
- 가구형태별로는 1인당 추가 세부담이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하는 뚜렷한 선형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제한도가 감소할수록 그 기울기(혹은 추가 세부담 증가분)가 큰 폭으로 증가(<부표 10>과 [부도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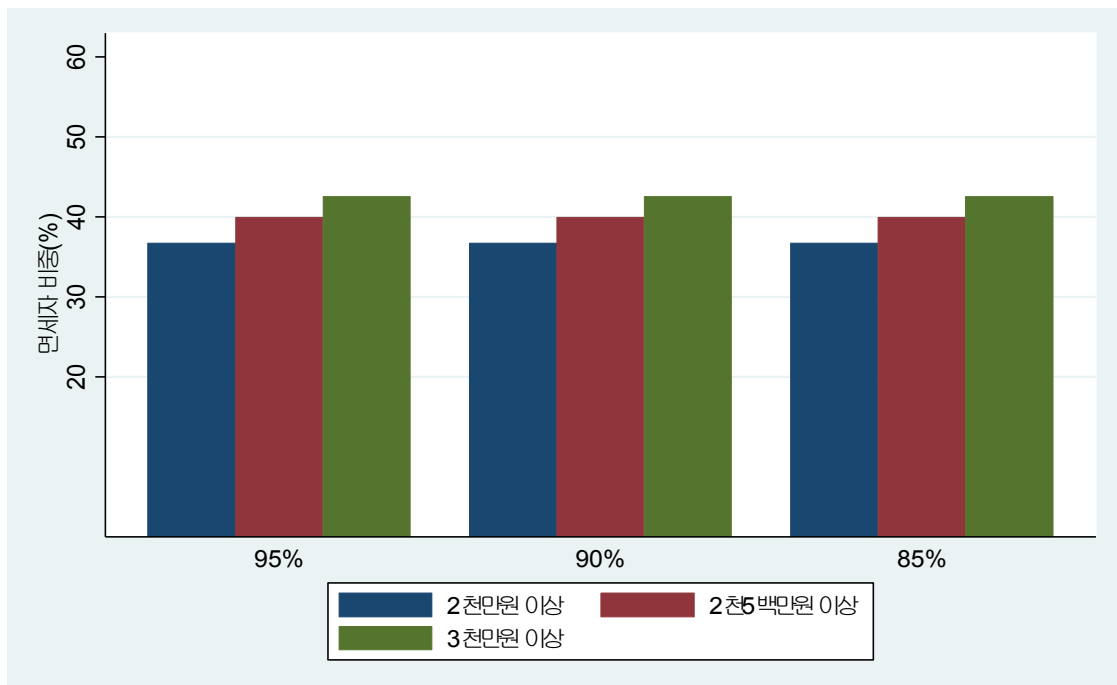
□ 요컨대, 외국납부세액공제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대안 또한 중·상위의 특정 소득구간 근로자들의 면세자 비중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인 반면, 중위 소득자와 다인가구에 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부표 5>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면세자 비중 변화

(단위: %, %p)

대안	대상자	공제 한도	면세자 비중	현행대비 면세자 감소비율
현행			48.18	
1	총급여액 2,000만원 이상	95	36.69	-11.49
2		90	36.69	-11.49
3		85	36.69	-11.49
4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95	39.95	-8.23
5		90	39.95	-8.23
6		85	39.95	-8.23
7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95	42.51	-5.66
8		90	42.51	-5.66
9		85	42.51	-5.66

[부도 1]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면세자 비중



〈부표 6〉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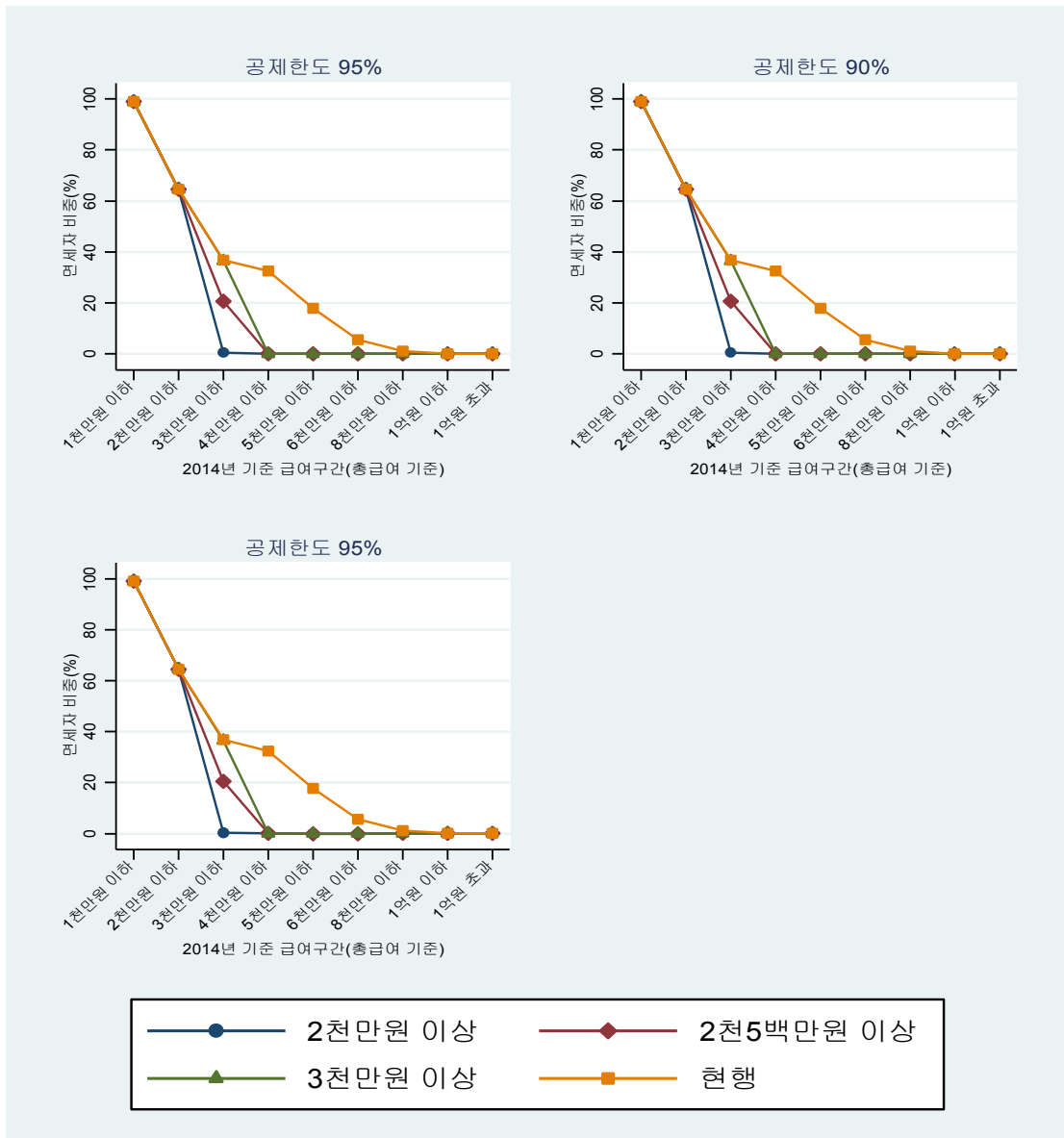
(단위: %, %p)

대안	대상자	공제 한도	2014년 기준 급여구간(총급여기준)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현행			98.98 (-)	64.55 (-)	36.86 (-)	32.44 (-)	17.84 (-)	5.64 (-)	1.22 (-)	0.15 (-)	0.15 (-)	
1	총급여액 2,000만원 이상	95	98.98 (0)	64.48 (-0.08)	0.47 (-36.39)	0.04 (-32.40)	0.02 (-17.83)	0.04 (-5.60)	0.04 (-1.17)	0.05 (-0.10)	0.13 (-0.02)	
2		90	98.98 (0)	64.48 (-0.08)	0.47 (-36.39)	0.04 (-32.40)	0.02 (-17.83)	0.04 (-5.60)	0.04 (-1.17)	0.05 (-0.10)	0.13 (-0.02)	
3		85	98.98 (0)	64.48 (-0.08)	0.47 (-36.39)	0.04 (-32.40)	0.02 (-17.83)	0.04 (-5.60)	0.04 (-1.17)	0.05 (-0.10)	0.13 (-0.02)	
4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95	98.98 (0)	64.55 (0)	20.59 (-16.27)	0.04 (-32.40)	0.02 (-17.83)	0.04 (-5.60)	0.04 (-1.17)	0.05 (-0.10)	0.13 (-0.02)	
5		90	98.98 (0)	64.55 (0)	20.59 (-16.27)	0.04 (-32.40)	0.02 (-17.83)	0.04 (-5.60)	0.04 (-1.17)	0.05 (-0.10)	0.13 (-0.02)	
6		85	98.98 (0)	64.55 (0)	20.59 (-16.27)	0.04 (-32.40)	0.02 (-17.83)	0.04 (-5.60)	0.04 (-1.17)	0.05 (-0.10)	0.13 (-0.02)	
7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95	98.98 (0)	64.55 (0)	36.50 (-0.36)	0.04 (-32.40)	0.02 (-17.83)	0.04 (-5.60)	0.04 (-1.17)	0.05 (-0.10)	0.13 (-0.02)	
8		90	98.98 (0)	64.55 (0)	36.50 (-0.36)	0.04 (-32.40)	0.02 (-17.83)	0.04 (-5.60)	0.04 (-1.17)	0.05 (-0.10)	0.13 (-0.02)	
9		85	98.98 (0)	64.55 (0)	36.50 (-0.36)	0.04 (-32.40)	0.02 (-17.83)	0.04 (-5.60)	0.04 (-1.18)	0.05 (-0.10)	0.13 (-0.0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현행 제도와의 비중 차이(%p)

[부도 2]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단위: %)



<부표 7>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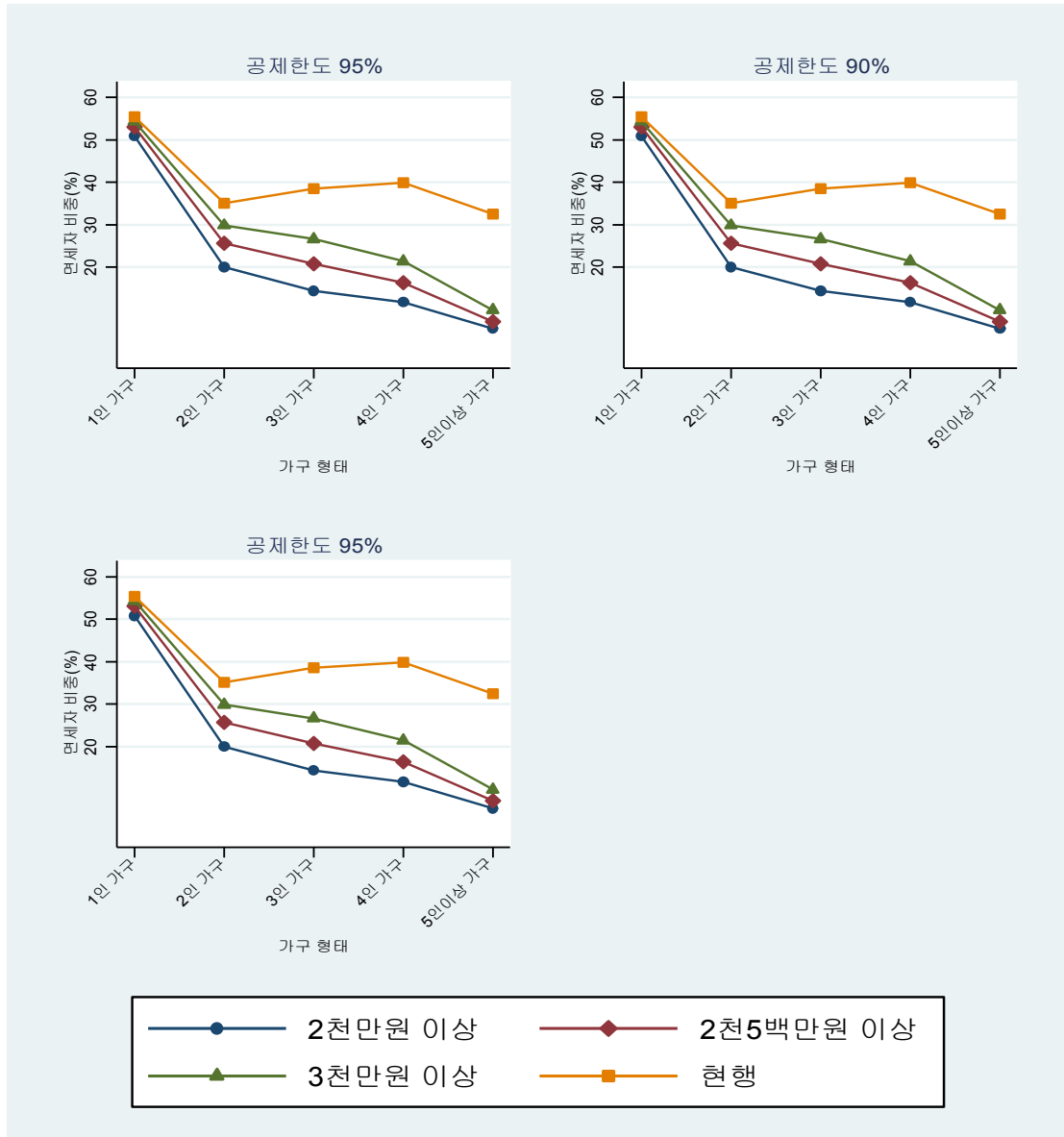
(단위: %, %p)

대안	대상자	공제 한도	가구형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현행			55.39 (-)	35.11 (-)	38.54 (-)	39.88 (-)	32.49 (-)
1	총급여액 2,000만원 이상	95	50.81 (-4.58)	20.01 (-15.10)	14.39 (-24.15)	11.72 (-28.16)	5.46 (-27.03)
2		90	50.81 (-4.58)	20.01 (-15.10)	14.39 (-24.15)	11.72 (-28.16)	5.46 (-27.03)
3		85	50.81 (-4.58)	20.00 (-15.10)	14.39 (-24.15)	11.72 (-28.16)	5.46 (-27.04)
4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95	53.03 (-2.37)	25.65 (-9.46)	20.77 (-17.77)	16.36 (-23.53)	7.18 (-25.31)
5		90	53.03 (-2.37)	25.65 (-9.46)	20.77 (-17.78)	16.36 (-23.53)	7.18 (-25.31)
6		85	53.03 (-2.37)	25.65 (-9.46)	20.77 (-17.78)	16.36 (-23.53)	7.18 (-25.31)
7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95	54.33 (-1.07)	29.87 (-5.24)	26.62 (-11.92)	21.42 (-18.46)	9.88 (-22.61)
8		90	54.33 (-1.07)	29.87 (-5.24)	26.62 (-11.92)	21.42 (-18.46)	9.88 (-22.61)
9		85	54.33 (-1.07)	29.87 (-5.24)	26.62 (-11.92)	21.42 (-18.46)	9.88 (-22.6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현행 제도와의 비중 차이(%p)

[부도 3] 가구형태별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단위: %)



<부표 8>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세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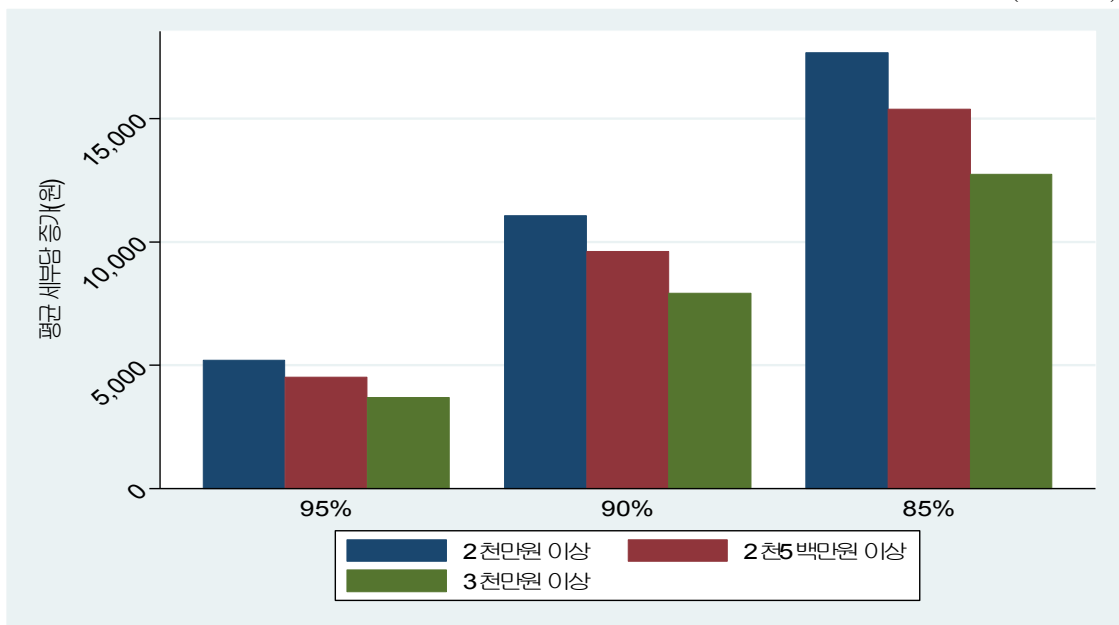
(단위: 원, %)

대안	대상자	공제 한도	세부담 증가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상위 90% 값	상위 75% 값	증양값	최소값
1	총급여액 2,000만원 이상	95%	5,207 [12.62]	17,980	2,454,004	19,900	0	0	0
2		90%	11,060 [13.74]	36,827	4,908,012	43,589	0	0	0
3		85%	17,661 [15.09]	56,655	7,362,016	70,439	0	0	0
4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95%	4,512 [9.12]	17,717	2,454,004	0	0	0	0
5		90%	9,614 [9.95]	36,327	4,908,012	0	0	0	0
6		85%	15,383 [10.85]	55,956	7,362,016	38,260	0	0	0
7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95%	3,699 [6.37]	17,102	2,454,004	0	0	0	0
8		90%	7,923 [7.02]	35,123	4,908,012	0	0	0	0
9		85%	12,745 [7.71]	54,196	7,362,016	0	0	0	0

주: 대괄호([ ]) 안의 숫자는 세부담이 증가한 인원의 비율(%)

[부도 4] 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별 세부담 증가

(단위: 원)



<부표 9> 급여구간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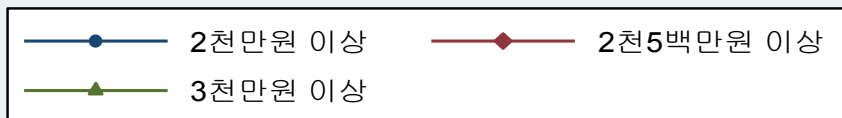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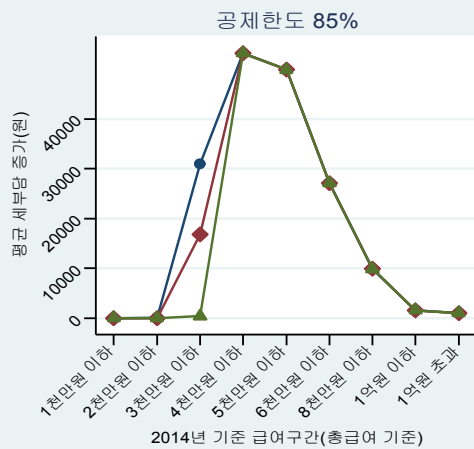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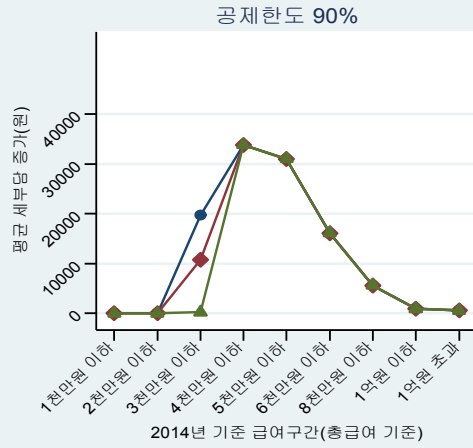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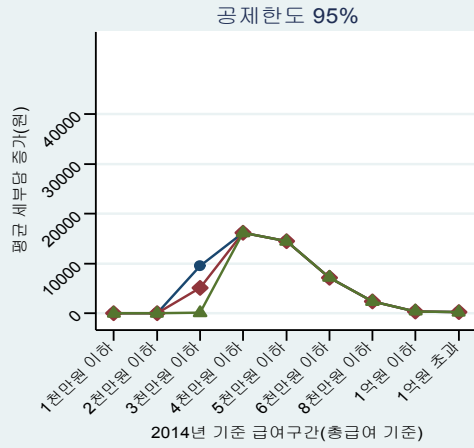
(단위: 원, %)

대안	대상자	공제 한도	2014년 기준 급여구간별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		95%	9,470 [39.07]	16,140 [35.06]	14,468 [20.09]	7,203 [7.08]	2,401 [2.22]	418 [0.81]	233 [0.53]
2	총급여액 2,000만원 이상	90%	19,704 [42.01]	33,832 [37.82]	31,022 [22.56]	16,105 [8.52]	5,613 [2.72]	946 [0.84]	569 [0.55]
3		85%	30,875 [46.05]	53,209 [40.69]	49,892 [25.11]	27,095 [10.32]	9,858 [3.30]	1,605 [0.89]	1,025 [0.56]
4		95%	5,173 [17.46]	16,140 [35.06]	14,468 [20.09]	7,203 [7.08]	2,401 [2.22]	418 [0.81]	233 [0.53]
5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90%	10,766 [18.62]	33,832 [37.82]	31,022 [22.56]	16,105 [8.52]	5,613 [2.72]	946 [0.84]	569 [0.55]
6		85%	16,799 [19.88]	53,209 [40.69]	49,892 [25.11]	27,095 [10.32]	9,858 [3.30]	1,605 [0.89]	1,025 [0.56]
7		95%	132 [0.38]	16,140 [35.06]	14,468 [20.09]	7,203 [7.08]	2,401 [2.22]	418 [0.81]	233 [0.53]
8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90%	278 [0.41]	33,832 [37.82]	31,022 [22.56]	16,105 [8.52]	5,613 [2.72]	946 [0.84]	569 [0.55]
9		85%	434 [0.43]	53,209 [40.69]	49,892 [25.11]	27,095 [10.32]	9,858 [3.30]	1,605 [0.89]	1,025 [0.56]

주: [ ]안의 숫자는 세부담이 증가한 인원의 비율(%)

[부도 5] 급여구간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단위: 원)



<부표 10> 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단위: 원, %)

대안	대상자	공제 한도	가구형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가구
1	총급여액 2,000만원 이상	95%	2,090 [5.17]	6,016 [16.90]	9,962 [26.28]	12,742 [30.15]	15,239 [29.22]
2		90%	4,415 [5.86]	12,913 [18.71]	21,165 [28.19]	26,972 [31.93]	32,422 [30.98]
3		85%	7,047 [6.83]	20,819 [20.77]	33,751 [30.22]	42,852 [33.69]	51,774 [32.84]
4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95%	1,493 [2.69]	4,835 [10.83]	8,873 [19.77]	12,119 [25.48]	15,086 [27.49]
5		90%	3,153 [3.01]	10,465 [12.22]	18,967 [21.55]	25,721 [27.23]	32,115 [29.25]
6		85%	5,015 [3.40]	17,004 [13.72]	30,416 [23.40]	40,968 [28.96]	51,312 [31.11]
7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95%	932 [1.23]	3,483 [6.17]	7,292 [13.57]	10,952 [20.37]	14,637 [24.78]
8		90%	1,971 [1.39]	7,618 [7.15]	15,712 [15.12]	23,378 [22.09]	31,216 [26.53]
9		85%	3,141 [1.58]	12,520 [8.20]	25,426 [16.79]	37,444 [23.80]	49,962 [28.39]

주: 대괄호([ ]) 안의 숫자는 세부담이 증가한 인원의 비율(%)

[부도 6] 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가(세액공제 종합한도 대안)

(단위: 원)

